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 학위논문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1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기 술 경 영 협 동 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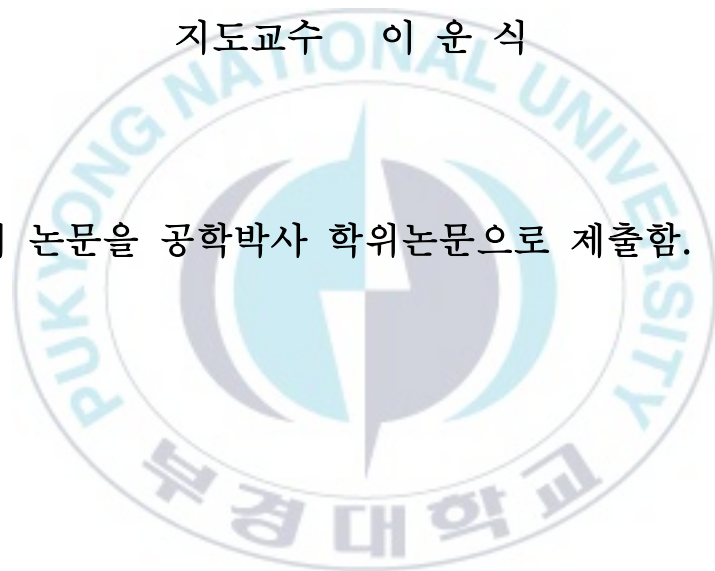
황 광 석

공학박사 학위논문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지도교수 이 윤 식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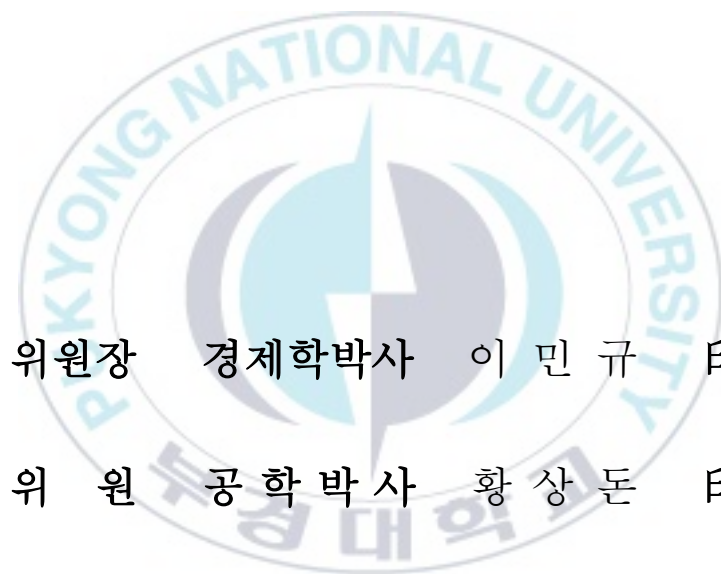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기술경영협동과정

황 광 석

황광석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원장 경제학박사 이 민 규 印

위 원 공 학 박 사 황 상 돈 印

위 원 경영학박사 김 홍 규 印

위 원 경영학박사 박 태 종 印

위 원 공 학 박 사 이 운 식 印

< 목 차 >

I.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6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0
2.1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0
2.1.1 납세순응의 개념	10
2.1.2 납세순응의 선행연구	11
2.2 세제인지도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5
2.2.1 세제인지도의 개념	15
2.2.2 세제인지도에 대한 선행연구	16
1) 세제의 공평성	16
2) 납세의 복잡성	18
3) 세율의 적정성	19
2.3 조세정책의 신뢰도와 제도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21
2.3.1 조세정책의 신뢰도	21
2.3.2 조세정책의 제도개선	24
2.4 주류의 조세정책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7
2.4.1 주류의 조세정책의 개념	27
1) 면허의 효율성	27
2) 규제의 합리성	28

2.4.2 조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29
2.5 주류의 조세 정책적 요인에 관한 개념의 정의	31
2.5.1 주세법	32
2.5.2 주류 판매면허와 관련한 조세정책	34
2.5.3 주류 조세정책의 관리제도	39
2.6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45
2.6.1 납세윤리에 관련한 조세회피의 개념	45
2.6.2 납세윤리에 관한 선행연구	46
2.6.3 납세의식의 개념	48
2.6.4 납세의식의 선행연구	49
2.7 통제변수들의 인지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51
2.8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52
III. 연구의 설계와 방법	55
3.1 연구모형의 설계	55
3.2 연구가설의 설정	57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73
IV. 실증분석	83
4.1 조사개요 및 자료 분석	83
4.1.1 조사개요	83
4.1.2 자료 분석방법	83
4.1.3 표본의 특성	85
4.2 무응답 편지와 동일방법 편지의 검증	87

4.2.1 무응답 편향의 검증	87
4.2.2 동일방법 편향의 검증	88
V. 연구결과	90
5.1 전체변수들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90
5.1.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90
5.1.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94
5.2 제도개선에 관한 매개·조절효과 분석결과	98
5.2.1 납세순응의 결과(매개분석)	98
5.2.2 납세순응의 결과(매개된 조절분석)	109
5.2.3 가설의 검증 결과	120
5.3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의 연구결과	126
5.3.1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방법	126
5.3.2 조세정책 신뢰성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방법	129
5.3.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131
5.3.4 가설의 검증	142
VI. 결론	148
6.1 연구결과의 요약	148
6.2 연구의 시사점	151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53
참고문헌	155
설문지	165
감사의 글	173

〈 표 차례 〉

〈표 2-1〉 납세순응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14
〈표 2-2〉 세제인지도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20
〈표 2-3〉 조세정책 신뢰도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24
〈표 2-4〉 조세정책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31
〈표 2-5〉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34
〈표 2-6〉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현황	36
〈표 2-7〉 주류 판매 면허의 시설기준 및 사업범위 조건의 지정(1)	37
〈표 2-8〉 주류 판매 면허의 시설기준 및 사업범위 조건의 지정(2)	38
〈표 2-9〉 과태료 부과기준	40
〈표 2-10〉 RFID 진품확인 서비스 기기	42
〈표 2-11〉 주세 범칙물건 단속절차	43
〈표 2-12〉 주류 판매업자 면허처벌규정	44
〈표 2-13〉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45
〈표 2-14〉 납세의식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51
〈표 3-1〉 측정변수와 설문항목.....	81
〈표 4-1〉 설문기업의 일반적 특성.....	86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7
〈표 4-3〉 무응답 편이 검증결과.....	88
〈표 4-4〉 동일방법 편이 검증을 위한 비회전요인 분석.....	89
〈표 5-1〉 전체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1
〈표 5-2〉 전체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92
〈표 5-3〉 전체변수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3
〈표 5-4〉 설문기업의 일반적 특성.....	94
〈표 5-5〉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	97
〈표 5-6〉 납세순응의 회귀분석 결과.....	100

<표 5-7> 조세정책 신뢰성의 회귀분석 결과.....	103
<표 5-8> 납세순응의 매개회귀분석 결과.....	105
<표 5-9> 부분 매개효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증.....	108
<표 5-10> 납세순응에 대한 제도개선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113
<표 5-11>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제도개선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115
<표 5-12> 납세순응에 대한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조절·매개효과 검증결과.....	118
<표 5-13>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20
<표 5-14> 세제인지도-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20
<표 5-15> 주류 조세정책-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21
<표 5-16> 납세윤리-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21
<표 5-17> 제도개선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	121
<표 5-18> 제도개선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2.....	122
<표 5-19> 전체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32
<표 5-20> 전체변수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33
<표 5-21> 전체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134
<표 5-22> 상관관계 분석.....	135
<표 5-23> 개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136
<표 5-24> 전체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40
<표 5-25> 개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및 표준화 요인부하량.....	141
<표 5-26> 측정 항목들의 집중타당성.....	142
<표 5-27> 개별 개념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42
<표 5-28> 경로분석 결과.....	143
<표 5-29> 소벨테스트 결과	145
<표 5-30> 매개효과 분석.....	145

〈 그림 차례 〉

〈그림 3-1〉 연구모형	56
〈그림 5-1〉 제도개선과 세율 적정성의 조절효과	119
〈그림 5-2〉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130
〈그림 5-3〉 전체 변수의 수정 전 측정모형의 도형	137
〈그림 5-4〉 매개효과 분석 연구대상 변수의 수정 전 측정모형의 도형	138
〈그림 5-5〉 전체 변수를 수정한 경로 도형	139
〈그림 5-6〉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144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ax System Recognition, Tax Policy
and Taxpayer Ethics on Tax Compliance for Liquor Selle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wang, Kwang-Seok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anagement of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ax system recognition, tax policy, and taxpayer ethics on tax compliance for the liquor seller, and the related factors were investigated and defined. The effects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s a regulating role and the reliability of tax policy as a mediating role were analyzed together. For this purpose, the relate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evious studies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ho are liquor sellers in the Southeast region. The collected data were sequentially analyzed into the following first and second stages.

In the first stage, the individual effect were analyzed on the sub-factors of each factor,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and Sobel test. In the second stage, the variables were removed that did not affect the study of the first stage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as an integrated concept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solve the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stage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ax system recogn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liquor sell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ax system with the equal and fair reporting and tax service to all taxpayers. The tax system recognition of national tax policy are increased by implementing a taxation system that secures the appropriateness of tax rate according to tax burden ability.

Secondly, tax payment consciousness as a sub-factor of taxpayer ethic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ax compliance, but it was found that if the system improvement to alleviate the license punishment regulations for liquor sellers was made, tax payment 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ax compliance. This means that the tax payment consciousness has an effect on the tax payment system.

Thirdly, the reliability of tax poli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ax compliance and moreover are influenced by tax system recognition. Therefore, it ha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ax system recognition and tax compliance. This means that if liquor sellers trust the government's tax policy and operate the collected tax efficiently, they can not do the tax avoidance tendency against the sincere taxation.

Fourthly, in the effect of tax rate adequacy and tax payment consciousness on tax compliance,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plays a positive regulating role and also has a positive regulating effect on the reliability of tax policy and tax compliance. The appropriate tax rate system that fits the burden capacity and the honest and moral tax consciousness form a healthy tax payment culture. If a tax payment system that improves deregulation and tax quality for liquor sellers was established, the illegal activities such as unregistered and disguised transactions will be reduced.

Fifthly, the efficiency of license and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as the sub-factors of the liquor tax policy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tax compliance for liquor sell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lement tax policies by strengthen of internal capacity, promotion, and education for employees.

Sixthly, regulation reforms for liquor seller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tax complianc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ocial awareness in which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ax avoidance is appropriate and the probabilities for detecting unregistered and disguised transactions and

investigating the case of illegal tax evasion are high. In the designation of the scope and conditions of the liquor licens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trust of the taxpayer and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by reorganizing the regulations on the cancellation of license and the suspension of license according to the reality.

The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reliability of tax policy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among the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It shows that the tax system recognition and the reliability of tax policy are important factors to induce the sincere tax payment and improve the tax compliance in implementing the tax policy for sincere taxation, as investigating the fairness of tax system, the complexity of tax paymen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ax rate for liquor selle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ub-factors influenced on the tax compliance as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concepts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refore, this means that a new research direction was proposed as consider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tax policies and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are more complex and integrated.

Key words: Tax system recognition, Tax policy, Taxpayer ethics, Tax compl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iquor seller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황 광 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미치는 조절효과로서의 영향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로서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남광역권 지역의 주류 판매업자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1 단계와 2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단계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하위 전체 변수들에 대해 개별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과 소벨테스트 등을 통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단계 연구에서는 1 단계 연구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개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1 단계 및 2 단계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납세자인 주류 판매업자에게 모든 납세자와 동등하고 공평한 신고업무와 납세서비스를 갖춘 세제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능력에 맞는 세율의 적정성을 확보한 과세 제도를 실행하여 국가 조세정책에 대한 세제인지를 높여야 한다.

둘째, 납세윤리의 하부요인으로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지지는 되지

않았지만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처벌규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의식이 납세제도에 의해 영향이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납세순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아울러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납세에 반한 조세회피 성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제도개선은 정(+)의 방향으로 조절 역할을 하며, 또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도 정(+)의 방향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능력에 맞는 적절한 세율체계와 정직하고 도덕적인 납세의식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한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과세품질을 혁신하는 납세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무자료·위장거래 등 주류의 불법행위는 축소될 것이다.

다섯째, 주류의 조세정책 요인으로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을 하부요인으로 선정하여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제도가 효율성을 가지는지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공정한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역량 강화,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조세정책의 적극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이 담보되고 무자료·위장거래에 대한 적발확률과 위법한 탈세의 경우 조사반을 확률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주류 면허의 사업범위와 조건의 지정에 있어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납세순응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납세순응의 결정요인 중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중요한 매개효과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성실납세를

위한 조세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세제인지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성
실납세를 유도하여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소들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세정책들의 실
행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더 복잡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주요 용어 :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납세윤리, 납세순응, 구조방정식 모델링,

주류 판매업자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출경쟁력 둔화와 내수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어 향후 국가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세는 사회공동체 존립에 필수적 재원이며 정수한 조세는 국가가 다양한 목적으로 수립한 정책들에 사용하여 왔다. 국가는 많은 재원을 국가안보, 국가인프라, 국민복지,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여 왔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는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세제도 개편과 예산계획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은 47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대비 9.5%의 증가가 있었다. 이는 국가재정을 통하여 경기회복과 국민 편익의 증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끊임없는 세제개편 노력과는 다르게 국민들은 조세 부문을 공정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소득세의 불평등 문제, 법인세와의 공평성 문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 간접세의 과세표준의 불평등 등의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세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가정책과 국민건강 등 공익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법과 면허의 관리에 있어서는 완전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 통계자료(2018)에 의한 최근 5년간(2013~2017)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을 보면, 총 조사건수 229건에 면허취소 116건, 면허정지 60건으로 행정처분 비율이 76.8%에 달해 그 위법성이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매출액의 24.3%

를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입대로 신고를 할 경우에 세후소득이 발생하기가 어려우므로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구조적인 탈법을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빅데이터¹⁾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전 성실신고 안내와 간편 사업자에 대한 미리채움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6.65%와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 8.06% 보다는 훨씬 높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타임즈, 2016). 탈세의 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에 우리나라 세수의 약 10%를 주세가 차지하였으며, 1980년대 경제의 고도성장 상황에도 주세는 내국세의 약 8%를 담당하여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7년 현재 주세의 비중은 1.23% 수준으로 낮아졌다(국세청 통계자료, 2018).

실업급여 및 근로 장려금 지원 등 복지재정의 지출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세원관리 시스템과 납세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납세자의 주류 불법거래, 무자료 거래, 조세회피, 범칙의 단속 그리고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쉽게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위키 백과).

주류 판매시장의 경우에 세제의 공평성과 적정성을 갖춘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조세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류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무자료 주류유통의 근절 등을 통하여 조세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인지도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량화를 통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최적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제도가 정부의 부과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납세협력 의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세무행정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신고납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및 “아레나” 등의 유흥업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마약·성범죄·탈세 등 불법혐의들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적 분노를 사는 행위로 관련 기관과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납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수평적 공평과 담세능력이 큰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이 요구된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모든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이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징세와 납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일반적인 금지사항을 주세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되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1989년 주세법 개정에서 도매 면허수를 완전 개방하였다가 신규면허의 수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다시 시·도별 인구수에 따른 제한 운영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류 판매업자에게 특정된 주류 판매업 면허는 도매업체의 경우, 범칙단속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하여 조세의 불균등 및 불공평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나,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양주의 판매에 대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²⁾ 태그 부착 및 유통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거래 및 가짜 양주의 불법거래를 근절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나 모든 주류에 대한 유통이 정상화되기에는 세제에 대한 이해와 납세도의를 높여야하며,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진 납세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일반 유통시장의 효율성과 유통체계의 개선방안, 성실납세 회피와 납세의식, 납세자신뢰도가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와 주류 조세정책상에서의 면허관리의 효율성과 규제에 합리성, 납세윤리인 납세의식, 조세정책의 신뢰성, 제도개선 그리고 납세순응을 개념화하여 주류 판매업자가 납세순응을 기피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특성인 교육수준, 소득금액, 수입금액, 사업연수, 업종과 세제인지도 요인으로 주류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세법에

2)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자태그로 불린다. RFID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위키 백과).

대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주류의 조세정책에 대한 면허의 효율성과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성, 납세윤리인 납세의식, 제도개선 그리고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주류 판매업자에 따라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특성과 세제인지도, 주류의 조세정책, 납세윤리와 조세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관련요인들을 정의하고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주류 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주세 사무처리 규정, 주류 유통과정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주류 관련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주류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주류 판매시장에서 조세회피가 없이 성실납세 제도에 순응할 수 있는 정부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납세자의 납세윤리인 납세의식, 면허의 효율성과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규제 of 합리성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조세정책의 홍보와 국세행정의 납세서비스 만으로 조세회피가 없는 성실납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와 조세성과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성실납세를 위한 제도개선과 납세자의 개인별 특성을 접목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의식의 창출에 필요한 결정요인들로 통합적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정책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에 있어서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 그리고 납세윤리에 대한 인지정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의 인지정도가 관련 요인들 상호간에 매개와 조절의 역할을 통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논문, 정책 자료, 학술지 및 단행본 등 조세 연구기관과 국세청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주류의 조세정책, 납세윤리,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에 대한 인지정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하는 납세자 중 주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CEO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인들의 측정을 위한 측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SPSS 및 AMOS(Ver. 18), 소벨테스트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조세정책의 제도적 요인과 인구 통계적 요인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1차적인 연구로 전체 개념들에 대한 내적일관도의 분석에 필요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적으로 가설검정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특성(교육수준, 소득금액, 수입금액, 사업연수, 업종)에 따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제인지도와 주류 조세정책, 납세윤리에 대한 인지정도가 조

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적인 가설검정으로 주류 판매업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윤리와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납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4차적인 가설검정으로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특성별 요인들과 각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 항목들, 세제인지도, 주류의 조세정책, 납세윤리, 조세정책의 신뢰성, 제도개선의 인지정도가 납세순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조절·매개효과 분석 및 매개·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 실증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가설이 지지된 요인들에 대하여 통합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행하였다. 전 단계의 실증·분석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개념들인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에 조세정책 신뢰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요인들에 대하여 내적일관도의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행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한 모형의 적합도 분석과 판별타당성 분석, 신뢰성 분석, 표준화요인 분석, 경로분석과 소벨테스트, 매개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2.2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각 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2.1절에서는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2절에서는 조세의 인지적 요인에 대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통한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2.3절에서는 정책적 요인과 제도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기술하였다.

2.4절은 주류의 조세정책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주류의 조세정책의 개념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2.5절은 조세의 정책적 요인에 관한 개념의 정의를 위하여 주세법과 주류 판매면허와 관련한 조세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6절은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에 관한 개념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2.7절은 통제변수들의 인지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기술하였다.

2.8절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정리하였다.

제 3장은 제 2장에서 논의된 자료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들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고, 변수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등의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절로 구성되었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서술하고 분석하였다.

4.1절에서는 조사의 개요와 자료 분석방법을 고찰하였으며, 표본특성에 대하여 분석을 실행하고 기술통계량을 기술하였다.

4.2절에서는 무응답편의와 동일방법편의 검증에 대하여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제 5장은 연구결과인 실증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의 결과를 다음과 같

이 3개의 절로 정리하였다.

5.1절에서는 전체 개념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석하였다.

5.2절에서는 가설 검증결과에 따라 가설의 지지 여부를 논의하여 해석하고 해당 개념의 조절효과 분석, 매개효과 분석과 통제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검증과정과 결과에 의해 가설의 지지 여부를 논의하고 해석하였다.

5.3절에서는 5.2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개념들로 가설검정에서 지지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통합적 개념의 인지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세제인지도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조세정책 신뢰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과정과 결과에 따라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논의하고 해석하여 기술하였다.

제 6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의미, 시사점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밝힌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1.1 납세순응의 개념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란 비합법적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하여 납세순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다(Andreoni et al., 1998). 조세회피란 세법상 적법하되 법형식의 남용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다(최명근, 1994). 조세회피의 개념은 국가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순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부(-)의 영향력인 반대 개념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탈세는 세금이 징수되는 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여왔다. 탈세를 막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지만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납세순응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납세순응에 반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표적인 조세회피유형과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조세회피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모형으로 경제학적 모형과 사회심리학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학적 연구모형에서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납세자, 즉 동일 조건하에서 위험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여, 조세회피를 세율과 적발될 확률,

그리고 벌과금의 함수적 관계로 설명한다.

둘째, 심리학적 연구모형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납세자 의식 구조 및 납세순응 동기를 조사하여 납세순응 행위에 대하여 더욱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납세순응 행위를 도덕적 가치·태도·인구 통계적 특성의 조사를 통해 경험적 실증·분석의 기법으로 분석한다. 이는 납세순응과의 인과관계 파악이 다른 연구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용이하기 때문이다(구광희, 2010).

2.1.2 납세순응의 선행연구

Spicer & Lundstedt(1976)는 납세자에 대한 교육과 납세윤리의 수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고, 연구결과로 납세자는 표준집단 내에서 조세를 회피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납세이행 의지가 미약하게 되어 납세순응에 부(-)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납세순응의 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의 조세정책이 있지만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세무조사이다. 이 수단은 탈세를 하는 납세자에게 가장 비용이 높은 가산세(벌과금) 등을 부과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수단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책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순응 행위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조사인데 잦은 세무조사는 정부와 납세자 간에 신뢰성에 영향을 주어 조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의 경제적 제제만으로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인할 수가 없으므로 납세자와 충돌없이 원활하게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전한 납세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비율과 신고누락에 대한 징벌적인 가

산세 부담을 주는 것이 세무조사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면 납세자들의 납세준응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진권 등, 2002). 정희상 등(2010)은 부당신고 가산세를 인상만으로는 기업의 납세에 대한 신고수준의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산세의 인상은 납세준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식이 높으면 납세자의 납세준응 행위는 자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자발적으로 고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뢰회복으로 납세준응 행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준응의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납세준응의 반대 개념의 조세회피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ogel(1974)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의미없는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실에 납세자들은 56%가 동의를 하였고, 필요하지 않는 사회적 개혁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에 5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성실한 납세풍토는 세금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잘 이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납세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는 조세회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납세신고 요구에 대한 납세준응이란 ‘납세자가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하고 신고시점의 적용 가능한 세법규정과 절차 및 판례에 따라 정직하게 세액을 보고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Fisher, 1992). Witte & Woodbury(1985)는 납세준응(tax compliance)에 대한 제재 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1970년에 미국 국세청에 제출된 납세 신고서를 자료로 한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자진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 척도로 하여, 1969년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와 연계하여 납세자들의 층화무작위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으로 계산하였다. 그리하여 세금의 과소납부와 과대납부의 절대값은 납부한 총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된다고 주장하였다.

Alm et al.(1992)은 세율을 포함한 납세구조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며,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명호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실제 납세순응 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실제 순응행위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를 개발하여 광의의 총괄 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과 소득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할 때 성실납세의향은 다른 지수보다 납세순응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실제 납세순응 행위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것과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성실납세의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처벌 위주의 세무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Boyd, 1986)와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유인 위주의 세무정책들이 납세순응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Falkinger & Walther, 1991)가 있으며, 납세자의 도덕성과 조세 문화가 납세순응에 유의적이라는 연구(Torgler, 2004)가 있다.

김형준·현진권(2004)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관계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 제도의 다양한 유형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며,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순응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납세순응의 구성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개념	연구결과
Boyd(1986)	세무조사, 조세정책, 납세순응	세무조사 등 처벌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침
Clotfelter(1983)	한계세율, 조세회피, 과세소득	높은 세율적용 납세자는 낮은 한계세율적용의 타인에 비해 자신의 과세소득을 낮게 보고
Falkinger & Walther(1991)	조세순응, 조세정책, 성실납세자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유인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제고
Song & Yarbrough(1978)	정부 재정지출, 납부세액, 납세순응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
Spicer & Becker(1980)	재정지출 혜택, 추가소득, 효용, 회피수준	추가소득의 효용 가치에 따라서 회피수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Spicer & Lundstedt(1976)	납세자교육, 조세윤리, 납세순응	조세회피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납세순응에 부정적 영향을 줌
Strumpel(1969)	조세구조, 조세규정, 납세순응률	유럽 조세구조의 비교로 조세규정을 강력 시행으로 납세순응을 촉진
Torgler(2004)	납세순응, 도덕성, 조세문화	납세자의 도덕성과 조세문화가 납세순응을 높이는 수단으로 효율적임
Westat(1980)	조세순응, 세법 복잡성, 납세자 불확실성	세법 복잡성이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악화시키며 그 결과 조세회피 방지 효과가 있다
Witte & Woodbury(1985)	과세당국, 활동수준, 세무조사, 조세순응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강도가 높을수록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
Yitzhaki(1974)	조세회피, 세율, 가산세, 조세의 효과	세율의 변화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이 있음
김 형 준 · 현 진 권(2004)	세무조사, 성실신고, 세수	세무조사 제도의 다양한 유형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침
박명호 등(2008)	세무조사, 가산세, 납세의식, 조세문화	납세의식의 성실납세의향은 다른 지수보다 납세순응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침
배춘호 등(2011)	조세행정서비스, 조세정책 불확실성 감소, 납세순응	조세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납세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킴으로써 납세순응 행위를 높임
이중환(1992)	적발확률, 가산세율, 세율, 세율구조, 재정 불공정성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방향성과 상대적 상황,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
정희상 등(2010)	납세순응, 가산세율, 신고수준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신고수준 차이 확인
현 진 권 · 박 창 균(2002)	세율, 납세순응	세율은 납세순응에 음(-)의 영향을 미쳐서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낮아짐

2.2 세제인지도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조세정책의 인지적 요인으로 세제인지를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과 세율의 적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고, 주류의 조세정책 인지도는 면허의 효율성과 불성실 사업자 규제의 합리성으로 구분하였다.

2.2.1 세제인지도의 개념

세제인지도(recognition of taxation system)는 납세자 개인이 세금 또는 조세제도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세제에 대한 불만은 성실납세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조세행정은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정적 절차로서 조세수입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조세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유인책의 하나로 선진화된 납세의식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세무행정과 세금부담의 공평성 등 세무행정이 지향하는 제도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제도적 요인은 조세체계 내부에 작동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로 구성된다.

현행 조세체계의 공평성 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조세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들은 이미 많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증명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을 검토하여 성실납세, 납세윤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순응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선정하여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유의적 영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납세자일수록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낮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성실납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숨은 세원에 대한 적발확률과 납세도의를 높여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성실납세환경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도적 요인들을 검토하여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인지도를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그리고 세율의 적정성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세제인지도의 요인으로 개념화한다.

2.2.2 세제인지도에 대한 선행연구

1) 세제의 공평성

공평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성질’을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이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부여되므로 조세의 4대 원칙인 확실성, 공평성, 편의성, 경제성으로 규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는 현행 조세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 스스로 조세회피 등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납세공평을 도모하려고 한다(심석무, 2002). 공평성은 납세제도의 공평성 및 납세자의 공평성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납세제도의 공평성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의 중요성 관점에서 과세의 형평성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두 가지 기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Madeo & Madeo, 1981).

납세자의 공평성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세를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공평성이라 한다. 반면 높은 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낮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이다. 조세의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평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일부는 성실 납세의식과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또 다른 연구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Spicer & Lunstedt(1976)와 Song & Yarbrough(1978)의 연구에서 조세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조세를 회피하는 성향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회피와 과세공평성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Lewis(1979)는 1977년 영국 바스(Bath)에서 2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탈세와 절세에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부가하여 납부세액, 조세체계의 부과기능, 누진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탈세에 동의하지 않았고, 탈세자는 법에 의하여 가혹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Spicer(1986)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인 심리원가(psychic cost)개념을 차용하여 조세회피 분석모형으로 납세자가 인지하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여부와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수준, 사회공동체의식 수준, 조세윤리를 심리원가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심리원가는 납세자의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생각, 사회공동체의식, 납세자에 대한 도의적 책무, 위험에 대한 태도 등과 함수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윤중옥·박현춘(2002)은 조세의식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세제의 공평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공평하지 못하면 조세회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주(2003)는 세제의 공평성, 세율의 적정성, 세법의 복잡성, 세무조사의 적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세제의 공평성과 정부지출의 신뢰성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납세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윤성·이진훤(2011)의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에 대한 비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세법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본화에 대한 비용의 회계처리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조세비용과 관련성이 있어 이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납세의 복잡성

세제 인지도에 대한 납세의 복잡성을 살펴보면, 세법은 더 많은 것을 규율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에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의뢰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납세의 복잡성이 조세순응에 역행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Milliron(1985)은 납세자를 상대로 4가지 차원에서 납세의 복잡성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주제의 성격(nature of the topic), 표현량(quantitativeness of the presentation), 법 악용의 취약성(vulnerability of the law misuse) 그리고 문장의 용이성(readability of the passage)으로 정의하고 있다.

Long & Swingen(1985)은 세법의 복잡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조세 신고서 작성자를 이용하였으며, 그들은 세법의 지나친 세밀성과 계수 계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세법의 복잡성에 대해 86%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Vogel(1974)은 성실납세와 세법복잡성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소득에 대한 탈세와 납세자의 태도와의 관계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남기원(2001)은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세제의 공평성, 세율의 적정성, 세법의 복잡성, 세무양식의 복잡성, 세무조사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 정부지출의 신뢰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성실납세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용범(2006)은 조세부담, 정부혜택, 세법복잡성, 적발 확률, 조세윤리를 납세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광주(2008)는 부동산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세제의 복잡성이 성실납세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 축소와 보유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세율의 적정성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되며, 납세자는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성실신고를 기피하게 된다. 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율이 증가할수록 납세순응에 대한 성실납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만큼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Clotfelter(1983)은 한계세율과 조세회피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낮은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다른 납세자에 비해서 자신의 과세소득을 낮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제공한 TCMP(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에서 분류된 소득계층 중에서 3개의 소득 계층을 선정하여 조사한 바, 한계세율과 세후소득의 소득 수준이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중요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박명호 등(2008)은 세무조사 비율과 세율이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보았다. 세제인지도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세제인지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개념	연구결과
Clotfelter(1983)	세율, 한계세율, 조세회피, 과세소득 신고	한계세율과 조세회피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납세자의 세율형태별 과세소득 신고 유형을 실증·분석
Jackson & Milliron(1986)	인구통계적 요인, 조세복잡성, 조세부담, 세무당국과 유대, 제재규정, 적발 확률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 대용변수로, 제도적 요인을 조세복잡성, 조세부담, 세무당국과의 유대, 제재규정, 적발 확률로 구분
Madeo & Madeo(1981)	가처분소득, 세제의 공정성, 정부재정 지출	가처분소득의 중요성 관점에서 과세의 형평성은 '수평적 공정과 수직적 공정' 두 가지 기능에서 고려되어야 함
Milliron(1985)	주제성격, 표현량, 법악용, 취약성, 문장용이성	납세자를 상대로 4가지 차원에서 납세의 복잡성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
Procano(1984)	공평한 조세시스템, 납세능력, 납세 필요성의 인식	공평한 조세시스템의 이해와 조세부담자의 납세능력과 납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다름
Spicer(1986)	심리원가, 조세제도의 공정성, 조세회피, 사회공동체의식	조세제도의 공정성, 사회공동체의식,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조세윤리를 심리원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
Vogel(1974)	성실납세, 세법의 복잡성	성실납세와 세법의 복잡성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힘
남기원(2001)	세제공평성, 세법복잡성, 세율적정성 등	세율이 높을수록 성실 납세도는 감소
문광주(2008)	세제공평성, 세제복잡성, 조세정책실효성 등	세제의 복잡성이 성실납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보유기간 등 활용으로 조세회피
심석무(2002)	조세제도, 납세준용행위	조세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의 공평을 도모함
여용범(2006)	조세부담, 세법복잡성, 적발 확률, 정부혜택, 납세의식	조세부담, 세법복잡성, 적발 확률, 정부혜택, 조세윤리를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정리
윤중옥·박현준(2002)	세제공평성, 소득수준, 조세회피	조세의 공정성과 소득수준의 불공평이 조세회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전태영(1990), 유시영(1992)	조세공평성, 조세회피 정도	조세공평성은 조세회피정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정환(1996), 홍정화·김원희(1997)	조세의 공정성, 조세회피, 조세제도	조세의 공정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서 조세공평성은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침
최근주(2003)	세제공평성, 복잡성, 신뢰성, 세무조사 등	공평성,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조세회피에 부(-)의 영향을 미침

2.3 조세정책의 신뢰도와 제도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2.3.1 조세정책의 신뢰도

1) 납세자의 신뢰도 개념

신뢰도(trust)를 Golembiewski & Mcconkie(1975)는 ‘어떤 사건, 과정 또는 사람에 대한 신임이나 의존’으로 정의한 반면, Sitkin & Roth(1993)는 ‘다른 사람의 동태와 미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의 심리적 상태’로 각각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세청(2009)의 보고서에서는 신뢰도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만족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신뢰도가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문분야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상황에 비추어 이를 적절하게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신뢰도 정의를 종합하여 납세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뢰도(taxpayer's trust)란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와 국세청, 국가의 조세정책 등에 대해 가지는 신임, 의존, 수용 등의 심리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김영락(2010)은 국민에게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업무특성이 국민의 경제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만족도 평가보다는 서비스 및 업무개선 목적을 두는 신뢰도 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납세자의 신뢰도는 국민-국가, 즉 국민-국세청의 권력관계에서 신뢰의 상대를 정부로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만족도가 아닌 납세자의 신뢰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신뢰도는 Thomas(1998)의 정부

신뢰의 유형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구광희, 2010; 김영락, 2010).

2) 조세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선행연구

납세자로서 국민들이 국세청, 국세 공무원, 그리고 납세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Vogel(1974)의 연구는 납세자들이 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조세순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ong & Yarbrough(1978)의 연구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징수능력이 강화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태영(1990)은 납세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면 조세회피 성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심태섭(2000)은 세무당국의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을 평가하였는데, 세무당국은 민원창구직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는 납세자의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당국의 개혁조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더불어 민원봉사실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의 응답자와 이용자가 세무사 사무실 근무자이기 때문으로 시설의 안락함 보다는 실속이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오기수(2002)의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조세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다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현황과 제도적 기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지만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 기술적·전문적이어서 접근하기가 난해하고 깊이 있는 연

구가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국세청(2009)의 보고서에서 2008년 기준 전국의 납세자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세자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납세순응도가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종구(2010)의 세무조사 신뢰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세무조사가 공정하다 인식될 때 조세행정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락(2010)의 연구는 세무조사와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정하였으며, 김영락(2012)의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의 신뢰도 및 납세순응행위 각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납세자 신뢰도 또한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할 때 세무당국이나 공무원 청렴성, 납세서비스 품질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도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정책신뢰도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조세정책 신뢰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개념	연구결과
Parent et al.(2005)	전자정부, 정부신뢰, 서비스 질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정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Song & Yarbrough (1978)	조세제도, 정부신뢰, 납세순응	조세제도가 신뢰받지 못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음
Vogel(1974)	정부신뢰, 조세순응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신뢰도가 조세순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영락(2010)	납세자신뢰도,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세무조사와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침
민기홍 등(2011)	납세의식, 조세제도, 세무행정 만족도	납세자 이해도와 조세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행정 만족도가 높음
오기수(2002)	이용현황, 제도적 기반, 운영상황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조세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함
이정기·신현대(2006)	세무당국의 유형성, 신뢰성, 납세순응	세무담당자의 반응, 확신, 공감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전태영(1990)	조세회피, 정부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조세회피는 감소

2.3.2 조세정책의 제도개선

1) 제도개선의 개념

조세회피 행위가 조세의 제도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개인의 특성 및 납세환경이 납세윤리 및 납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세제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세무당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세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았다(김동은·황호찬, 2005). 윤중옥·박현춘(2002)은 세제의 공정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불공평함을 느끼면 조세회피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규정도 조세회피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 제도개선에 대한 선행연구

Witte & Woodbury(1985)는 세무조사에서 적발확률, 가산세율의 증가가 자진납부와 신고소득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회피의 제재와 납세자에 대한 납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면 납세순응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oyd(1986)는 처벌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Dubin & Wilde(1988)도 세무조사와 같은 처벌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Falkinger & Walther(1991), Smith & Stalans(1991)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유인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Collins & Plumlee(1991)는 세율인상 및 납세순응과의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축소신고 기회와 수입확대 노력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찬웅(1996)은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율의 증가나,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여 누진세율의 적용 분기점을 최저세율과 초과 세율과의 차이를 최대화할 때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높이는 데 의미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Kaplan et al.(1997)은 법적제재의 의사소통은 도덕적 의식을 낮게 운용하는 집단에서는 납세순응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는 반면, 도덕적 의식을 높게 운용하는 집단에서는 이성적 납세순응도가 높아서 어떠한 교육적인 의사소통도 납세순응에 대한 개선효과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진권(2005)은 실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와 가산세 제도가 납세순응에 매우 유효한 조세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비경제적 요인으로 납세에 대한 교육이 납세순응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병목·박명호(2007)는 납세의식과 세정개혁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앞으로 정책과제로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 조직은 납세자의 편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 조직에서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전반적인 납세순응도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홍성근(2011)은 세무정보 전산화를 통한 제도개선 및 조세정책의 수립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포상적 조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도,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태정 등(2011)은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 이전에 논의되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납세자의 권익에 관한 연구로 정부에서 도입 준비 중인 세무검증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과세당국이 세원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특정한 직업군의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상기 등(2012)은 외부 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로 세무대리제도 중 납세자에게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열거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김광윤 등(2013)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과 독립성을 연구하였으며, 성실신고를 확인함에 있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안으로 소득신고의 투명성 확보라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수임하는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희열 등(2012)은 체납세액은 세수감소라는 문제와 함께 납세자 간에 조세 형평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방안으로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여 체납의 정리업무는 징세과에서 전담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연장, 과세자료 적기처리, 양도소득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호(2013)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그에 맞추어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 이후 첫 해에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2.4 주류의 조세정책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4.1 주류의 조세정책의 개념

조세는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정적 절차로써 조세수입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절대적인 방법이다. 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류 판매업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인지도로는 면허의 효율성과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성에 대하여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1) 면허의 효율성

주류 판매업 면허는 주세보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주세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가능한 행정법상의 허가³⁾와 같은 개념으로서, 면허 또는 허가에는 면허인에게만 유효한 일신전속³⁾으로 대인적인 것과 제조·판매시설기준 등에 한정하는 대물적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주류의 판매업 면허는 인적 허가³⁾와 물적 허가³⁾의 양자에 속해있는 혼합적 허가이다. 제조면허는 세원의 확보, 주질 향상과 주세보전이라는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판매면허는 유통과정에서의 주질 보존, 주류 수급조절과 각종 부정주류의 유통근절을 위한 주류 유통질서 확립 측면에서 정부의 합리적 정책운용의 요청이 있게 되어, 주류면허에 대한 주세사무처리 규정의 변천이 있어 왔다. 민속주 등의 인터넷을 통한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면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납세순응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규제의 합리성

Kaplan et al.(1997)은 도덕적 이성 및 교육적 의사소통 효과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세무조사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은 성실 납세의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예방하고 동시에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상(2012)은 규제개혁을 통한 합리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사유의 완화, 시설기준의 완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주류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일신전속(一身專屬)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위키 백과).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주류의 특성상 국민건강과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범칙조사 및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하여 무자료·위장거래, 무면허판매업자와 지입제 등 주류의 불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주류유통의 선진화와 성실납세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2.4.2 조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Minor & Harry(1982)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된 위험도의 추정은 단기간에 걸쳐서도 안정적이지 못하며, 납세자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느낀 경험 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실제로 과세 당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확률과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조사의 확률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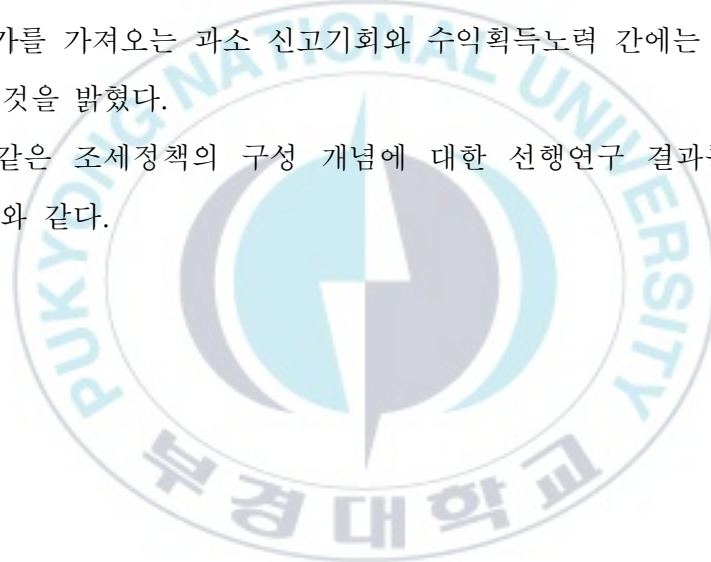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에서 실시 조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범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결과 주류의 불법거래 혐의가 있으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제세의 추징과 일정기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면허취소의 경우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을 통하여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과세당국의 조사에 따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납세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효력이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Spicer(1986)는 심리원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납세자 행동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행동모형에서 정부가 취하는 조세정책이란 단순히 법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예상 문제와 징벌수준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최적 정책변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신고 납부할 경제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신고 누락한 세원을 발굴하여 이 세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과 징벌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Dubin & Wilde(1988)은 세무조사와 가산세 등 처벌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Smith & Stalans(1991)와 Falkinger & Walther(1991)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유인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Collins & Plumlee(1991)는 높은 세율과 납세순응 간에는 부(-)의 관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과소 신고 기회와 수익획득노력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조세정책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조세정책의 구성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개념	연구결과
Boyd(1986)	세무조사, 처벌 위주 조세정책, 납세순응	처벌위주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유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
Collins & Plumlee(1991)	세율인상, 과소신고(납세불순응), 납세순응	세율인상과 납세순응 사이에 부(-)의 관계가, 과소신고(납세불순응)와 수익획득노력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
Kaplan et al.(1997)	법적제재 의사소통, 도덕적 이성, 납세순응	법적제재 의사소통이 도덕적 이성 활용 집단별 납세순응 개선효과의 차이
Falkinger & Walther (1991), Smith & Stalans(1991)	성실납세, 처벌, 세무정책, 납세순응	처벌위주 정책보다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유인위주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
Witte & Woodbury (1985)	세무조사, 가산세율, 조세정책, 자진납부	세무조사의 적발확률, 가산세율의 증가는 자진납부 및 신고소득을 높여준다고 주장
김상기 등(2012)	세무 조정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납세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선 방안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
신현대 · 이정기 (2007)	과세정책, 납세의무자, 납세순응	과세정책의 특성변수와 납세자의 성격적 특수변수 간 적합도는 납세순응 태도에 영향을 미침
정찬웅(1996)	세무조사, 가산세율, 누진세율, 납세순응	적용분기점의 최저세율과 초과세율의 차이가 크게 되면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현진권(2005)	세무조사, 가산세, 납세순응, 조세교육, 정책수단	세무조사, 가산세가 납세순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밝힘
홍성근(2011)	조세제도, 조세정책, 세무정보 전산화, 납세순응	세무정보 전산화, 조세제도 문제점과 만족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5 주류의 조세 정책적 요인에 관한 개념의 정의

정부의 주류에 대한 조세 정책적 요인으로서는 주세법, 주류 판매면허와 관련한 조세정책, 그리고 주류 조세정책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다.

2.5.1 주세법

1) 주세법의 개념

주류는 국민 대부분이 음용하는 기호음식으로서 소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주요 세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과 주질 향상을 기해야 하는 보건위생적 측면 및 양곡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주류산업 건전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국세청 주세실무, 2017년).

주세법은 190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16년 주세령, 1947년 음료세령 등의 수차례의 법령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주세법은 1949년 법률 제60호로 공포 시행된 이후 52여 차례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내국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실질적인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로서 간접세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와는 구별된다.

2) 주류의 개념 및 종류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alcohol content)⁴⁾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알코올이라도 음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메틸알코올이나 고체나 기체 등과 같이 음료가 아닌 것은 주류가 아니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은 주류가 아니나, 의약품이라도 알코올분 6도 이상이면 주류로 보아 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최종 성상을 주요 분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

4)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국세청 주세실무, 2017). pp.4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정이란 녹말 또는 당분이 함유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또는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이다.

발효주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탁주와 약주, 곡류 중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청주, 엿기름 홉(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녹말, 당분, 캐러멜, 수수)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해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만든 맥주, 과일 또는 과일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여 만든 과일주가 있다.

증류주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소주,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 만든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와 리큐르가 있다. 기타주류로는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과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등이 있다.

3) 주세의 신고납부

주세의 신고납부는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때분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 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세는 국가 조세수입 확보가 목적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과세대상은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로서 주정에 대하여는 $\text{kl당 } 57,000\text{원}$ 의 종량세, 주정을 제외한 일반주류에 대하여는 출고가액(수입주류는 수입신고 가격)에 5%~72%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표 2-5>와 같다.

〈표 2-5〉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단위 : %)

과세대상	알콜분	기준도수	주세율	교육세율	비 고
탁 주		7도	5	—	
약 주		11도	30	—	
청 주		16도	30	10	
맥 주		4도	72	30	
과실주		12도	30	10	
소 증류식		35도	72	30	
주 희석식		25도	72	30	
위스키		40도	72	30	
브랜드		40도	72	30	
일반증류주		40도	72	30	
리큐르		35도	72	30	
기타주류		25도	72	30	발효주가 아닌 것 발효에 의한 제성주류 불휘발분 30도 이상
		25도	30	10	
			10	10	
주 정	95도	95도	57,000 원/kl	—	1도초과 600원 가산
- 교육세율 : 주세의 세율이 70/100초과 30%, 주세의 세율이 70/100이하 10%, - 탁주, 약주, 주정은 교육세 없음					

주) 자료출처: 2017 주세실무(국세청, 2017), pp.319

2.5.2 주류 판매면허와 관련한 조세정책

면허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 허가하는 행정처분’ 으로 , 둘째,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에서 허가함. 또는 그런 일’ 로 정의하고 있다.

주세법 제6조와 8조에서 ‘주류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그 장소에 대한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요건들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있어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두 3849, 2001.7.27)에 따르면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대하여 면허 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정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유통과정을 총괄하면서 실제로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주류 판매업자의 난립을 예방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를 징수함에 있어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금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특정인에게 이를 허가하여 줌으로써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보와 주질 향상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주류정책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류는 유통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가공될 경우 국민보건위생을 위협하거나 탈세가 만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특별한 감독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다(국세청 주세실무, 2017).

1) 주류의 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조면허는 국가권력의 하나로서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다. 제조면허의 종류에는 신규면허, 공동면허, 환원면허, 보충면허, 시험 제조면허, 밀술 술덧 등의 제조면허가 있으며,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과 포괄 수유자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공통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포괄 수유자에는 법인도 포함한다.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 신청 시 신청서 기재내용과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로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을 면허조사서에 작성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지방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의 제한 및 거부요건, 신청서

류를 재검토하여 승인하되 맥주와 소주(희석식)의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류의 판매업 면허

주세법 제8조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류 판매업 면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도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주류 판매 종류별 면허의 수는 <표 2-6>과 같으며, 주류 판매 종류별 시설기준 및 사업범위 조건의 지정은 <표 2-7> 및 <표 2-8>과 같다.

<표 2-6>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현황(단위 : 개)

구분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도매업 면허	종합 주류	1,149	1,150	1,144
	특정주류 도매	1,685	1,681	1,628
	수입전문 도매	106	104	100
	수출입 업	1,188	1,272	1,263
	주정	1	1	1
	소계	4,129	4,208	4,136
소매업 면허	일반 소매업	126,844	130,126	132,562
	유흥 음식점	579,646	591,786	599,088
	전문 소매업	692	809	859
	관광 지정업	10	11	12
	소계	707,192	722,732	732,521
중개업	국내 중개업	236	236	259
	수출입 중개업	96	89	80
	소계	332	325	339
기타	직매장	273	276	282
	하치장	364	414	444
	소계	637	690	726
총계		712,290	727,955	737,722

주) 자료출처: 국세통계연보<전국사업체조사 2018> 보고서

〈표 2-7〉 주류 판매 면허의 시설기준 및 사업범위 조건의 지정(1)

면허구분	시설기준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	비고
주류제조자 직매장면허	용 기 주 입 제조장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제 조 장 에 서 생산한 주류	판매업자 는 판매, 중개업자 는 중개 로 기재
종 합 주 류 도매업	창 고 면 적 66㎡ 이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	
특 정 주 류 도매업	창 고 면 적 22㎡ 이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 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 특산주)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하여야 한다.	탁주, 민속주, 약주, 청주, 지 역 특 산 주, 소 규 모 맥 주, 조미용 주류	
주정도매업	저장고, 탱 크로리 등	주정만을 구입·판매 하여 야 한다.	주정	
수 출 입 업 (가)	창 고 면 적 22㎡ 이상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주류	
수 출 입 업 (나)	창 고 면 적 22㎡ 이상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 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 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외국산 주류	
주류중개업 (가)	—	수입 또는 수출 주류만 을 중개	수입, 수출하 는 주류	
주류중개업 (나)	슈퍼·연쇄 점 등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가맹점, 소속 직영점에만 중개	탁주와 주정 을 제외한 전 주류	
※ 지정조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 차량으로 등록,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면허(나)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 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부실 등으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 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주) 자료출처: 2017 주세실무(국세청, 2017), pp.84-103

〈표 2-8〉 주류 판매 면허의 시설기준 및 사업범위 조건의 지정(2)

면허구분	시설기준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	비고
유통 음식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 장소에서 소매하여 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관광지정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 장소에서 소매하여 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	—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 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 주정	
발효주정 소매업면허	—	발효 주정을 실수요자에 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의제소매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 장소에서 소매하여 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국내주류 중개업자의 직영점, 가맹점
전문소매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 장소에서 소매하여 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소매하는 자
기타소매업 면허	—	세무서장이 승인한 판매 장소와 승인기간만 소매 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체육시설, 축제장 등
※ 지정조건 1. 유통음식점, 관광지정업, 공업용주정 소매업, 발효주정 소매업, 의제소매업 면허는 사업범위를 위반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 2. 전문소매업 면허는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 3. 기타소매업 면허는 사업범위를 위반하거나, 타 법령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				

주) 자료출처; 2017 주세실무(국세청, 2017), pp.84-103

2.5.3 주류 조세정책의 관리제도

1) 주류의 구입판매 관리제도

도매업자는 주류를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며,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유통음식업자의 경우, 주류의 제조사 및 도매업자로부터 유통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 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 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경우, 당해 본부 또는 지부에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 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주류의 판매는 대형매장용 주류 또는 가정용 주류만을 공급할 수 있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를 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전통주 제조자로서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표<2-9>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주류구매 전용카드 제도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과 주류 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사용하도록 발급된 카드로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간의 거래와 주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탈루혐의

가 없으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면제와 성실납세자 표창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한다.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사용으로 실물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주류거래 투명성이 보장되며, 무자료 거래 근절과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근거 과세에 활용함으로써 주류유통 정상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표 2-9〉 과태료 부과기준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과태료 금액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 판매를 한 경우 - 지역 특산주, 민속주 제조자	300 만원
- 지역 특산주, 민속주 제조자 이외의 자	500 만원
• 통신 판매자가 지켜할 사항 또는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미 준수	100 만원
• 통신 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 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 항목을 표시한 경우	200 만원
• 그 밖에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미 준수	100 만원

주) 자료 : 조세범 처벌법 17조

3) 대형매장의 관리제도

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가진 점포로서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1,000㎡ 이하라도 해당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매장으로 본다.

대형매장의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맥주 4상자(500ml 48병), 위스키 및 브랜디 1상자(500ml 6병), 소주 2상자(360ml 40병)를 초과하여 판매할 때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판매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 거래정상화를 위한 국세청 고시2015-61호에 의하면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의 매장, 공무원연금 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셋째, 주류 공급자와 공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넷째,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4) RFID 활용의 주류 유통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파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원거리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무선주파수 인식이라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위스키는 제조단계에서 제품별 고유번호와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정보를 국세청 전산서버에 전송하여 주류유통경로 및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되고 있다. 주류의 유통단계에서 무자료 및 위장거래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최종 소비자는 이를 휴대전화나 유흥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확인기기(<표 2-10> 참조)를 이용하여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음용에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FID 리더기 구입 시에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

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를 세액공제하며, RFID 태그 가격은 주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표 2-10> RFID 진품확인 서비스 기기

종류	특징	단가
동글 보급 (08-09년)	휴대폰 연결, 스마트폰 에서는 인식불가, 피쳐폰 중 50% 작동, 근거리 근접거리 인식	40만 원 정도
유심칩 보급 (2010년)	휴대폰 내장, SKT 4개모델(갤럭시S, 갤럭시 S2, 베가, 베가S)만 가능, 근접거리 인식	5만 원 정도
RFID 리더기	휴대폰 연결(블루투스), 휴대폰 중 약 60% 정도 작동, 30cm 인식	10~25만 원 정도
신용카드 단말기 겸용 리더기	휴대폰에 연결 필요 없음, 신용카드 단말기에 RFID 리더 기능 추가, 50~100cm 인식	50만 원 이상

주) 2017 국세청 주세실무(pp.310)

5) 주세범칙 및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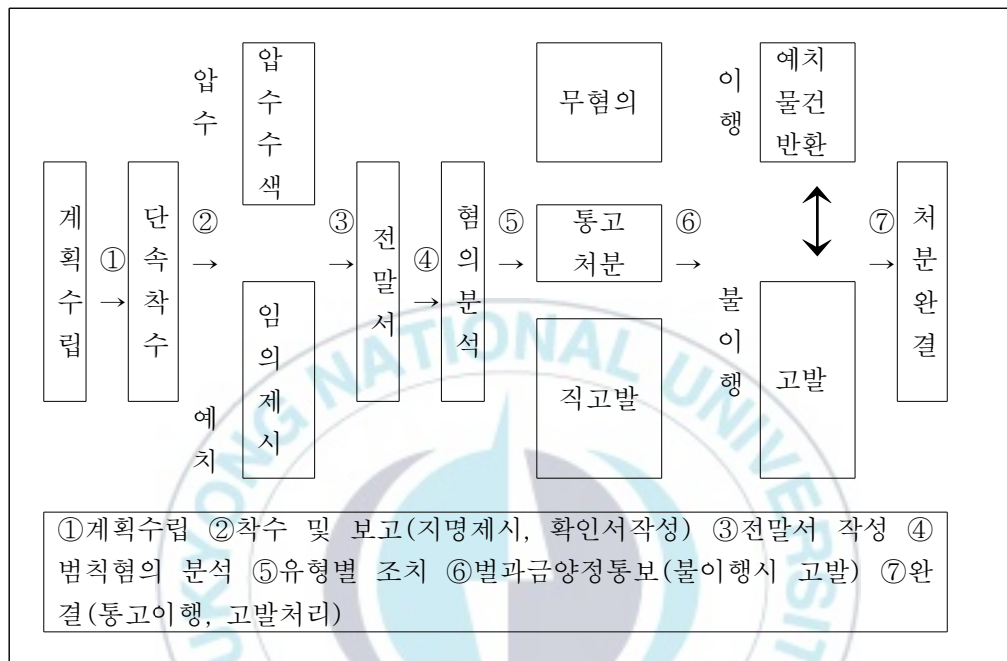
주세 범칙물건의 단속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이 관장하는데, 세무서간 연합단속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 및 전국 일제단속과 중요한 무자료 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단속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

범칙물건의 단속절차는 <표 2-11>과 같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에 규정하고 있다. 단속결과 범칙물건의 처리는 면허자일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담당하고, 무면허자일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관할세무서가 관할하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다.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범칙자에 대하여는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에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범칙조사 및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업무에 활용한다. 무면허 주류의 판매로 인한 범칙물건의 단속에 해당하는 판매장소의 건물주에게는 2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발급이 제

한다(국세청 주세실무, 2017).

<표 2-11> 주세 범칙물건 단속절차



주) 2017 국세청 주세실무(pp.398)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업무는 지방 국세청장이 관장하며, 직전연도 신고수입금액이 50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은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14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조사대상자는 주류 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 자료와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입차량 운영·무자료거래·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그리고 기타 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또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체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를 차등 관리하고 사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변칙 사용한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 유통과정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결정·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행정처분에는 면허취소, 주류 제조 또는 출고 정지(감량)처분, 그리고 주류판매 정지처분이 있으며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주류 판매업자 면허처벌규정

구분	내용	적발비율	처분
면허 취소	1. 사업범위위반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판매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없이 판매 4. 처벌 또는 처분 받은 후 1년 이내 재범 5. 지입차량 운영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 주류 미판매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 8. 주류판매업 면허를 양도 또는 대여 9. 타인과 동업경영 10. 무자료, 위장거래 금액 10% 이상 거래		면허취소
면허 정지	1. 허위 거짓으로 판매장 이전	7~10% 미만	판매정지 3개월
	2.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판매 보유	4 ~7% 미만	판매정지 2개월
	3.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 4. 무자료 및 위장거래 금액 1%이상	1 ~4% 미만	판매정지 1개월

주) 주세법 제15조

최근 5년간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은 <표 2-13>과 같으며, 총 조사건수 229건에 면허취소 116건, 면허정지 60건, 처분합계 176건으로

행정처분 비율이 76.8%에 이르고 있다. 주요 적출 내용으로는 무자료거래와 위장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제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업소에서는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줄여 가치분소득의 증대를 꾀하며, 일반 유흥주점이나 음식점에서는 매출액 대비 매입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상의 경우, 주류 소비가 많은 대형 유흥업소에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의 지원과 무자료 주류 등의 공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체 판매업자 대비 조사선정이 많지는 않지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위법사항이 76.8%에 이르는 것은 주류 판매시장 저변에 조세회피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3〉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조사건수	적출금액	부과세액	벌과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2013년	47	1,264	132	97	30	7
2014년	47	1,472	66	152	25	15
2015년	48	773	51	68	19	14
2016년	44	1,075	52	35	23	10
2017년	43	595	18	42	19	14
계	229	5,179	319	394	116	60

주) 2018 국세청 통계자료

2.6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2.6.1 납세윤리에 관련한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납세준응(tax compliance)

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조세회피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개별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조세납부를 최소화하거나 덜 내리는 행위로서 합법적인 행위의 영역보다는 위법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 부담의 경감행위는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로 구분한다. 탈세는 위법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이지만 조세회피는 절세와 탈세의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으로써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지만 그 결과가 입법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는 한편으로는 적법성을 갖는 행위이지만 또 한편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조세회피 행위에는 탈세와 조세포탈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탈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합법적인 조세회피행위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적법한 납세의무보다 적은 조세납부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는 조세회피로 규정하기 때문에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않는다. 절세와 탈세는 이론상으로는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구분가능하나 정부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은 그 업종이 속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2.6.2 납세윤리에 대한 선행연구

Vogel(1974)은 스웨덴 국립중앙통계국에서 납세제도에 관해 실시했던 여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태도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자영사업자의 경우에 탈세의 기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41%이었고, 자영사업자가 아닌 소득자는 25.6%가 탈세의 기회

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원천징수가 아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31.6%가 탈세할 기회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인 소득자는 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Song & Yarbrough(1978)는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윤리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조사했다. 그 연구결과는 납세신고 행위를 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탈세 내용의 적발확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신 거주자나 세입자 보다 기혼자와 자가 소유자의 납세윤리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과 납세윤리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세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감, 무력감과 불신감으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납세윤리 의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윤리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기준 또는 도덕적 가치이며, 납세윤리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 납세자로서의 시민행동의 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납세자가 더 윤리적인가 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납세자의 조세회피가 도덕적으로 나쁜지에 대한 가부에 대하여 특히 금액이 적을 때에는 도덕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였다.

Furnham(1983)은 청교도적 윤리관과 조세에 대한 태도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교도적 윤리관을 가진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에 대한 가치관은 기대보다 높지 않았다. 이는 청교도적 윤리관을 가진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Mason & Calvin(1984)의 연구에서는 조세윤리와 조세회피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Benjamini & Maital(1985)는 일반적인 납세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조세

회피 분위기가 확산되면 자신의 조세회피행위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러한 규칙에 따라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Kaplan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세회피 정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납세자들은 타인이 조세회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회피를 정당화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6.3 납세의식의 개념

납세의식(tax consciousness)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조세 전반에 대한 총체적 의식과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조세를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복지·문화·교육 등 재정지출의 편익을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 심리적 양태로서 과세당국이나 조세법령 및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 심리상태, 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다. 납세의식을 납세자들이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로 보았다(Schmolders, 1970). 납세의식을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도적 요인으로서 조세체계 내부에 작동하는 제도적 변수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수들은 세무조사비율, 세율, 가산세율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으로 조세체계의 외부에 위치해 조세의식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교육·문화·경제상황·사회계층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상승작용을 통하여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과 사업유형, 직업, 결혼여부, 종교, 지역 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요인들도 포함한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납세부담의 적정성, 공평성, 조세회피,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이 납세의식을 형성하여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6.4 납세의식의 선행연구

납세의식은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순응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주관적 개념이다. 조세이해도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이해도의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 세율의 인지여부와 같은 객관적 조세제도에 대한 인지도이다. 조세형평도는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 평가, 현행 조세부담 및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인지하는 형평성 정도,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여부 등을 나타낸다. 또한, 성실납세 의향은 법률에 규정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 납세의향을 포괄하고 있으며, 납세순응은 행동으로 표출되는 납세의식을 나타낸다. 납세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주된 지표로 성실납세의향 지표와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있으며 보조지표로는 조세형평도 지표와 조세이해도 지표가 있다(홍인수·홍정화, 2013).

박명호 등(2008)은 한국인의 납세의식을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그리고 실제납세순응행위의 실태를 나타내는 실제순응행위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로 총괄 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로 직업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통제하여도 성실납부 의향은 다른 지수보다 더 납세순응 결정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세순응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조세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 차원의 성실납세 의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민기홍 등(2011)은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납세순응 행위는 납세의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없었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와 납세에 대한 납세의식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성별 · 과세유형 · 학력 · 소득수준으로 볼 때, 남자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며, 개인사업자나 고학력일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므로 납세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성만 · 전병욱(2011)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분야의 과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조세순응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의 실행이 납세자들의 자발적 조세순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 중국 · 일본 3개 주요국가의 비교를 바탕으로 납세의식에 공정경쟁 의식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납세의식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납세의식의 구성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개념	연구결과
Schmolders(1970)	납세태도, 납세도의, 조세부담감, 납세기강	납세의식을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로 정의 납세자의 개념을 파악
Benjamini & Maital(1985)	개인특성, 의사결정, 조세회피	일반적인 납세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받음
Furnham(1983)	청교도적 윤리, 납세태도, 성실납세	청교도적 윤리관을 가진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은 기대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광희(2010)	납세윤리, 성실납세, 조세회피, 공정성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와 성실납세는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김영락 · 임영규(2013)	납세윤리, 성실납세, 조세공평성	납세윤리와 성실납세는 충성도, 납세윤리와 조세공평성은 불평행동과 무행동에 영향을 미침
민가홍 등(2011)	납세의식, 조세제도, 세무행정 만족도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식이 높을수록 세무행정 만족도가 높음
박명호 등(2008)	세무조사, 가산세, 납세의식, 조세문화	직업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통제하여도 성실납세의향은 다른 지수보다 더 납세순응행위에 큰 영향이 있음
박병목(2000)	납세의식, 공정성	납세의식 수준이 납세부담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윤성만 · 전병욱(2011)	공정경쟁, 납세의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경쟁의식은 자발적인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침

2.7 통제변수들의 인지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조세 체제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납세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교육, 문화, 경제상황, 사회계층의 네 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실납세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사업유형, 직업, 결혼여부, 종교, 지역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도 포함한다. 또한,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공평성,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이 납세의식을 통하여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우윤(1997)은 납세자의 조세포탈 성향을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를 조세특정요인으로 세법의 복잡성과 조세지식, 납세자의 인성적 특성, 조세에 대한 신념과 인식,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으로 나누었고 납세자의 직업분류(근로, 자유소득자)와 탈세 경험의 유무라는 조절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세포탈 성향의 정도로 나타냈다.

유시영(1992)은 실험연구 방법으로 소득세 납세자의 조세회피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사업자 집단과 잠재 납세자 집단으로 구분해서 비교·분석하고, 종속변수는 조세회피 태도, 독립변수는 적발확률, 세율, 가산세율 그리고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소득수준과 조세회피 행동에는 상관이 없으나, 세율과 조세회피 행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발확률이 세율변화와 기타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력과 빈번한 세무조사와 과중한 가산세가 탈세 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세율이 올라갈수록 탈세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며, 남성과 젊은 기혼자 집단이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박명호 등(2008)의 설문연구에서는 직업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제한한 이후에도 성실납부 의향은 다른 어떠한 지수보다 더 납세순응의 결정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유통시장의 효율성, 유통체계의 개선방안, 성실납세 회피와 납세의식,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에
서의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 납세윤리인 납세의식, 조세정책의
신뢰성, 제도개선, 납세순응을 개념화하여 주류 판매업자가 납세순응을 기
피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특성으로 교육수준, 소득금액, 수입금액, 사업연수, 업종을
두고 세제인지도 요인으로 주류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세법에 대한 세
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주류 조세정책에 대한 면허의
효율성과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성,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주류
판매업자에 따라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탈세 방지를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여러 개혁방안들을
추진 중이지만 탈세 예방의 효과적 정책수단 강구를 위한 납세순응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조세회피가 없는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
한 조세정책의 수립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인지정도가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
석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제거
됨으로써 독립변수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 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 변수의
개념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조작화하여 통합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각
변수들 간에 공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개념들을 모두 배제하고 1단계 연구에서 가설이 지지된 개
념들에 대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행하였다. 1단계의

가설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념들의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여 실증·분석들을 실행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공분산과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측정 항목들의 제거를 통해 각 요인들에 대한 판별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구모형에 대한 각각의 모든 적합도는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재분석을 실시해 판별하였고, 관련된 가설들을 재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전체 모형 중에서 가설이 지지된 요인들에 대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시사점과 의미에 대하여 추가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적인 관점의 분석으로 연구모형의 주요 요인들을 하위 요소로 세분화하기보다는 변수들의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각 요인들이 상호 인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요인에 대하여 분석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조세정책들의 실행은 매우 복잡하고 통합적으로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합적인 접근방법은 새로운 연구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납세순응의 결정요인 중에서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세제의 공정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성실납세를 위한 조세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세제인지도 뿐만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Ⅲ. 연구의 설계와 방법

3.1 연구 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세제인지도는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및 ‘세율의 적정성’으로, 주류 조세정책은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으로 그리고 납세윤리는 ‘납세의식’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납세순응으로 한다. 또한 매개 또는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을 두어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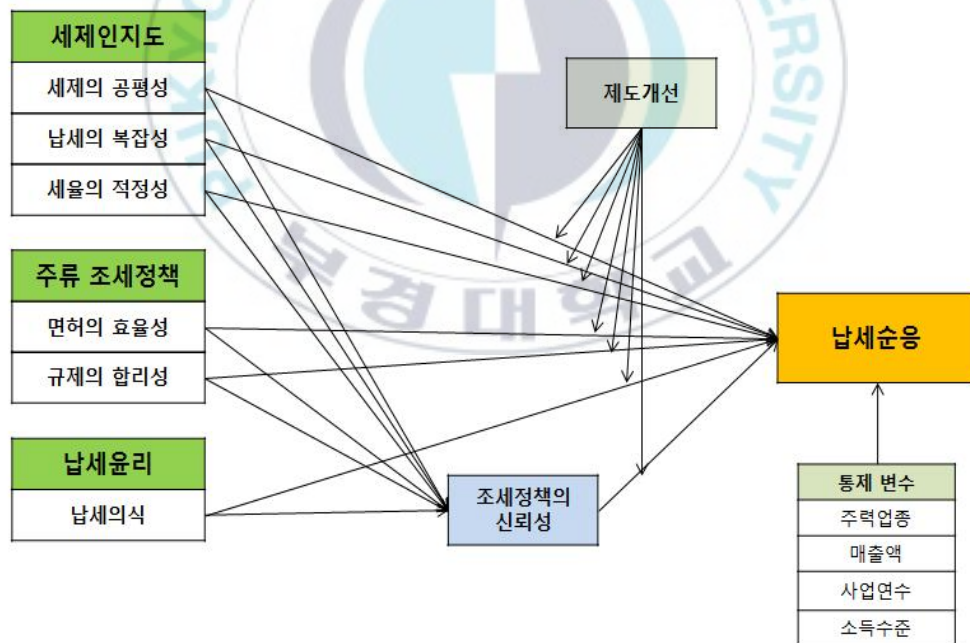
세제인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과세의 형평성은 수평적·수직적 공평의 기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Madeo & Madeo, 1981). Milliron(1985)의 납세의 복잡성과 Clotfelter(1983)의 한계세율과 조세회피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발로 하여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류 조세정책에서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은 주류 판매업자인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결정하는 납세순응의 결정요인의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조세정책의 구조를 변화시켜 국가 조세정책 수립과 세수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윤리는 Benjamini & Maital(1985)의 연구와 같이 개별 납세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납세의식은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성실납세 의향 및 납세순응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조세의 이해도는 세목별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로 평가될 수 있다.

납세순응을 위해서는 세제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성실납세에 대한 조세회피 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주류 조세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의 조세정

책에 대하여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행한다면 납세 윤리의 개선으로 납세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실행을 통하여 조세회피 요인을 최소화시켜 나가면 납세순응 역시 향상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과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과 납세윤리를 선행변수로,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제도개선을 조절변수로, 납세순응을 결과변수로, 주력업종 · 매출액 · 사업연수 ·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각 요인들이 납세순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다수의 연구들에서 세제인지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Jackson & Milliron, 1986; Spicer & Lunsedt, 1976; Song & Yarbrough, 1978; Vogel, 1974).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 심석무(2002)는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납세자의 특성과 세제인지도, 종속변수로 납세순응을 분석하여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제의 공정성,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법의 복잡성으로 구성되는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주(2003)는 조세제도의 인지도와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세제의 공정성, 세율의 적정성, 세법의 복잡성, 세무조사의 적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세무조사의 적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제공정성으로 구성되는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설정과 관련하여 세제인지도는 하위요인으로 ‘세제의 공정성’, ‘납세의 복잡성’과 ‘세율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세제의 공정성과의 관계

세제의 공정성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들에서 세제의 공정성을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Spicer & Lunsedt, 1976).

Song & Yarbrough(1978)의 연구에서는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세공평성과 납세준응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종환(1992)은 조세제도의 공평성인식과 성실납세(tax compliance)에 대한 조세지식의 영향을 분석하고 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식변화를 통하여 조세준응의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2) 납세의 복잡성과의 관계

납세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준응 간의 관계를 보면, 다수의 연구들에서 납세의 복잡성을 납세준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납세의 복잡성이 조세준응에 역행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Vogel, 1974; Jackson & Milliron, 1986). 그리고 Vogel(1974)의 연구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납세준응과 납세제도의 복잡성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세율의 적정성과의 관계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준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세율의 적정성을 납세준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히고 있다(Jackson & Milliron, 1986). 그리고 Clotfelter(1983)의 연구는 한계세율과 조세회피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낮은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과세소득을 낮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하였다.

남기원(2001)의 연구에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성실납세는 감소한다는 것

이 경험적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제인지도인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세제의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납세의 복잡성은 납세순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세율의 적정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주류 조세정책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Boyd(1986)는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벌위주의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Dubin & Wilde(1988)도 세무조사와 가산세 등 처벌위주의 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Smith & Stalans(1991)와 Falkinger & Walther(1991)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유인중심의 조세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류 조세정책 변수에 대하여 하위요인 변수로 ‘면허의 효율성’ 과 ‘규제의 합리성’ 으로 구분하여 변수의 개념을 정리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면허의 효율성과의 관계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는 주세 보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주세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면허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규제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면허의 효율성에 따라 납세순응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규제의 합리성과의 관계

규제의 합리성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주류의 특성상 국민건강과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범칙조사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은 실제적으로 성실납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Smith & Stalans(1991)와 Falkinger & Walther(1991)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조세정책방향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지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측정하였다(Minor & Harry, 198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주류 조세정책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면허의 효율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규제의 합리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납세윤리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납세의식은 조세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로 보고 납세자가 조세를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편익을 받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 심리적 상황으로 과세당국이나 조세법규 및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Schmolders, 1970). 따라서 납세윤리에 대하여 그 하위요인의 변수로 납세의식에 대한 인지정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납세윤리와 의 관계

Furnham(1983)의 연구에서 청교도적 노동윤리와 조세에 대한 태도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청교도적 윤리의식을 가진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무이행에 대한 가치는 높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Mason & Calvin(1984)의 연구에서는 조세윤리와 조세회피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납세의식과의 관계

Song and Yarbrough(1978)는 미국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윤리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납세신고 행위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탈세사실의 적발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이나 전·월세 입주자 보다 기혼자와 자가 소유자들의 납세윤리가 대체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희상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높으면 자발적인 납세와 납세순응행위는 높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게 되어 납세순응 행위는 자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납세윤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납세윤리인 납세의식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세제인지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정희상 등(2010)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높으면 자발적인 납세순응 행위는 높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여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양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여 납세순응 행위는 자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김석범(2004)은 정부 신뢰도는 모든 법인에서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 세제의 공평성과의 관계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그러한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납세자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회피를 시도하려 한다(Strumpel, 1969).

이필우(1975)는 조세부담이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부과될 때 조세저항은 적을 것이며, 조세제도 및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면 조세저항과 조세회피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심석무(2002)는 납세자는 현행 조세제도에 불만을 품고 조세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면, 납세자 스스로가 조세회피 등의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납세공평성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납세의 복잡성과의 관계

Milliron(1985)은 4가지 차원에서 세법의 복잡성을 정의하고, 이것은 주제의 성격(nature of the topic), 표현량(quantitativeness of the presentation), 법 악용의 취약성(vulnerability of the law to misuse)과

문장의 용이성(readability of the passage)이라 했다. 그리고 Long and Swingen(1985)은 세법의 복잡성을 작성자의 납세신고서를 이용할 때 세법의 지나친 세밀성과 계수계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납세제도의 복잡성에 대하여 86%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Vogel(1974)은 성실납세와 세법복잡성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Westat(1980)의 연구는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은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순응에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제의 복잡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류 판매업자의 납세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정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세율의 적정성과의 관계

Musgrave & Thin(1948)은 주류의 가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의 경우에 조세 수입의 소득과 가격 변동에 대한 반응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종상(2012)은 주류산업의 발전과 세수관리 측면에서 종가세 과세방식은 종량세에 비하여 알코올의 관리를 통한 세원 관리와 주류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을 고급화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원·민희철(2010)은 담배·주류·갬블 등의 재화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율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담배, 주류 및 갬블 등 개별소비세 품목을 위주로 과세근거와 세율결정 요인을 최적 조세이론, 세원 확보 경쟁, 외부성의 교정, 정치적 영향력과 국가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세제인지도는 어떤 방식

으로든 주류 판매업자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세율의 적정성에 관련한 인지와 정책의 신뢰성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세제인지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세제의 공평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의 공평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3 : 납세의 복잡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5 : 세율의 적정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6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5 주류 조세정책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주류 조세정책의 하위요인인 ‘면허의 효율성’ 및 ‘규제의 합리성’ 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정도와 관련한 영향력의 분석을 위하여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면허의 효율성과의 관계

주류 조세정책에 대한 면허의 효율성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성명재·박상원(2010)은 주류 제조면허 제도의 개선방향에서 주류 제조와 관련한 진입장벽, 시장의 왜곡, 세원관리와 행정관리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주류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행정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

제기준은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면허행정의 경우에 세원관리가 조세당국의 고유 업무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주류 제조면허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의 효율성의 인지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규제의 합리성과의 관계

주류 제조·판매업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주도로 주정 분야의 신규 제조면허 허용과 주정 생산량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주류생산 분야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 사유의 완화와 함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폭적인 주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상(2012)은 규제개혁을 통한 합리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사유 완화와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주류행정의 선진화에는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류정책방향이 세금징수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주류 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서현수,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 조세정책에 대한 인지정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주류 조세정책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 면허의 효율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면허의 효율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3 : 규제의 합리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4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규제의 합리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6 납세의식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Mason and Calvin(1984)은 정직한 납세자들은 다른 납세자들의 조세법위반과 과중한 세금의 규모를 비난하였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규범이 중립적이거나 규제가 미약해지면 조세회피를 예방하지 못해 탈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규범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납세윤리 측면에서 납세자가 인지하는 납세의식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Dean et al.(1980)은 스코틀랜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탈세기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조세당국에 그들의 소득 중 일부만을 신고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납세자들은 벌을 받지 않고 대규모 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료들의 도덕성을 상대적으로 의심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탈세하기로 결정하는 사유를 응답자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과세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납세윤리의 측면에서, Vogel(1974)에 의하면 납세자들은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의미없는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56%가 동의하였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개혁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51%가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조정환(1996)은 납세윤리는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세윤리를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를 통하여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에 대한 인지정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납세윤리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 납세의식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7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조절효과)

Alm et al.(1992)은 세율을 포함한 납세구조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배춘호 등(2011)은 국세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홈택스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세행정서비스에 대한 전산화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홈택스 서비스시스템의 운용은 납세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킴으로써 납세순응 행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에 각 요인들에 대하여 납세자가 인지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세제인지도 및 납세의식과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간의 관계

최근주(2003)는 세제의 공정성, 세율의 적정성, 세법의 복잡성, 세무조사의 적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을 납세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희상 등(2010)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가산세율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를 전후로 기업의 과세소득 신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변화가 납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2) 주류 조세정책 및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

전태영(1990)은 소득수준, 세율,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변수들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 규제에 대한 납세자반응, 벌칙수준의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Vogel(1974)은 납세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무의미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56%가 동의를 하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개혁에 징수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5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고양과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세풍토의 조성은 세금으로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잘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납세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여부는 조세회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세정책의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 제도개선은 세제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7-2 : 제도개선은 납세의 복잡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부(-)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7-3 :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절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7-4 : 제도개선은 면허의 효율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7-5 : 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7-6 : 제도개선은 납세의식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3.2.8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조절효과)

Clotfelter(1983)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낮은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 보다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Srinivasen(1973)의 연구에서 누진세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유발하기 쉬우며, 역진세⁵⁾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정도가 가장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누진세가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보다 조세수입이 많게 된다는 이론적 근거는 조세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타당하며,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비례세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관련 연구에서 윤태화·심현옥(2008)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경영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업의 재무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와 투자확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목적은 일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설비 투자와 같은 기업의 유형 자산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하방법 외에 다른 조세 지원 제도를 함께 고려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도

5)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누진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과세 물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누진세율 및 역진세율에 의한 세 가지 과세방법이 있다(사회복지용어사전, 서강훈, 2013).

개선과 납세순응에 대한 가설의 설정에 대한 관련 내용들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 인지도와 납세자의 조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와 주류 판매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정도, 납세윤리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물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조세정책의 제도개선 및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

유시영(1992)은 소득세 신고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실험의 참가자를 사업자 집단과 잠재납세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종속변수는 조세회피 태도, 독립변수는 세율, 가산세율, 적발 확률,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수준과 조세회피 행위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세율과 조세회피 행위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적발확률이 높아지면 조세회피 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산세율이 높아지면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했으며, 조세회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산세율에 비하여 적발확률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우윤(1997)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납세자의 조세포탈 성향을 연구하였다. 납세제도의 복잡성은 근로 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납세행동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으며, 탈세 경험이 있는 납세자가 세제의 복잡성 및 조세포탈 성향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탈세 경험이 없는 납세자 보다는 탈세 경험을 가진 납세자의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황(1993)은 우리나라의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납세의식, 납세풍토, 과세공평성, 재정공평성, 조세부담률, 행정능력, 제재정도, 세제복잡성, 매출액, 직종 등의 변수를 요인으로 조세회피의 행태에 대하여

연구 분석을 실행하였다.

2) 주류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

Kaplan et al.,(1997)은 연구에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덕적 이성 및 교육적 의사소통 효과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무조사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은 성실 납세의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무조사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예방하고 동시에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변수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기원(2001)은 세율의 적정성과 성실 납세의식의 영향과의 관계에서 양자의 관계가 납세자 모두에게 공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높은 세율이 성실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납세의식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

Vogel(1974)은 스웨덴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다수의 불필요한 사회개혁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51.5%가 동의를 하였다고 밝히고, 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발적이고 건전한 신고납세 풍토는 세금에 의해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납세자들의 불편부당한 시각이 조세회피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trumpel(1969)은 유럽의 조세구조 비교 연구에서 조세규정의 강력한 시행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남부유럽 여러 나라들의 조세부와 역사에서 많이 보아 왔지만, 이들 나라들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성실 납세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Spicer & Lundstedt(1976)는 미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

향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은 조세회피의 증가와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Witte & Woodbury(1985)는 반대로 세무조사나 행정처분의 증가는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보다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조정환(1996)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납세윤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부(-)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상황적 요인으로 조세부담감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는 전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원일(2000)은 납세자를 성실집단과 불성실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 요인으로서 조세 윤리의식에 있어서는 불성실납세자 집단에서의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석무(2002)는 납세자의 특성과 세제인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조세회피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정부지출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적법성에서 세제인지는 조세회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진권 등(2002)은 연구실험 자료를 사용한 정책 수단들의 납세순응에 대한 탄력성을 비교한 결과로 정책수단이 납세순응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은 납세순응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납세순응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집행할 때에는 변화의 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여야 효과적으로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태영(1990)은 실험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세정책의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각 요인별 인지정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의 조절효과와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조절·매개의 영향력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 제도개선은 납세순응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8-1 : 제도개선은 세제의 공평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8-2 : 제도개선은 납세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 부(-)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8-3 :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절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8-4 : 제도개선은 면허의 효율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8-5 : 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8-6 : 제도개선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9 :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매개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가설 10 :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조절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들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연구 대상인 해당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리커트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7)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납세순응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에 독립변수로 세제인지도인 ‘세제의 공평성·납세의 복잡성·세율의 적정성’과 주류 조세정책의 ‘면허의 효율성·규제의 합리성’,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으로 구성하고 조절변수인 제도개선 그리고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들을 기술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와 AMOS(Ver. 18)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절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내적일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태파악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요인들의 조절 및 매개효과의 분석에 필요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붓 스트레핑(boot 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과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한 경로분석과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3.3.1 종속변수

납세순응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납세순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와 주류 유통구조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진화된 세정을 도입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지하였다. 따라서 납세순응에 관한 납세자의 인지 정도를 개념화하고 조작화해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①조세납부는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②조세회피 기회가 있어도 성실납부를 한다. ③주변의 성실납세를 보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싶

다. ④세금납부를 위해 근거자료를 모두 보관한다. ⑤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지양한다. ⑥주류의 무자료 거래는 축소되어야 한다. ⑦주류의 위장거래는 축소되어야 한다. ⑧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실납세에 기여한다. ⑨개인별 사전납세 안내는 사전 검토 사항에 도움이 된다.’ 등의 총 9개 항목을 조작화해 측정하였다(Spicer & Lundstedt, 1976; Witte & Woodbury, 1985).

3.3.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세제인지도에 대하여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과 세율의 적정성, 주류 조세정책은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으로 세분화하여 다차원(2nd Order)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납세윤리로는 납세의식을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작화해 측정하였다.

1) 세제인지도

주류 판매업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으로 개념화하여 검증된 문항을 참조하고 조작화해서 측정하였다.

(가) 세제의 공평성

세제의 공평성은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업무와 납세서비스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운용되어야 하므로 세금의 신고납부와 납세서비스의 공평성, 공평과세 등과 관련한 측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인지하는 정도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①신고납부와 납세서비스는 공평하게 적용, ②주류 판매업 면허는 공정하게 적용, ③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 ④주세 관련 세법의 구조가 형평에 맞게 구성, ⑤공평과세를 위한 비

과세 감면규정은 유지'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조작화해서 총 5개 항목을 측정하였다(Song & Yarbrough, 1978, Lewis, 1979; 남기원, 2001; 최근주, 2003).

(나) 납세의 복잡성

납세의 복잡성의 개념은 세무 전문가도 아닌 일반 납세자가 세법을 모두 이해하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세밀성과 복잡한 계산방법 등은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지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적용된 세제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와 세법의 구조가 단순하면 세무사를 찾지 않고 납세를 할 것이라는 등의 인지정도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의 세부항목은 '①적용 세제를 이해하고 따름, ②조세회피 이유가 납세제도의 복잡성, ③현행 제도보다 주류구입과 판매가 용이하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 ④세법구조가 단순할수록 성실납세 비율 증가, ⑤세법구조가 단순하면 세무사를 찾지 않고 납세'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개념화하고 조작화해 총 5개 항목을 측정하였다(Jackson & Milliron, 1986; 남기원, 2001).

(다) 세율의 적정성

세율의 적정성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되며 납세자는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위해 성실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담세 능력에 맞는 적절한 세율의 체계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지할 수 있게 이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①적용세율을 잘 알고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 ②세율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하면 더 성실하게 신고 납부, ③현재 세율체계가 만족스럽지 못함, ④조세회피 욕구가 세금과 관련된 다른 요인보다 세율 때문임, ⑤주류출고 시 주세 5~72%는 세율이 높은 편임, ⑥과세사

업자의 부가가치세 10%는 세율이 높은 편임, ⑦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10%는 세율이 높은 편임, ⑧법인세 10~25%는 세율이 높은 편임, ⑨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6~42%는 세율이 높은 편임' 등으로 구분하여 총 9개 항목을 개념화하여 조작화해서 측정하였다(Clotfelter, 1983; 남기원, 2001; 최근주, 2003).

2) 주류 조세정책

(가) 면허의 효율성

주류 조세정책과 관련한 면허의 효율성에 대하여 측정 항목들의 개념화를 시행하였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는 주세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면허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규제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면허의 효율성에 따라 납세순응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지정도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①도매업의 지역별 면허제한은 효율적, ②수입주류 도매업의 지역제한 없이 판매장 이전 자유는 효율적, ③식품위생법에 따른 의제판매업 면허교부는 효율적, ④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 지정은 주세보전과 주류거래 정상화 및 관리통제에 효율적, ⑤마트, 슈퍼, 편의점에서 쉽게 주류구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롭지만 국민편익을 위해서 용인, ⑥의제판매업자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주종별, 인별 주류 판매량 제한은 필요, ⑦주류 판매업 종사자는 교육이수를 법제화하여 최소한의 소양교육과 홍보가 필요'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개념화하고 조작화해서 총 7개 항목을 측정하였다(국세청 통계자료, 2018; 국세청 주세실무, 2017).

(나) 규제의 합리성

규제의 합리성은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주류의 특성상 국민건강과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범칙조사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은 실제로 성실납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지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순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①범칙단속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무자료 거래 및 주류 불법거래 근절에 기여, ②위장거래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성실납세 가능성이 증가, ③과세당국이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조세회피 행위를 엄격하게 밝힘, ④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잘 이루어짐, ⑤현행 범칙단속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처벌 강도는 높음, ⑥과세 당국은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 ⑦주류 유통과정의 추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⑧위법한 탈세의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사 받을 확률이 높음, ⑨무자료·위장거래로 세무조사 시에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높음’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조작화해서 총 9개 항목을 측정하였다(Minor & Harry, 1982).

3) 납세윤리에 따른 납세의식

납세의식(tax consciousness)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조세 전반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인 가치관과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조세를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복지·문화·교육 등 재정지출의 편익을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심리적 상태로서 조세당국이나 조세법령 및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납세의식을 납세자들이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로 보았다(Schmolders, 1970).

납세윤리의 하위요인으로 납세의식 측면에서 인지개념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요인으로 ‘①정직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노력, ②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의지, ③사회가 투명할수록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 ④국가 재정지출의 편익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기꺼이 조세를 부담, ⑤과세당국의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이해하고 따름, ⑥조세방침이나 조세법규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편임’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개념화하여 총 6개 문항을 측정하였다(Schmolders, 1970; Reidenbach & Robin, 1990; Burns & Kiecker, 1995; Benjamini & Maital, 1985).

3.3.3 조절변수

제도개선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성실납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성실납세를 위하여 조세정책제도가 개선될 경우에 납세순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이를 인지하는 정도를 개념화하였다. 이와 관련한 세부 요인인 측정 항목으로 ‘①위장거래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및 위장거래 10% 미만에 대한 벌금 1억 원 이하, ②지입제 판매업자의 판매금액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및 판매금액 10% 미만에 대한 벌금 1억 원 이하, ③무면허 판매업자의 판매금액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및 판매금액의 10% 미만에 대한 벌금 1억 원 이하, ④성실납세 포상은 늘이고 납세자 우대정책을 확대, ⑤납세홍보와 과세품질 혁신으로 납세 만족도를 높이는 선진화된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로 조작화해서 총 5개 항목을 측정하였다(Witte & Woodbury, 1985; 민기홍 등 2011; 배수진·심태섭, 2011).

3.3.4 매개변수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

자가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면 성실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류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무자료 주류 근절을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은 계속 진화되고 발전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①양주유통에 RFID태그 부착 활용이 주류 거래정상화에 긍정적 역할, ②주류구매 시 주류구매 전용카드 이용이 성실납세에 기여, ③주류 판매지역 제한 해제는 주류유통의 효율성에 기여, ④소비자 경품 제공 금지는 과다 경쟁예방 효과, ⑤국민세금을 정부가 올바르게 사용, ⑥세금보다 정부혜택이 많으면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할 것임’ 등으로 인지하는 정도로 총 6개 항목을 측정하였다(국세청 통계자료, 2018; 주세실무, 2017).

3.3.5 통제변수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업종·매출액·사업연수·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에서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Wu et al., 2007; 이우윤, 1997; 박명호 등, 2008).

앞서 소개한 요인들과 관련 하위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측정변수와 설문항목

변수		문항	설문항목	출처
납세순응		9	- 조세납부의 적법성 - 조세회피가 없는 성실 납부 - 주변의 성실납세를 보고 성실납부 - 근거자료를 모두 보관 - 축소신고를 지양 - 주류의 무자료 거래는 축소 - 주류의 위장 거래 축소 -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은 성실납세에 기여 - 개인별 사전납세 안내는 도움이 됨	Spicer & Lundstedt (1976), Witte & Woodbury (1985)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5	- 신고납부와 납세서비스의 공평 적용 - 주류 판매업 면허의 공정 적용 - 소득수준에 비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 - 주세 관련 세법 구조의 형평성 - 공평과세를 위한 비과세 감면규정의 유지	Song & Yarbrough (1978), Lewis (1979), 남기원 (2001), 최근주 (2003)
	납세의 복잡성	5	- 적용 세제를 이해하고 잘 따름 - 납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조세회피 -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 - 세법의 구조가 단순하면 성실납세 비율 증가 - 세법의 구조가 단순하면 세무사 없이 납세	Jackson & Milliron (1986), 남기원 (2001)
	세율의 적정성	9	- 적용세율을 잘 알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 - 세율이 대폭 감소하면 더 성실하게 신고 납부 - 현재의 세율 체계가 만족스럽지 못함 - 조세회피 욕구가 높은 세율 때문임 - 주세 5~72%는 세율이 높음 - 부가가치세 10%는 세율이 높음 - 개별소비세 10%는 세율이 높음 - 법인세 10~25%는 세율이 높음 - 종합소득세 6~42%는 세율이 높음	Clotfelter (1983), 남기원 (2001), 최근주 (2003)
조세 정책	면허의 효율성	7	- 도매업의 지역별 면허제한은 효율적 - 수입주류 판매장의 이전 자유는 효율적 - 의제판매업 면허교부는 효율적 - 면허의 사업범위, 조건 지정은 효율적 - 국민편익을 위한 주류구입 방법의 용이성 - 의제판매업자의 주류 판매량 제한 필요 - 주류 판매 종사자 교육이수 법제화와 홍보	국세청통계자료 (2018), 국세청 주세실무 (2017)

변 수		문항	설문 항목	출처
조세 정책	규제의 합리성	9	- 범칙단속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성실납세 가능성 증가 -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행위를 엄격하게 밝힘 - 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잘 이루어짐 - 범칙단속/유통과정 추적조사 처벌강도가 높음 - 과세 당국은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 - 추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 탈세는 과세당국의 조사 받을 확률이 높음 - 무자료/위장거래는 탈세행위적발 확률이 높음	Minor & Harry (1982)
납세 윤리	납세의식	6	- 정직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노력 -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의지 - 사회가 투명할수록 성실납세 문화 확산 - 국가편익으로 생활, 기꺼이 조세를 부담 - 조세작용 가치관이 있어 이해하고 따름 - 조세방침과 조세법규를 이해하고 따름	Schmolders(1970), Reidenbach & Robin(1990, Burns & Kiecker(1995), Benjamini & Maital(1985)
제도개선		5	- 위장거래 면허취소 및 벌금 1억 원 이하 - 지입제 판매업자 면허취소 및 벌금 1억 원 이하 - 무면허 판매업자 면허취소 및 벌금 1억 원 이하 - 성실납세 포상 늘이고 납세자 우대정책 확대 - 납세 만족도를 높이는 선진화된 시스템 개발	Witte & Woodbury(1985) 민기홍 등(2011), 배수진·심태섭(2011)
조세정책의 신뢰성		6	- RFID태그 부착이 거래 정상화에 긍정적 역할 - 주류구매 전용카드 이용이 성실납세에 기여 - 판매지역 제한해제는 주류유통 효율성에 기여 - 소비자 경품 제공금지는 과다 경쟁예방 효과 -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올바르게 사용 - 세금보다 정부혜택 많으면 성실하게 세금납부	국세청통계자료 (2018), 국세청 주세실무 (2017)
통제변수		4	- 주력업종 - 매출액 - 사업연수 - 소득수준	Wu et al.(2007), 이우윤(1997), 박명호 등(2008)

IV. 실증분석

4.1 조사개요 및 자료 분석

4.1.1 조사개요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주류 판매사업자 중 종합주류 도매업자와 의제 판매업자(유흥주점, 일반음식)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류도매면허 수는 4,136개이고, 의제판매면허 수는 599,088개, 부산·울산·경남의 주류도매면허 수는 599개이며, 의제판매면허 수는 102,370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주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인지도, 조세정책과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정책의 신뢰도와 제도개선에 대한 인지도가 변수들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자료 수집은 전자메일, 팩스, 대면수집 방법을 병행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설문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450부이고, 385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한 응답 75부를 제거하고, 310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4.1.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제시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먼저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문항들 간에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지를 보여주는 수치인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

용하였으며,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공통인자(common factor)를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으로 축소시켜 정보를 축약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이나 판별타당성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할 때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분석기법의 이용이 곤란하게 된다. 각 요인들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SMART-PL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상호 독립적인 변수로 축소시켜 새로운 차원의 요인으로 만들어 측정의 타당성을 방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분석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되는 변수들은 측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되지 않는 변수들은 상이한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로 간주되어 조사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각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검정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기술통계, 신뢰성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상관관계분석 결과와 1단계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에 대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2단계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한 요인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분석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제약을 적게 받는 편으로 세제인지도의 세제의 공평성·납세의 복잡성·세율의 적정성, 조세정책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 가설을 재설정하여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제인지도의 하위요인인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분산을 설정하여 다중공선성의 제약을 줄이고 적합도와 판별타당성을 높여서 실증·분석을 다시 실행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SPSS와 AMOS(Ver. 18)를 이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실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고 내적일관도로 묶인 요인들로 연구모형을 작성하여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가설을 재설정하였다.

둘째, 실태 파악을 위해 변수들의 기초적 통계분석을 다시 실행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개념에 대한 표준화요인부하량의 분석, 각 요인과 전체 요인에 대한 적합도 검정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조세정책 신뢰성이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과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경로분석과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하여 가설에 대한 검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1.3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사업자의 업종은 도매업이 102개(32.9%), 유흥주점이 95개(30.6%), 일반음식점은 113개(36.5%)의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업연수에 있어서는 5년 미만이 67개사(21.6%)로부터 20년 이상이 58개사(18.7%)로 나타났다.

년 매출에 있어서는 5억 원 미만이 156개사(50.3%)에서부터 100억 원 이상이 11개사(3.55%)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5명 미만이 140개사(45.2%)로부터 30명 이상이 13개사(4.2%)로 나타났으며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기업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업종	도매업	102(32.9)	종업원 수	5명 미만	140(45.2)
	소매업	—		10명 미만	67(21.6)
	유흥주점	95(30.6)		20명 미만	46(14.8)
	일반음식점	113(36.5)		30명 미만	44(14.2)
년 매출	5억원 미만	156(50.3)		30명 이상	13(4.2)
	10억원 미만	45(14.5)	사업 연수	5년 미만	67(21.6)
	30억원 미만	11(3.55)		5년~10년	109(35.2)
	50억원 미만	36(11.6)		10년~20년	76(24.5)
	100억원 미만	51(16.5)		20년 이상	58(18.7)
	100억원 이상	11(3.55)		—	—

또한 전체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208명(67.1%)이고 여자가 102명(32.9%)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으로 볼 때 1,500만 원 미만이 6개사(1.9%)에서 8,000만 원 이상이 22개사(7.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30대 미만이 9개사(2.9%)에서 60대 이상이 60개사(19.4%)로 나타났다. 학력의 분포는 고졸 이하가 98개사(31.6%)에서 대학원 이상이 11개사(3.5%)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264개사

(85.2%) 미혼은 46개사(14.8%)이고 직급은 최고 경영자가 310개사 (100%)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표본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08(67.1)	소득 수준	1,500만원 미만	6(1.9)
	여자	102(32.9)		1,500~3,000만원 미만	68(21.9)
결혼 여부	기혼	264(85.2)		3,000~4,500만원 미만	51(16.5)
	미혼	46(14.8)		4,500~6,000만원 미만	93(30.0)
년령	30대미만	9(2.9)		6,000~8,000만원 미만	70(22.6)
	40대미만	50(16.1)	학력	8,000만원 이상	22(7.1)
	50대미만	94(30.3)		고졸 이하	98(31.6)
	60대미만	97(31.3)		전문대졸	93(30.0)
	60대이상	60(19.4)		대졸	108(34.8)
직급	최고경영자	310(100)		대학원 이상	11(3.5)

4.2 무응답 편의와 동일방법 편의 검증

4.2.1 무응답 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편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 중에서 설문 수집기간 전반부에 수집된 25%의 설문과 설문 수집기간 후반부에 수집된 설문을 비교·분석하였다(Armstrong & Overton, 1977).

무응답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을 거부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무응답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연구자가 설정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응답자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한다. 둘째는 불성실한 응답자가 이유 없이 응답을 회피할 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응답

자가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자신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질문자체를 회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의 일부분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수집된 질문을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이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변수, 교육 수준, 제도개선,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및 규제 of 합리성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한 결과, p 값이 모두 0.05를 초과하여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무응답 편의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무응답 편의 검증결과

변수	규모	N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양측)
교육수준	전반 25%	63	2.100	0.946	0.554	0.582
	후반 25%	63	2.000	0.950		
제도개선	전반 25%	63	4.778	1.257	-0.851	0.398
	후반 25%	63	4.963	0.375		
세제의 공평성	전반 25%	63	4.737	1.059	0.288	0.774
	후반 25%	63	4.687	0.819		
납세의 복잡성	전반 25%	63	4.312	1.500	0.532	0.596
	후반 25%	63	4.169	1.182		
규제의 합리성	전반 25%	63	5.276	0.669	-0.519	0.605
	후반 25%	63	5.359	1.101		

4.2.2 동일방법 편의 검증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및 종속 변수가 같은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로 동일 응답원에 의한 측정일 때 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동일방법 편의는 측정의 타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수 간 관계의 정도를 감소 또는 증가시켜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동일방법 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적인 방법과 사후적인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관련 변수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설문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여 응답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응답자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솔직히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Podsakoff et al., 2000).

동일방법 편의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적인 방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으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표 4-4>와 같이 분석에 사용된 전체의 변수를 투입하여 비회전 요인분석(unrotated 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설명가능한(eigen value ≥ 1.000) 1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공평성 분산이 22.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잡성이 19.360%, 합리성이 8.776%, 적정성이 7.986%로 나타나 4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59.050%를 차지하므로 하나의 일반적 요인(general factor)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일방법 편의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Podsakoff et al., 2000).

<표 4-4> 동일방법 편의 검증에 위한 비회전요인 분석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2.981	22.928	22.928	2.981	22.928	22.928
2	2.517	19.360	42.288	2.517	19.360	42.288
3	1.141	8.776	51.064	1.141	8.776	51.064
4	1.038	7.986	59.050	1.038	7.986	59.050
5	0.995	7.651	66.701			
6	0.843	6.485	73.187			
7	0.753	5.794	78.981			
8	0.644	4.956	83.937			
9	0.593	4.558	88.495			
10	0.546	4.197	92.692			
11	0.491	3.777	96.169			
12	0.346	2.664	99.132			
13	0.113	0.868	100.00			

V. 연구결과

5.1 전체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5.1.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조사하였다. 신뢰성 분석의 결과는 <표 5-1>과 같다. 측정된 변수 대부분이 0.68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황상돈·이운식, 2016).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고려(0으로 가정)하여 서로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주는 방법인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과 회전방식으로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로 9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값은 0.6 이상으로 설정하였다(Challaglla & Shervani, 1996; Singh & Rhoads, 1991; Bagozzi & Yi, 1988).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내적일관성

전체변수의 신뢰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는 <표 5-1>, <표 5-2>와 <표 5-3>과 같다.

전체변수의 각 요인별로 총 61개의 측정 항목 중에서 요인별로 묶이지 않고 내적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납세순응 4개 항목, 세제인지도의 하위 요인인 납세의 복잡성의 2개 항목, 세율의 적정성의 5개 항목과 세제의 공평성의 2개 항목, 제도개선의 2개 항목, 주류 조세정책의 면허의 효율성 4개 항목, 규제의 합리성 4개 항목, 조세정책의 신뢰성 3개 항목,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의 3개 항목 등 모두 29개 항목을 제거하였다.

<표 5-1> 전체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항목	성분								
	1	2	3	4	5	6	7	8	9
합리성 7	0.913	0.018	0.027	-0.008	0.067	-0.004	0.011	-0.020	0.067
합리성 8	0.903	-0.038	0.024	-0.037	-0.128	-0.015	-0.015	0.048	0.008
합리성 6	0.837	0.011	0.047	-0.006	0.054	-0.065	0.034	-0.042	-0.019
합리성 9	0.800	0.021	-0.033	-0.041	-0.087	0.058	-0.004	0.091	0.022
합리성 4	0.647	0.029	0.081	0.050	0.155	0.036	0.075	-0.001	-0.066
납세순응 2	0.052	0.829	0.010	0.057	0.026	0.131	0.142	-0.084	0.076
납세순응 1	0.009	0.808	0.078	0.077	0.081	0.125	0.047	-0.058	0.040
납세순응 3	0.065	0.757	0.076	0.080	0.030	0.135	0.080	-0.077	0.190
납세순응 5	-0.050	0.755	-0.013	0.164	-0.006	0.126	0.025	0.040	0.062
납세순응 4	-0.020	0.737	0.013	0.290	0.004	0.092	0.032	0.000	0.073
복잡성 5	0.008	0.034	0.935	0.077	0.051	0.046	0.060	-0.008	0.075
복잡성 4	0.079	0.061	0.912	0.131	0.045	0.118	0.044	-0.027	0.011
복잡성 3	0.062	0.047	0.906	0.011	0.055	0.052	0.071	-0.008	0.091
적정성 3	-0.043	0.163	0.085	0.830	-0.039	0.072	0.158	0.031	0.111
적정성 4	0.007	0.190	0.032	0.782	0.051	0.068	0.183	0.096	0.217
적정성 7	0.067	0.214	0.053	0.738	0.097	0.189	0.092	0.041	-0.041
적정성 2	-0.083	0.103	0.090	0.601	-0.024	0.139	0.195	-0.015	0.277
납세의식 2	0.073	0.049	0.050	-0.014	0.943	-0.007	0.002	-0.016	0.009
납세의식 1	-0.012	0.079	0.033	0.005	0.920	-0.022	0.041	-0.048	0.022
납세의식 3	0.010	-0.012	0.065	0.078	0.851	-0.020	-0.023	-0.146	-0.121
제도개선 1	-0.037	0.188	0.099	0.095	-0.011	0.873	0.138	0.003	0.157
제도개선 2	0.027	0.225	0.063	0.127	0.007	0.851	0.145	0.017	0.192
제도개선 3	0.024	0.220	0.080	0.219	-0.055	0.733	0.114	0.005	0.099
공평성 2	-0.014	0.065	0.045	0.169	-0.040	0.174	0.861	-0.008	0.085
공평성 1	0.019	0.064	0.056	0.227	0.058	0.097	0.828	0.022	0.111
공평성 4	0.101	0.148	0.074	0.127	0.004	0.088	0.730	0.085	0.077
효율성 3	0.033	-0.025	-0.030	0.010	-0.004	0.013	0.052	0.865	0.020
효율성 4	-0.013	-0.046	0.008	-0.035	-0.132	0.032	-0.018	0.858	0.046
효율성 1	0.041	-0.065	-0.014	0.131	-0.054	-0.023	0.051	0.678	-0.097
신뢰성 3	0.053	0.033	0.109	0.117	-0.050	0.137	0.099	-0.046	0.772
신뢰성 4	-0.072	0.203	0.035	0.144	-0.058	0.042	0.012	0.019	0.758
신뢰성 5	0.028	0.149	0.026	0.144	0.025	0.240	0.169	-0.019	0.657
고유값	3.472	3.401	2.622	2.607	2.581	2.320	2.212	2.022	1.941
설명 분산	10.852	10.828	8.195	8.146	8.067	7.218	6.914	6.319	6.066
누적 분산								0.730	72.435
Cronbach's α	0.882	0.865	0.924	0.808	0.901	0.858	0.805		0.687

전체 연구변수는 9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9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2.435%가 설명되어 고유값은 모두 허용치인 1.0을 상회한 1.941~3.472로 확인되고, 각 요인의 적재값도 적정수준을 나타내어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KMO 적합성 검증: 0.78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5,609.163$ (d.f=496), $p<0.001$).

<표 5-2> 전체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 항목	Factor loading	Eigen value	누적분산(%)	항목 삭제된 Cronbach 's α	Cronbac h' s α
주류 조세 정책	규 제의 합리성	합리성 7	0.913	3.472	10.852	0.826	0.882
		합리성 8	0.903			0.832	
		합리성 6	0.837			0.832	
		합리성 9	0.800			0.867	
		합리성 4	0.647			0.878	
	면허의 효율성	효율성 3	0.865	2.022	66.369	0.560	0.730
		효율성 4	0.858			0.572	
		효율성 1	0.678			0.728	
납세순응		순응도 2	0.829	3.401	21.480	0.825	0.865
		순응도 1	0.808			0.837	
		순응도 3	0.757			0.837	
		순응도 5	0.755			0.844	
		순응도 4	0.737			0.841	
세제 인지도	납세의 복잡성	복잡성 5	0.935	2.622	29.675	0.914	0.924
		복잡성 4	0.912			0.884	
		복잡성 3	0.906			0.914	
	세율의 적정성	적정성 3	0.830	2.607	37.820	0.709	0.808
		적정성 4	0.782			0.721	
		적정성 7	0.738			0.793	
		적정성 2	0.601			0.803	
	세 제의 공평성	공평성 2	0.861	2.212	60.049	0.656	0.805
		공평성 1	0.828			0.693	
		공평성 4	0.730			0.805	
납세윤리		납세의식 2	0.943	2.581	45.887	0.839	0.901
		납세의식 1	0.920			0.845	
		납세의식 3	0.851			0.848	
제도개선		제도개선 1	0.873	2.320	53.136	0.749	0.858
		제도개선 2	0.851			0.757	
		제도개선 3	0.733			0.854	
조세정책의 신뢰성		신뢰성 3	0.772	1.941	72.435	0.607	0.687
		신뢰성 4	0.758			0.569	
		신뢰성 5	0.657			0.607	

〈표 5-3〉 전체변수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변수		최초 항목 수	신뢰성 분석 결과 수	설문항목	Cronbach's α
주류 조세 정책	규제의 합리성	9	5	- 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정 -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 -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공정 - 위법한 탈세의 경우 조사받을 확률이 높음 - 무자료, 위장거래에 대한 적발확률이 높음	0.882
	면허의 효율성	7	3	- 종합주류도매업의 지역별 면허제한은 효율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는 효율적 - 주류 면허의 사업범위, 조건지정이 효율적	0.730
납세순응		9	5	- 조세납부의 적법성 - 세금의 성실납부 - 적정한 신고 금액 - 올바른 증빙자료 보관 - 무자료거래의 축소	0.865
세제인지도	납세의 복잡성	5	3	- 주류의 구입 및 판매가 용이하면 성실납세 - 세법구조가 단순하면 성실납세비율 증가 - 세법구조가 단순하면 세무사 의뢰없이 납세	0.924
	세율의 적정성	9	4	- 세율이 감소하면 성실신고 - 현재 세율체계의 만족도 - 조세회피 욕구와 세율과의 관련성 - 개별소비세 10%는 세율이 높음	0.808
	세제의 공평성	5	3	- 신고납부와 납세서비스의 공평 적용 - 주류 판매업 면허의 공정 적용 - 주세 관련 세법 구조의 형평성	0.805
납세윤리		6	3	- 정직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노력 -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의지 - 사회가 투명할수록 성실납세 문화 확산	0.901
제도개선		5	3	- 위장거래 면허취소 및 벌금 1억 원 이하로 개선 - 성실한 납세자 우대정책제도 개선 - 납세 만족도를 높이는 선진화된 시스템 개발	0.858
조세정책의 신뢰성		6	3	- 주류구매 전용카드 이용 여부 - 판매지역 제한해제는 주류유통에 효율적임 -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	0.687

5.1.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기술통계량

통제변수로 사용한 업종, 사업연수 그리고 소득수준과 관련한 변수들의 인구 통계학적 기술통계 결과로 응답한 사업자는 도매업 102개사(32.9%), 유흥주점 95개사(30.6%), 일반음식점 113개사(36.5%)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연수, 년 매출, 소득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은 <표 5-4>와 같이 나타났다.

<표 5-4> 설문기업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업종	도매업	102(32.9)	소득 수준	1,500만 미만	6(1.9)
	소매업	0(0.00)		1,500~3,000만원 미만	68(21.9)
	유흥주점	95(30.6)		3,000~4,500만원 미만	51(16.5)
	일반음식점	113(36.5)		4,500~6,000만원 미만	93(30.0)
년 매출	5억원 미만	156(50.3)	사업 연수	6,000~8,000만원 미만	70(22.6)
	10억원 미만	45(14.5)		8,000만원 이상	22(7.1)
	30억원 미만	11(3.55)		5년 미만	67(21.6)
	50억원 미만	36(11.6)		5년~10년	109(35.2)
	100억원 미만	51(16.5)		10년~20년	76(24.5)
	100억원 이상	11(3.55)		20년 이상	58(18.7)

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변수들 간의 연관성 정도는 특정변수의 분산 가운데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공분산(covariance)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0.2 이하이면 매우 낮은 상관관계이며, 0.4 정도면 낮은 상관관계, 0.6 이상은 높은 상관관계로 본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무너지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또는 더욱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에 발생하게 된다(이학식·임지훈; 2013). 공선성(collinearity)이란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공차(tolerance: TOL) 및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계산해서 해결한다.

공차는 같은 변수 내에서 다른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분산량을 의미하는데 공차의 역수를 분산팽창요인($VIF=1/TOL$)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공차 값은 0.2 이하를, VIF 값은 5 이상을 잠재적인 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VIF 값이 10이하이면 용인하고 있다(이학식·임지훈; 2013).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로 납세순응과 세율의 적정성 간($r=0.444$), 납세순응과 제도개선 간($r=0.442$), 납세순응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r=0.393$), 매출액과 사업연수 간($r=0.463$), 매출액과 소득수준($r=0.463$), 업종과 면허의 효율성 간($r=0.426$),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 간($r=0.419$), 세율의 적정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r=0.413$),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 간($r=0.444$)에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연수와 소득수준 간($r=0.575$)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연구변수들을 구성하는 각 측정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5-5>와 같다.

납세순응에 대하여 소득수준, 세제의 공평성, 세율의 적정성, 조세정책의

신뢰성,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에 상대적으로 0.4정도 이상의 다소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연수와 소득수준 간에는 0.6정도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분석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제약을 적게 받는 편으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모든 변수의 1단계의 기본적 연구에서 유추하여 볼 때, 관련 변수들을 통합적 개념으로 보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표 5-5>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 분석(N=310)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납세순응	4.873	0.991	1											
2. 매출액	2.400	1.703	0.019	1										
3. 업종	2.706	1.265	-0.085	-0.883**	1									
4. 사업연수	2.403	1.025	-0.002	0.463**	-0.350**	1								
5. 소득수준	3.706	1.283	0.128*	0.463**	-0.247**	0.575**	1							
6. 세제의 공정성	4.722	0.900	0.291**	0.061	-0.075	-0.018	0.026	1						
7. 납세의 복잡성	4.487	1.216	0.110	0.076	-0.064	0.044	-0.024	0.169**	1					
8. 세율의 적정성	5.035	1.068	0.444**	-0.084	-0.010	0.005	0.006	0.419**	0.180**	1				
9. 면허의 효율성	5.385	1.037	0.018	-0.496**	0.426**	-0.301**	-0.247**	0.055	-0.129*	0.167**	1			
10. 조세정책의 신뢰성	4.953	0.915	0.393**	0.193**	-0.180**	0.083	0.134*	0.316**	0.151**	0.413**	-0.049	1		
11. 규제의 합리성	5.523	1.048	0.014	0.032	0.019	-0.063	0.076	0.038	0.060	-0.008	-0.026	0.008	1	
12. 제도개선	4.968	1.113	0.442**	0.059	-0.099	0.022	0.008	0.349**	0.203**	0.374**	-0.019	0.444**	0.018	1
13. 납세의식	5.753	0.861	0.074	-0.228**	0.175**	-0.113*	-0.215**	0.001	0.110	0.065	0.045	-0.039	-0.014	-0.022

주) * 상관계수는 $p \leq 0.05$ 수준(양쪽 검증)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p \leq 0.001$ 수준(양쪽 검증)에서 유의함

5.2 제도개선에 대한 매개·조절효과 분석결과

5.2.1 납세순응의 결과(매개분석)

매개변수(mediator or mediating variable)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할 때 필요한 변수이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간에 매개변수가 개입할 때 발생한다(Baron & Kenny, 1986; Holmbeck, 1997; Wegener & Fabrigar, 2000; Frazier et al., 2004).

Baron & Kenny(1986)와 Hair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면 매개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유의해야 한다($X \rightarrow Y$ 유의).
- (2 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해야 한다($X \rightarrow M$ 유의).
- (3 단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해야($M \rightarrow Y$)한다.

이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매개변수가 개입하면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관계가 희석되어 계속 유의하면 부분매개(partial-mediation)가 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full-meditation)가 된다.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X \rightarrow Y$)을 '직접효과'라고 하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X \rightarrow M \rightarrow Y$)을 '간접효과'라고 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총 효과'라고 한다(Hair et al., 2006).

1) 납세순응의 회귀분석 결과

주류 판매업자의 납세순응(매개효과)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로 <표 5-6>에서 보듯이 모형 1은 종속변수 납세순응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류 판매업자의 개인별 특성요인인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 중 업종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도매-유통, 도매-일반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매-유통($\beta=0.221$, $p<0.001$), 소득수준($\beta=0.223$, $p<0.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인지적 요인인 세제인지도와 주류 조세정책의 인지 그리고 납세의식의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도매-유통($\beta=0.199$, $p\leq 0.01$)과 소득수준($\beta=0.220$, $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제인지도에서 세제의 공평성($\beta=0.141$, $p\leq 0.05$), 세율의 적정성($\beta=0.320$, $p<0.001$)이 유의한 값으로 도출되었다.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변수를 사용하였고(Aiken and West, 1991),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분산 확대지수(VIF)값은 조사된 모든 변수에서 최대 2.303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Durbin-Watson 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05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모형 1의 유의성($F=9.963$, $p<0.001$)과 모형 2의 유의성($F=12.123$, $p<0.001$)이 나타나, 다중회귀분석 요인들이 주류 판매업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의 유의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 1의 설명력(R^2)⁶⁾은 0.116, 수정된 R^2 값은 0.104로 분석되었고, 모형 2의 설명력(R^2)은 0.288, 수정된 R^2 값은 0.265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유의확률 F변

6) 설명력은 결정계수라 하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화량($\Delta F=12.111$, $p<0.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납세순응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세제인지도와 관련된 하위 요인으로 세제의 공평성($\beta=0.141$, $p<0.05$)과 세율의 적정성($\beta=0.320$, $p<0.001$)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검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과 가설 1-3의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가설 1-2, 가설 2, 가설 2-1, 가설 2-2, 가설 3에 관련한 가설은 지지가 되지 않았다.

<표 5-6> 납세순응의 회귀분석 결과(N=310)

모형		모형 1		모형 2		통계량	
		β	t 값	β	t 값	p 값	VIF
통제 변수	상수	-	-0.526		-2.193	0.029	
	도매-유통	0.221	3.265***	0.199	2.694**	0.007	2.303
	도매-일반	-0.125	-1.897	-0.070	-1.073	0.284	1.792
	사업연수	-0.094	-1.366	-0.113	-1.783	0.076	1.686
	소득수준	0.223	3.358***	0.220	3.549***	0.000	1.610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0.141	2.579*	0.010	1.261
	납세의 복잡성			0.049	0.950	0.343	1.122
	세율의 적정성			0.320	5.564***	0.000	1.394
조세 정책	면허의 효율성			-0.099	-1.645	0.101	1.535
	규제의 합리성			-0.008	-0.169	0.866	1.031
납세윤리	납세의식			0.072	1.408	0.160	1.097
모형 요약	F(ΔF)	9.963***		12.123(12.111***)		Durbin-Watson= 1.905	
	R ² (ΔR^2)	0.116***		0.288(0.173***)			
	Adj.R ²	0.104***		0.265(0.161***)			
	($\Delta adj.R^2$)						

주) 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2. * $p \leq 0.05$, ** $p \leq 0.01$, *** $p < 0.001$

3. 모형2의 ΔR^2 은 모형1과의 비교임

4. 모든 변수는 평균중심화⁷⁾ 값임

7) 위계적 조절효과 분석 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하는데 이는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별변수의 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의미함.

2)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단계로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력을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모형 1에서는 매개변수,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는 세제인지도의 3개 변수, 주류 조세정책의 2개 변수와 납세율의 납세의식을 투입하였다.

<표 5-7>에서 보듯이, 모형 1은 통제변수,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 그리고 납세율이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의 진단을 위한 분산 확대지수(VIF)값은 조사된 모든 변수에서 2.303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Durbin-Watson 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7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모형 1의 유의성($F=3.493$, $p \leq 0.01$)과 모형 2의 유의성($F=10.195$, $p < 0.001$)이 나타나, 다중회귀분석 요인들이 주류 판매업자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의 유의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인 업종의 도매-유통($\beta = -0.163$, $p \leq 0.01$), 도매-일반($\beta = -0.186$, $p \leq 0.01$)이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부(-)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유통음식점이 도매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 또한 도매업보다 낮으며, 유통음식점 보다 일반음식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모형 요약에 따른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력의 정도는 4.34%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도매-유통($\beta = -0.265$, $p \leq 0.001$), 도매-일반($\beta = -0.162$, $p \leq 0.05$), 세제인지도에서 세제의 공평성($\beta = 0.132$, $p \leq 0.05$)과 세율의 적정성($\beta = 0.390$, $p < 0.001$)이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력(R^2)은 0.043, 수정된 R^2 값은 0.031로 분석되었고, 모형 2의 설명력(R^2)은 0.254, 수정된 R^2 값은 0.229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유의확률 F변화량($\Delta F = 14.065$, $p < 0.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정책신뢰성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모형 2에서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에서 세제의 공평성($\beta = 0.132$, $p \leq 0.05$)과 세율의 적정성($\beta = 0.390$, $p < 0.001$)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계수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는 25.4%로 나타났다.

세제인지도의 개념 중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아질수록 주류 판매업자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인지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검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4-1의 세제의 공평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4-5의 세율의 적정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설 4-3의 납세의 복잡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5-1의 면허의 효율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5-3의 규제의 합리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6-1의 납세의식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5-7> 조세정책 신뢰성의 회귀분석 결과(N=310)

모형		모형 1		모형 2		통계량	
		β	t값	β	t값	p값	VIF
통제 변수	(상수)						
	도매-유통	-0.163	-2.320**	-0.265	-3.500**	0.001	2.303
	도매-일반	-0.186	-2.707**	-0.162	-2.421*	0.016	1.792
	사업연수	-0.049	-0.689	-0.057	-0.882	0.378	1.686
	소득수준	0.112	1.625	0.093	1.463	0.144	1.610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0.132	2.358*	0.019	1.261
	납세의 복잡성			0.036	0.682	0.496	1.122
	세율의 적정성			0.390	6.618***	0.000	1.394
조세 정책	면허의 효율성			0.020	0.322	0.748	1.535
	규제의 합리성			-0.009	-0.185	0.853	1.031
납세윤리	납세의식			-0.015	-0.291	0.771	1.097
모형 요약	F(ΔF)	3.493**		10.195(14.065***)		Durbin-Watson=1.772	
	R ² (ΔR^2)	0.0434**		0.254(0.020***)			
	Adj.R ² ($\Delta Adj.R^2$)	0.031		0.229(0.198***)			

주) 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2. * $p \leq 0.05$, ** $p \leq 0.01$, *** $p < 0.001$
 3. 모형2의 ΔR^2 은 모형1과의 비교임
 4. 모든 변수는 평균중심화 값임

3) 납세순응의 매개회귀분석 결과

3단계로 종속변수인 납세순응과 독립변수 간에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8>에서 보듯이, 모형 1에서는 종속변수인 납세순응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는 ‘세제인지도’에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

정성에 대한 변수를, ‘주류 조세정책’에서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을, 그리고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3에서는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 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인 업종과 관련한 더미변수 도매-유통($\beta=0.221$, $p<0.001$)과 소득수준($\beta=0.223$, $p<0.001$)이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한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로 모형 유의성($F=9.963$, $p<0.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들이 납세순응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1.6%로 나타났다.

모형 2의 모형 유의성($F=12.123$, $p<0.001$)으로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제인지도의 하위 변수 중 세율의 적정성($\beta=0.320$, $p<0.001$), 세제의 공평성($\beta=0.141$, $p\leq 0.01$) 순으로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을 주었으며, 모형의 설명력(R^2)은 0.288, 수정된 R^2 값은 0.265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형 3에서 통제변수 도매-유통($\beta=0.269$, $p<0.001$), 소득수준($\beta=0.195$, $p<0.001$), 세제인지도에서 세제의 공평성($\beta=0.107$, $p\leq 0.05$)과 세율의 적정성($\beta=0.218$, $p<0.001$), 그리고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beta=0.262$, $p<0.001$) 사이에 통계적으로 큰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R^2)은 0.340, 수정된 R^2 값은 0.315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은 F변화량($\Delta F=23.187$, $p<0.001$)이 유의한 것으로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납세순응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beta=0.262$, $p<0.001$)도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추가되어 전체 설명력($R^2=0.340$, $p<0.001$)과 수정된 전체 증감 설명력($\Delta R^2=0.051$, $p<0.001$)은 5.1%가 증가한 결과값으로 전체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

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Baron & Kenny, 1986).

실증·분석의 결과로, 세제인지도의 변수 중 세제의 공평성($\beta=0.107$, $p<0.05$)과 세율의 적정성($\beta=0.218$, $p<0.001$)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 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 5-8>과 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 검증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8> 납세순응의 매개 회귀분석 결과(N=310)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선성 VIF
		β	t 값	β	t 값	β	t 값	
통제 변수	상수	-	-0.526	-	-2.193	-	-2.528	-
	도매-유통	0.221	3.265***	0.199	2.694**	0.269	3.692***	2.397
	도매-일반	-0.125	-1.897	-0.070	-1.073	-0.028	-0.433	1.827
	사업연수	-0.094	-1.366	-0.113	-1.783	-0.098	-1.600	1.690
	소득수준	0.223	3.358***	0.220	3.549***	0.195	3.259***	1.622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	-	0.141	2.579**	0.107	1.998*	1.284
	납세의 복잡성	-	-	0.049	0.950	0.040	0.794	1.123
	세율의 적정성	-	-	0.320	5.5639***	0.218	3.6646***	1.598
조세 정책	면허의 효율성	-	-	-0.099	-1.645	-0.105	-1.794	1.535
	규제의 합리성	-	-	-0.008	-0.169	-0.006	-0.124	1.031
납세 의식	납세의식	-	-	0.072	1.408	0.076	1.540	1.097
조세정책의 신뢰성		-	-	-	-	0.262	4.8153***	1.341
모형 요약	F (ΔF)	9.963***		12.123***		13.946(23.187***)		Durbin -Wats on =1.914
	R ² (ΔR^2)	0.116***		0.288(0.173***)		0.340(0.051***)		
	adj.R ² ($\Delta adj.$ R ²)	0.104		0.265(0.161***)		0.315(0.05***)		

주) 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2. * $p \leq 0.05$, ** $p \leq 0.01$, *** $p < 0.001$

3. 모형 2의 ΔR^2 은 모형 1과의 비교이며, 모형 3의 ΔR^2 는 모형 2와의 비교임

4. 모든 변수는 평균중심화 값임

가설 4-2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의 공평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4-6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설 4-4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5-2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면허의 효율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5-4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규제의 합리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6-2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4) 부분 매개효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검증

회귀분석에 의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첫째, Baron & Kenny 접근법, 둘째, 계수의 곱 검증(product of coefficients test), 셋째, 계수의 차이검증(difference of coefficients test) 등이 있다. 이 중에서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접근법은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일련의 검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추론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테스트(Sobel test)와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와 Bootstrapping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을 사용하는 이유는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표본의 크기를 무작위표본으로 추출하여 얻은 복원 추출된 부스트랩 표본을 재표

본하여 통계치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값에서부터 높은 값으로 분류하여 95% 신뢰구간 기준으로 하한선을 125번째, 상한선을 4,875번째 통계치로 붓스트레핑된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Hayes(2009)의 붓스트레핑 연구에 따르면 모집단에서 N 크기의 표본을 추출한 후 N 크기의 표본을 대체할 수 있는 k 크기의 무작위표본을 추출한다. 이때 복원된 복원추출 표본이 붓스트랩 표본이 된다. 이렇게 얻은 재표본의 통계치 계산을 총 k 번 수행해서 생긴 k 개의 통계치를 가장 낮은 값에서부터 높은 값으로 분류하여 95% 신뢰구간에서 정의된 하한선과 상한선의 통계 값으로 붓스트랩된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백분위수 방법(percentile method)이다.

앞에서 살펴본 각 가설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참조하여, 매개효과의 확인을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3가지 유형의 주류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가운데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 정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매개로 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을 통해 조세정책의 신뢰성 인지정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매개변인 모형에서 통제변수 외 독립변수의 부가적인 영향력이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조건부 간접효과가 독립변수의 어느 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유의한지를 확인해야 한다(Preacher et al., 2007).

<표 5-9>에서 보듯이, 매개변수 모형 내에서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이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상호작용 항목 또한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 모형 내에서도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부분 매개효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증(N=310)

OUT COME VARIABLE: 조세정책의 신뢰성						
R	R ²	MSE	F	df 1	df 2	p 값
0.504	0.254	0.645	10.195	10.000	299.000	0.000

OUT COME VARIABLE: 납세순응						
R	R ²	MSE	F	df 1	df 2	p 값
0.583	0.340	0.673	13.946	11.000	298.000	0.000

Model 1	매개변수(납세순응)모형				종속변수(조세정책의 신뢰성)모형			
	Coeff.	SE	t 값	p 값	Coeff.	SE	t 값	p 값
상수	0.084	0.090	0.931	0.353	(0.233)	0.092	(2.528)	0.012
업종-1	(0.525)	0.150	(3.500)	0.001	0.578	0.157	3.692	0.000
업종-2	(0.307)	0.127	(2.421)	0.016	(0.057)	0.131	(0.433)	0.665
M-사업연수	(0.051)	0.058	(0.882)	0.378	(0.095)	0.059	(1.600)	0.111
M-소득수준	0.066	0.045	1.463	0.144	0.151	0.046	3.259	0.001
M-적정성	0.334	0.051	6.618	0.000	0.202	0.055	3.665	0.000
M-효율성	0.018	0.055	0.322	0.748	(0.100)	0.056	(1.794)	0.074
M-합리성	(0.008)	0.044	(0.185)	0.853	(0.006)	0.045	(0.124)	0.901
M-납세의식	(0.016)	0.056	(0.291)	0.771	0.087	0.057	1.540	0.125
M-복잡성	0.027	0.040	0.682	0.496	0.032	0.041	0.794	0.428
M-공평성					0.117	0.059	1.998	0.047
M-정책신뢰성					0.285	0.059	4.815	0.000

Direct effect of X on Y						
	Effect	SE	t 값	p 값	LLCI	ULCI
납세순응	0.117	0.059	1.998	0.047	0.002	0.233

Indirect effect(s) of X on Y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세정책의 신뢰성	0.038	0.019	0.005	0.080

- 주) 1. R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Coeff.는 상호작용, SE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2. Level of confidence for all confidence intervals in output: 95.0000
 3. Number of bootstrap samples for percentile boot strap confidence intervals: 5000

세제인지도의 요인 중에서 세제의 공평성의 직접효과(Effect=0.117, p=0.047)는 유의하며 간접효과(Effect=0.038, p=0.005)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구간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계수가 모두 양수이므로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증가할수록 조건부 간접효과도 증가한다. 따라서 붓스트래핑⁸⁾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 정(+)의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5.2.2 납세순응의 결과(매개된 조절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의 개념은 현재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그 분석 방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Baron and Kenny, 1986; Muller et al., 2005; Hayes, 2009).

본 논문에서는 타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Muller et al.(2005)가 분석한 연구절차에 따라 실증·분석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6단계의 회귀식 모형을 제시하였다.

$$\langle \text{Model 1} \rangle Y = \beta_{10} + \beta_{11} * X + \varepsilon_1$$

$$\langle \text{Model 2} \rangle ME = \beta_{20} + \beta_{21} * X + \varepsilon_2$$

$$\langle \text{Model 3} \rangle Y = \beta_{30} + \beta_{31} * X + \beta_{32} * ME + \varepsilon_3$$

$$\langle \text{Model 4} \rangle Y = \beta_{40} + \beta_{41} * X + \beta_{42} * Z + \beta_{43} * X * Z + \varepsilon_4$$

$$\langle \text{Model 5} \rangle ME = \beta_{50} + \beta_{51} * X + \beta_{52} * Z + \beta_{53} * X * Z + \varepsilon_5$$

$$\langle \text{Model 6} \rangle Y = \beta_{60} + \beta_{61} * X + \beta_{62} * Z + \beta_{63} * X * Z + \beta_{64} * ME + \beta_{65} * ME * Z + \varepsilon_6$$

주) X:독립변수, Y: 종속변수, Z: 조절변수, ME: 매개변수, X*Z: 상호작용변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방법과 다른 점은 Model 6에서 ME*Z라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생성되

8) 모집단에서 N 크기의 표본을 추출한 후 N 크기의 표본을 대체할 수 있는 k 크기의 무작위표본을 추출한다(Hayes, 2009).

어 독립변수의 형태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경우, $ME*Z$ 변수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회귀분석을 이용한 모형의 경우에는 구조방정식의 모형에서처럼 모형의 형태에 따라 조절된 매개모형이나 매개된 조절모형이 결정되어지지 않고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조절된 매개모형인지 혹은 매개된 조절모형인지가 결정된다.

회귀분석에서 매개된 조절모형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Muller et al., 2005).

- ① Model 4에서 β_{43} 이 유의해야 한다.
 - ② Model 5와 6에서 β_{53} 과 β_{64} 가 유의해야 하거나, β_{51} 과 β_{65} 가 유의해야 한다.
 - ③ Model 6에서 β_{63} 은 Model 4의 β_{43} 보다 수치가 작아야 한다.
- 회귀분석에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 ① Model 4에서 β_{41} 이 유의하고 β_{43} 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 ② Model 5와 6에서 β_{53} 과 β_{64} 가 유의해야 하거나, β_{51} 과 β_{65} 가 유의해야 한다.
 - ③ Model 6에서 β_{63} 은 유의해야 한다.

주) β 는 모집단의 회귀계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하위집단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Arnold & Feldman, 1982). 그리고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하위집단의 상관관계 분석보다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의 통계적강도가 더 강하다(Stone-Romero & Anderson, 1994).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인지도인의 측정방법은 Likert-type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위계적 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변

수는 각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배병렬, 2005).

조절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4단계의 기본모형(baseline model)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들만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투입한 통제변수들 외에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 납세윤리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5단계는 모형 1에서 투입한 변수 외에 정부의 주류 조세정책의 제도개선과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 납세윤리인 납세의식의 상호작용 항목을 추가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제도개선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6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9개의 상호작용 항목 그리고 매개변수와 상호작용 항목 전부를 투입한 최종 모형의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납세순응에 대한 제도개선의 조절효과

4단계로 <표 5-10>의 모형 1에서는 종속변수인 납세순응과 통제변수, 독립변수들 간의 분석에서 먼저 통제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 매출액, 사업연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수준($\beta = -0.199$, $p \leq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세제인지도에서 세율의 적정성($\beta = 0.393$, $p < 0.001$)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 조절변수 및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인 사업연수($\beta = -0.126$, $p \leq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소득수준($\beta = 0.212$, $p < 0.001$)과 세제인지도에서 세율의 적정성($\beta = 0.304$, $p < 0.001$), 조절변수인 제도개선($\beta = 0.318$, $p < 0.001$)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 조절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상호작용 항목을 투입해서 통제변수인 사업연수($\beta = -0.133$, $p \leq 0.01$)와 독립변수인 납세의식($\beta = 0.121$, $p \leq 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통제변수인 소득수준($\beta = 0.226$, $p < 0.001$)과 독립변수인 세율의 적정성($\beta = 0.217$, $p < 0.001$)과 조절변수인 제도개선($\beta = 0.412$, $p < 0.001$), 그리고 상호작용 항목 중 세율의 적정성($\beta = -0.229$, $p < 0.001$)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2에서 F변화량($F = 35.391$, $p < 0.001$), 모형의 설명력(R^2)은 0.321, 수정된 R^2 값은 0.29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모형 3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유의확률의 F변화량($\Delta F = 2.204$, $p \leq 0.05$)이 유의한 것으로, 모형 설명력(R^2)은 0.365로, 수정된 R^2 값은 0.323($\Delta R^2 = 0.024$, $p < 0.1$)로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납세순응의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형의 수정된 증감 설명력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8의 제도개선은 납세순응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가설 8-3의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가설 8-6의 제도개선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제도개선의 조절효과는 세제인지도의 세율의 적정성이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표 5-10> 납세순응에 대한 제도개선의 조절효과 검증결과(N=310)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선성 VIF
		β	t 값	β	t 값	β	t 값	
통제 변수	상수	-	-3.132	-	-2.577	-	-0.480	1.787
	매출액	0.008	0.121	-0.006	-0.089	-0.004	-0.066	1.785
	사업연수	-0.125	-1.914	-0.126	-2.038**	-0.133	-2.120**	1.706
	소득수준	0.199	3.043***	0.212	3.424***	0.226	3.695***	1.338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0.119	2.112*	0.051	0.930	0.042	0.782	1.132
	납세의 복잡성	0.016	0.299	-0.020	-0.392	-0.014	-0.285	1.615
	세율의 적정성	0.393	6.872***	0.304	5.407***	0.217	3.646***	1.433
조세 정책	면허의 효율성	-0.040	-0.669	-0.024	-0.430	-0.048	-0.855	1.057
	규제의 합리성	-0.012	-0.236	-0.014	-0.284	-0.018	-0.369	1.126
납세율리	납세의식	-	-	0.094	1.880	0.121	2.433*	1.965
조절변수	제도개선	-	-	0.318	5.949***	0.412	6.285***	2.257
상호 작용	제도개선*매출액	-	-	-	-	0.076	1.077	1.942
	제도개선*사업연수	-	-	-	-	-0.016	-0.247	1.834
	제도개선*소득수준	-	-	-	-	-0.032	-0.504	1.642
	제도개선*공평성	-	-	-	-	-0.014	-0.239	1.264
	제도개선*복잡성	-	-	-	-	0.029	0.545	2.096
	제도개선*적정성	-	-	-	-	-0.229	-3.380***	2.101
	제도개선*효율성	-	-	-	-	0.037	0.545	1.118
	제도개선*합리성	-	-	-	-	0.049	0.983	1.131
	제도개선*납세의식	10.595***	-	-	-	0.032	0.648	-
모형 요약	F(ΔF)			14.167(35.391***)		7.844(2.204*)		Durbin -Wats on=1.8 62
	R ² (ΔR ²)	0.241***		0.321(0.080***)		0.365(0.043**)		
	adj.R ² (Δadj.R ²)	0.218		0.299(0.081***)		0.323(0.024†)		

주) 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2. †p<0.1, * p≤0.05, ** p≤0.01, *** p<0.001

3. 모형2의 ΔR²은 모형1과의 비교이며, 모형3의 ΔR²은 모형2와의 비교임

4. 모든 변수는 평균중심화 값임

2)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제도개선의 조절효과

5단계로 <표 5-11>에서 보듯이 종속변수로 조세정책 신뢰성을 투입한 모형 1의 통제변수 중 매출액($\beta=0.196$ $p\leq 0.01$)과 세제인지도의 하위 요인인 세제의 공평성($\beta=0.142$, $p\leq 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세율의 적정성($\beta=0.364$, $p<0.001$)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조절변수인 제도개선을 통제함으로써 세제인지도에서 세제의 공평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율의 적정성($\beta=0.280$, $p<0.001$)

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인 매출액($\beta=0.177$, $p\leq 0.01$), 세제인지도의 하위요인의 변수 중 세율의 적정성($\beta=0.255$, $p<0.001$)과 조절변수인 제도개선($\beta=0.319$, $p<0.001$)만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2의 모형 설명력(R^2)은 0.316, 수정된 R^2 값은 0.294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유의확률 F변화량($\Delta F=1.129$, $p<0.1$)이 유의하므로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가설에서 설정한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 3에서 통제변수의 매출액($\beta=0.177$, $p\leq 0.01$)은 통계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유의하고, 세제인지도의 하위요인인 세율의 적정성($\beta=0.255$, $p<0.001$)의 인지정도는 매우 유의하게 작용하여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정부 조세정책의 제도개선($\beta=0.319$, $p<0.001$)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개선은 독립변수의 역할로 영향력을 미치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조세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설검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7의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7-3의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절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설 7-1, 가설 7-2, 가설 7-4, 가설 7-5, 가설 7-6은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표 5-11>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제도개선의 조절효과 검증결과(N=310)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공선성 VIF
		β	t 값	β	t 값	β	t 값	
통제 변수	상수	-	-3.033	-	-2.498	-	-1.765	-
	매출액	0.196	2.962**	0.183	2.901**	0.177	2.769**	1.787
	사업연수	-0.051	-0.790	-0.052	-0.846	-0.051	-0.794	1.785
	소득수준	0.062	0.953	0.074	1.197	0.074	1.183	1.706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0.142	2.527*	0.078	1.421	0.080	1.454	1.338
	납세의 복잡성	0.051	0.977	0.018	0.358	0.027	0.525	1.132
	세율의 적정성	0.364	6.385***	0.280	4.971***	0.255	4.203***	1.615
조세 정책	면허의 효율성	-0.013	-0.225	0.001	0.022	-0.003	-0.046	1.433
	규제의 합리성	-0.013	-0.250	-0.014	-0.294	-0.018	-0.365	1.057
납세유리	납세의식	-0.016	-0.308	-0.001	-0.029	0.008	0.158	1.126
조절변수	제도개선	-	-	0.299	5.562***	0.319	4.7691***	1.965
상호 작용	제도개선*매출액	-	-	-	-	0.041	0.566	2.257
	제도개선*사업연수	-	-	-	-	-0.076	-1.141	1.942
	제도개선*소득수준	-	-	-	-	0.096	1.485	1.834
	제도개선*공평성	-	-	-	-	-0.022	-0.360	1.642
	제도개선*복잡성	-	-	-	-	-0.066	-1.238	1.264
	제도개선*적정성	-	-	-	-	0.003	0.042	2.096
	제도개선*효율성	-	-	-	-	-0.077	-1.111	2.101
	제도개선*합리성	-	-	-	-	0.027	0.541	1.118
	제도개선*납세의식	-	-	-	-	-0.024	-0.471	1.131
모형 요약	F(ΔF)	10.850***		13.884***		7.844(1.129†)		Durbin -Wats on=1. 771
	R ² (ΔR^2)	0.246***		0.316(0.171***)		0.339†		
	adj.R ² ($\Delta adj.$ R ²)	0.223		0.294(0.07***)		0.296(0.003*)		

주) 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2. † p<0.1, * p≤0.05, ** p≤0.01, *** p<0.001

3. 모형2의 ΔR^2 은 모형1과의 비교이며, 모형3의 ΔR^2 은 모형2와의 비교임

4. 모든 변수는 평균중심화 값임

3) 납세순응에 대한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의 조절·매개효과

6단계로 <표 5-12>는 제도개선의 조절변수 역할,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간의 관계에서 종속변수인 납세순응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모형 유의성(F=13.697, p<0.001)으로 변수들을 설명하기에 모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중 소득수준($\beta=0.201$, p<0.001), 세제인지도의 하위요인 변수인 세율의 적정성($\beta=0.263$, p<0.001), 조절변수인 제도개선($\beta=0.275$, p<0.001)에 통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매

개변수인 정책신뢰성($\beta=0.145$, $p\leq 0.01$)은 중간 수준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형 설명력(R^2)은 0.336, 수정된 R^2 값은 0.311로 분석되었다.

모형 2의 모형 유의성($F=8.750$, $p<0.001$)으로 변수들을 설명하기에 모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중에 사업연수($\beta=-0.126$, $p\leq 0.05$)는 통계적으로 낮은 유의성으로 영향을 미치나, 소득수준($\beta=0.216$, $p<0.001$)과 제도개선($\beta=0.369$, $p<0.001$)은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인지도 변수 중에서 세율의 적정성($\beta=0.182$, $p\leq 0.01$)과 제도개선과의 상호작용 변수($\beta=-0.229$, $p\leq 0.01$)는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beta=0.136$, $p\leq 0.05$)과 납세윤리 변수인 납세의식($\beta=0.120$, $p\leq 0.05$)은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유의성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설명력(R^2)은 0.377, 수정된 R^2 값은 0.334($\Delta R^2=0.023$, $p<0.001$)로 분석되었다.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유의확률 F변화량이 유의하므로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조세정책의 신뢰성으로 설정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3에서 모형 유의성($\Delta F=0.002$, $p\leq 0.1$)으로 변수들을 설명하기에 모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중 사업연수($\beta=-0.124$, $p\leq 0.05$)와 납세윤리의 하위변수인 납세의식($\beta=0.122$, $p\leq 0.05$) 그리고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beta=0.139$, $p\leq 0.05$)은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세제인지도의 하위변수인 세율의 적정성($\beta=0.173$, $p\leq 0.01$)과 세율의 적정성의 상호작용 변수($\beta=-0.256$, $p\leq 0.01$)는 통계적으로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며, 제도개선($\beta=0.392$, $p<0.001$)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상호작용 항목(제도개선*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지만, 모형의 설

명력(R^2)은 0.334, 수정된 R^2 값은 0.334($\Delta R^2=0.002$)로 분석되었다. 증가된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유의확률 F변화량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위계에 속한 변수들이 납세순응의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증감된 수정된 R^2 값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회귀 모형에서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고 상호작용 항목만 유의할 경우에 이 변수를 순수 조절변수라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항목과 조절변수 모두 유의하면 이 변수는 유사 조절변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만 유의적이라면 이는 조절변수라 판단하기 보다는 독립변수로 판단해야 하며, 상호작용 항목과 조절변수 둘 다 유의적이지 못하면 조절변수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볼 수 있다 (Baron & Kenny, 1986).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순응에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개선과 세율의 적정성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세율의 적정성은 납세순응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매개·조절 관계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더 나아가 부(-)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 높은 인지정도를 가진 주류 판매업자는 정부 조세정책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 때의 납세순응과 인지정도가 낮을 때의 납세순응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에 대한 검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독립변수들의 개별변수와 납세순응 간에 있어서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라는 가설 8-1, 가설 8-2, 가설 8-4, 가설 8-5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설 9의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매개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5-12> 납세순응에 대한 제도개선과 조세정책의 신뢰성간의 조절·매개효과 검증결과(N=310)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통계량	
		β	t 값	β	t 값	β	t 값	유의확률	VIF
통제변수	상수	-0.032	-0.508	-0.028	-0.448	-0.028	-0.439	0.661	1.835
	매출액	-0.118	-1.930						1.790
	사업연수			-0.126	-2.023*	-0.124	-2.003*	0.046	1.725
	소득수준	0.201	3.271***	0.216	3.550***	0.211	3.467**	0.001	1.360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0.022	-0.447	-0.018	-0.360	-0.015	-0.311	0.756	1.136
	납세의 복잡성								1.757
	세율의 적정성	0.263	4.544***	0.182	2.998**	0.173	2.814**	0.005	1.449
조세정책	면허의 효율성	-0.021	-0.437	-0.018	-0.356	-0.012	-0.253	0.452	1.440
	규제의 합리성	-0.012	-0.243	-0.015	-0.321	-0.015	-0.313	0.754	1.057
납세윤리	납세의식	0.094	1.901	0.120	2.430*	0.122	2.464*	0.014	1.128
조절변수	제도개선	0.275	4.938***	0.369	5.459***	0.392	5.435***	0.000	2.413
매개변수	조세정책의 신뢰성	0.145	2.534**	0.136	2.380*	0.139	2.423*	0.016	2.384
상호작용	제도개선*매출액			0.070	1.006	0.055	0.770	0.442	1.970
	제도개선*사업연수			-0.006	-0.089	0.000	0.000	1.000	1.855
	제도개선*소득수준			-0.045	-0.713	-0.042	-0.657	0.512	1.712
	제도개선*세제의 공평성			-0.011	-0.190	-0.023	-0.371	0.711	1.271
	제도개선*납세의 복잡성			0.038	0.720	0.039	0.735	0.463	2.473
	제도개선*세율의 적정성			-0.229	-3.413***	-0.256	-3.490***	0.001	2.189
	제도개선*면허의 효율성			0.047	0.704	0.035	0.516	0.607	1.165
	제도개선*규제의 합리성			0.045	0.915	0.054	1.078	0.282	1.135
	제도개선*납세의식			0.035	0.718	0.038	0.766	0.444	1.518
매개*조절	제도개선*정책의 신뢰성					0.060	0.918	0.360	1.994
모형 요약	F(ΔF)		13.697***		8.750***		8.368(0.002†)	Durbin-Watson = 1.854	
	R ² (ΔR ²)		0.336***		0.377*		0.334†		
	adj.R ² (Δadj.R ²)		0.311		0.334(0.023**)		0.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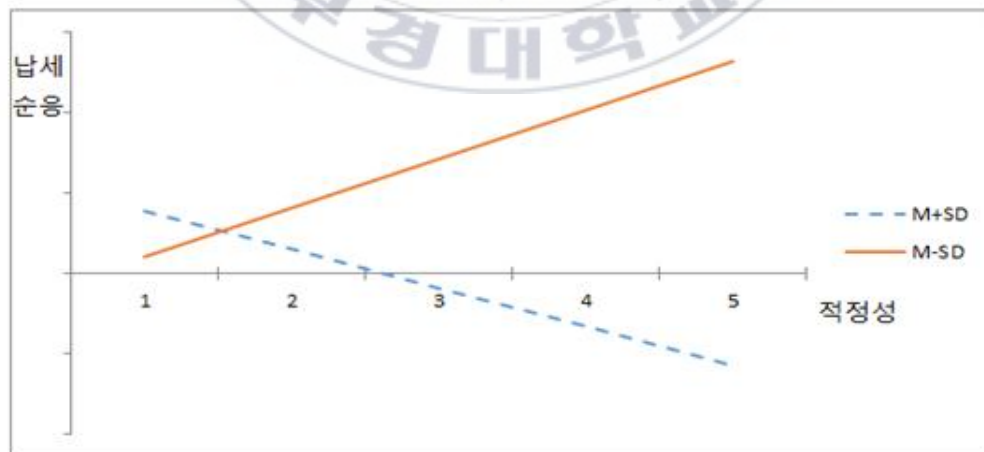
주) 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2. † p≤0.1, * p≤0.05, ** p≤0.01, *** p<0.001, 3. 모형 2의 ΔR²는 모형 1과의 비교, 모형 3의 ΔR²는 모형 2와의 비교임, 4. 모든 변수는 평균증심화 값임

가설 10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조절 관계로 정(+)의 방향으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로 밝혀진 제도개선과 세율의 적정성의 조절효과를 표 <5-12>에서 상호작용(제도개선*세율의 적정성)값이 모형2에서 t값 -3.413** 과 모형3에서 t값 -3.499**으로 부의 효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절변수의 특정 값(일반적으로, 평균±1 표준편차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갖는 기울 기의 단순기울기(simple slope)를 그림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납세순응과 세율의 적정성간의 제도개선이라는 조절변수에 따라 ‘비교적 낮은’, ‘중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임의의 값(point)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point’로는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M-SD)’,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M+SD)’를 이용하였다(Aiken et al., 1991). 이에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간의 관계에서 제도개선이 평균 보다 적게 이루어지면 납세순응이 정(+)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평균보다 많이 이루어지면 부(-)의 방향으로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제도개선과 세율 적정성의 조절효과

5.2.3 가설의 검증 결과

이상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5-13>, <표 5-14>, <표 5-15>, <표 5-16>, <표 5-17>, <표 5-18>과 같다.

<표 5-13>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지지여부
가설 1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 1-1	세제의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 1-2	납세의 복잡성은 납세순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1-3	세율의 적정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 2	주류 조세정책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2-1	면허의 효율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2-2	규제의 합리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3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표 5-14> 세제인지도-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지지여부
가설 4	세제인지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 4-1	세제의 공평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 4-2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의 공평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4-3	납세의 복잡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4-4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4-5	세율의 적정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 4-6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됨

〈표 5-15〉 주류 조세정책-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지지여부
가설 5	주류 조세정책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5-1	면허의 효율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5-2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면허의 효율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5-3	규제의 합리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5-4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규제의 합리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표 5-16〉 납세윤리-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지지여부
가설 6	납세윤리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6-1	납세의식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6-2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표 5-17〉 제도개선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

가설	가설내용	지지여부
가설 7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7-1	제도개선은 세제의 공정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7-2	제도개선은 납세의 복잡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7-3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절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7-4	제도개선은 면허의 효율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7-5	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7-6	제도개선은 납세의식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표 5-18〉 제도개선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2

가설	가설내용	지지여부
가설 8	제도개선은 납세순응을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8-1	제도개선은 세제의 공평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8-2	제도개선은 납세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8-3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8-4	제도개선은 면허의 효율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8-5	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 8-6	제도개선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9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매개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 10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조절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본 연구는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 납세윤리, 제도개선과 정책의 신뢰성의 모든 변수들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과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요인이 매개와 조절 역할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3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검정의 결과를 통하여 14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납세의 복잡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류 판매업자가 인식하는 세제의 공평성은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업무와 납세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지고, 주세관련 세법구조가 형평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제의 시행에 있어 조세제도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율의 적정성에 있어서도 주류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인지여부, 세율의 적정여부와 세율체계의 만족도는 납세순응을 유인하지만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0%는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담세능력에 맞게 세율을 낮추어 시행한다면 효율적인 납세순응을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반면 납세의 복잡성은 주류 판매업자의 담세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류 조세정책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규제 of 합리성과 면허의 효율성은 주류 판매업자에게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업범위와 조건의 지정을 통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기득권자로서 정부의 행정규제를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와는 반대의 결과로 주류 판매업자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세제인지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요인으로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의 공평성·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및 주류 판매지역 제한 해제 등의 납세제도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며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함으로써 주류유통의 효율성을 배가하며 성실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주류 판매업자가 인지하는 세율의 적정성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체계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세율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한다면 조세납부를 더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율이 증가할수록 납세순응에 대한 성실납세는 감소하고 세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의 증가로 세후소득이 감소하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만큼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심리

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율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정도는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납세의 복잡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의 재산적 이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납세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주류 조세정책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규제의 합리성과 면허의 효율성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규제의 합리성·면허의 효율성과 납세순응과의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집행에 대한 공정성, 무자료·위장거래에 대한 적발확률, 위법한 탈세의 경우 조사받을 확률에 대한 정부규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정부정책의 적극적 실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납세윤리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납세의식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에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류 판매업자가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을 높여 조세회피가 없는 성실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타인이 조세회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조세회피를 정당화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정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관계로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당국의 납세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세정의 과학화, 전산화로 주류 유통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세율체계로 주류의 무자료·위장거래를 근절하는 과세당국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면허의 효율성, 규제의 합리성 및 납세의식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정(+)의 방향으로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류 판매업자가 인지하는 조세정책은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므로 담세능력에 맞는 세율 인하나 성실납세에 대한 포상, 사회적 존중 및 기대가치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여덟째, 제도개선은 납세순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은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간에 정(+)의 관계로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처벌규정 중 무자료 및 위장거래 금액 1%이상~10%미만에 대한 면허정지사항을 벌과금으로 대체하는 조세정책의 개선을 실행하여 납세순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는 조세에 대하여 자신이 형성된 심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나 조세법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 납세윤리관에 따른 납세의식을 가지므로 조세부담의 적정성, 공평성,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환경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는 납세자 우대정책과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납세순응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은 납세순응 간에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의 성실납부는 조세납부의 적법성이 보장되고, 세법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납세자간에 상호 대등한 과세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예측 불능의 세무조사와 규제는 권위주의적 국가관으로 납세자와 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홉째, 제도개선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매개관계로 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납세자가 조세정책에 대하여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 적정한 세율과 납세제도의 간편화, 세제의 공평성, 납세서비스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납세순응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열 번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제도개선과 납세순응 간에 정(+)의 조절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판매업자가 인지하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정부정책의 신뢰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때 위법행위를 줄이고 납세순응으로 유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될 때 자발적인 성실납세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5.3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의 연구결과

5.3.1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케팅, 조직행동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여러 가지 행동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분석방법이다(이학식·임지훈, 201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해 개발된 패키지 중 본 연구에서는 AMO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래픽을 기반으로 용이하게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

가와 구조모형의 분석이 가능하다. 대안모형과의 비교와 집단 간의 비교로 조절효과와 매개적 작용의 정확한 경로도형을 작성하고 분석한 후 제시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다변량 통계분석에 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차별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다변량 통계분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변수들 간 의존관계(dependence relationship)를 분석하는 것으로 회귀분석과 판별분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해당되는 변수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용되며, 다른 한 가지는 변수들 간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e relationship)를 분석하는 것으로 군집분석, 요인분석, 다차원척도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보다 발전시킨 분석방법이다. 이는 일련의 방정식들로 표현되는 constructs 간의 상호관계 구조를 조사하는 기법으로, 측정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이용하여 분석하므로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likelihood estimation)이라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latent construct 간의 관계’와 ‘construct와 관련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하여 동시 추정하는(simultaneous estimation) 방법이다. 이는 관찰된 표본을 얻게 될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모집단 계수 추정법으로 입력 공분산행렬로부터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그 경로계수로부터 입력 공분산행렬에 가장 가깝도록(maximum likelihood)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1)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전통적인 다변량 통계분석에서 갖는 두 가지의 장점은 변수들 간의 일련의 종속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측

정오류(mesurement errors)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construct를 측정하는 데 수반되는 오류의 크기는 모형의 적합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항목으로 측정한 경우, Cronbach's α 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즉 오류가 크면 모형의 적합도는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fit index)에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s),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및 간결 적합도 지수(parsimony fit indices)로 분류할 수 있다.

절대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입력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χ^2 statistic값으로 값이 작을수록 p-value는 커지게 되며 0.05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GFI(goodness of fit index)와 AGFI는 일반적으로 0.90보다 크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AGFI는 GFI보다 값이 낮아야 하며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GFI를 자유도에 의해 조정한 지수이다.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과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낮을수록 그리고 대체로 0.05이하이면 적합도가 높다고 판정한다. Normed χ^2 는 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비율인데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3.0이하이면 수용된다. 이 값은 CHIN/DF로 표현된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증분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null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증분 적합도지수로 NFI(normed fit index)는 χ^2 값과 null모형의 χ^2 값 간의 차이를 null모형의 χ^2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체로 0.90이상이면 적합도를 인정할 수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도 0.90이상이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간결 적합도 지수는 여러 개의 경쟁 모형들이 있는 경우에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결정모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이다.

2) Construct 타당성

Construct 타당성은 construct와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인데 어떤 측정 도구가 construct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평가된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하나의 construct에 대해 두 개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인데, 이 경우 상관관계 값이 클수록 집중타당도가 높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 : λ)이 0.5이상이어야 하며 0.7이상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ted)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며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CR(construct reliability)은 construct의 측정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을 가리키는데 0.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어느 construct가 실제로 다른 constructs와 얼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두 constructs 각각의 AVE와 그 두 constructs 간의 상관관계의 제곱을 비교하여 두 AVE가 모두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AMOS 18.0을 활용하여 조세정책 신뢰성에 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변량 통계분석 방법의 회귀분석과 병행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5.3.2 조세정책 신뢰성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방법

1) 조세정책 신뢰성에 관한 매개효과의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제 3장에서 언급된 <그림 3-1>의 연구모형 중에서 본 장의

제 2절의 가설검정에서 실증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가설이 지지된 요인들에 대하여 통합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행하였다.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납세순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설검정을 다시 실시하였다. 따라서 관련 연구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모형을 <그림 5-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5-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절에서는 이상의 관련한 선행 분석내용을 토대로 세제인지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세제인지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3) 연구의 분석 절차

본 절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전 과정인 5장의 5.2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을 모두 제외하고 영향력이 큰 요인들로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력과 경로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된 해당 요인에 대하여 통계처리를 다시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태파악을 위해 기초 통계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매개관계와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과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5.3.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각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조사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표 5-19>와 같이 측정된 변수의 대부분이 0.74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유사한 요인끼리 묶어주는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의 방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고 요인 적재값은 0.6

이상으로 설정하였다(Singh & Rhoads, 1991; Bagozzi & Yi, 1988; Challaglla & Shervani, 1996; 황상돈, 2017).

<표 5-19> 전체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항목	성분				
		1	2	3	4	5
납세 순응	납세순응도 2	0.829	0.161	0.035	0.011	0.114
	납세순응도 1	0.801	0.071	0.108	0.036	0.063
	납세순응도 3	0.759	0.122	0.102	0.036	0.202
	납세순응도 5	0.750	0.047	-0.019	0.176	0.117
	납세순응도 4	0.734	0.077	0.016	0.287	0.121
	납세순응도 6	0.664	0.056	-0.073	0.374	0.100
세제 인지도	세제공평성 2	0.030	0.814	0.047	0.155	0.179
	세제공평성 4	0.144	0.801	0.067	0.066	0.091
	세제공평성 1	0.028	0.777	0.072	0.217	0.146
	세제공평성 5	0.211	0.728	0.037	0.119	-0.001
	납세복잡성 5	0.024	0.063	0.935	0.063	0.078
	납세복잡성 3	0.039	0.071	0.914	-0.018	0.079
	납세복잡성 4	0.076	0.072	0.914	0.148	0.027
	세율적정성 7	0.234	0.153	0.072	0.811	0.049
	세율적정성 4	0.148	0.209	0.103	0.780	0.163
	세율적정성 3	0.171	0.217	0.058	0.734	0.260
조세 정책의 신뢰성	정책신뢰성 3	0.036	0.100	0.141	0.016	0.753
	정책신뢰성 5	0.137	0.169	0.049	0.123	0.746
	정책신뢰성 4	0.189	.042	0.034	0.103	0.721
	정책신뢰성 6	0.250	0.094	-.065	0.328	0.621
고유 값		3.746	2.673	2.636	2.309	2.295
설명 분산		18.731	13.367	13.178	11.547	11.476
누적 분산		18.731	32.098	45.277	56.823	68.299
Cronbach 's α		0.875	0.821	0.924	0.813	0.744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내적일관성

전체변수에 대하여 신뢰성 및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19>, <표 5-20> 그리고 <표 5-21>에 나타내었다.

측정 항목 중 관련 요인별로 묶이지 않아 내적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납세순응 3개, 세제인지도 9개, 조세정책의 신뢰성 2개의 총 14개 측정 항목이 제거되고 전체 연구변수는 5개 요인으로 추출되어져 전체 분산의 68.299%가 설명되었다. 고유값은 허용치인 1.0을 상회한 2.295~3.746으로 각 요인의 적재값도 판별 타당한 적정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KMO 적합성 검증: 0.82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 = 3,215.871$ (df=190), $p < 0.001$). <표 5-19>와 <표 5-20>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설문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 5-21>은 척도 제거 후 변수들의 개별 측정 항목과 영역별 Cronbach's alpha 값을 나타낸다(황상돈·이운식, 2016).

<표 5-20> 전체변수의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최초 항목 수	최종 항목 수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납세순응		9	6	6	0.875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5	4	4	0.821
	납세의 복잡성	5	3	3	0.924
	세율의 적정성	9	3	3	0.813
조세정책의 신뢰성		6	4	4	0.744

〈표 5-21〉 전체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항목	Factor loading	Eigen value	누적분산(%)	항목 삭제된 경우 Cronbach's 알파	Cronbach's 알파
납세 순응	납세순응도 2	0.829	3.746	18.731	0.856	0.875
	납세순응도 1	0.801			0.846	
	납세순응도 3	0.759			0.853	
	납세순응도 5	0.750			0.849	
	납세순응도 4	0.734			0.853	
	납세순응도 6	0.664			0.865	
세제 인지도	세제공평성 2	0.814	2.673	32.098	0.776	0.821
	세제공평성 4	0.801			0.758	
	세제공평성 1	0.777			0.762	
	세제공평성 5	0.728			0.805	
	납세복잡성 5	0.935	2.636	45.277	0.914	0.924
	납세복잡성 3	0.914			0.884	
	납세복잡성 4	0.914			0.871	
	세율적정성 7	0.811	2.309	56.823	0.706	0.813
	세율적정성 4	0.780			0.732	
	세율적정성 3	0.734			0.793	
조세 정책의 신뢰성	정책신뢰성 3	0.753	2.295	68.299	0.717	0.744
	정책신뢰성 5	0.746			0.685	
	정책신뢰성 4	0.721			0.648	
	정책신뢰성 6	0.621			0.687	

2) 상관관계 분석

1차 실증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2차 실증분석에 사용된 연구변수들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표 5-2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요인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분석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제약을 적게 받는 편이나 납세순응과 세제인지도에서 세율의 적정성, 조세정책의 신뢰성 간에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상관관계 분석(N=310)

요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납세순응		4.873	0.991				
세제 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4.722	0.900	0.291**			
	세율의 적정성	5.035	1.068	0.444**	0.419**		
	납세의 복잡성	4.487	1.216	0.110	0.169**	0.180**	
조세정책의 신뢰성		4.933	0.915	0.393**	0.316**	0.151**	0.413**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 검정)에서 유의함							

3)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에 이어 해당 측정 항목들에 대한 연구변수 단위별로 측정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identification) 분석으로 적합도를 구해,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표준요인부하량, t값, p값 등의 전체 요인에 대한 적합도지수 그리고 수정지수를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 항목구성의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geq 0.9$), 수정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geq 0.9$), χ^2 에 대한 p값(≥ 0.05), 평균제곱근잔차(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leq 0.05$), 기초부합지수의 보완수단으로 근사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등을 이용하였다.

GFI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표본의 크기가 200 이상이고 그 값이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0.8 이상은 한계 기준치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χ^2 , GFI 그리고 RMR 등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적합지수이며 AGFI와 NFI 등은 기초

모형에 적합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이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개별 구성요인에 대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3>과 같이 모든 변수의 GFI, AGFI, NFI, RMR 및 Normed χ^2 값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각 차원의 요인변수로 구성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23>과 같다.

<표 5-23>개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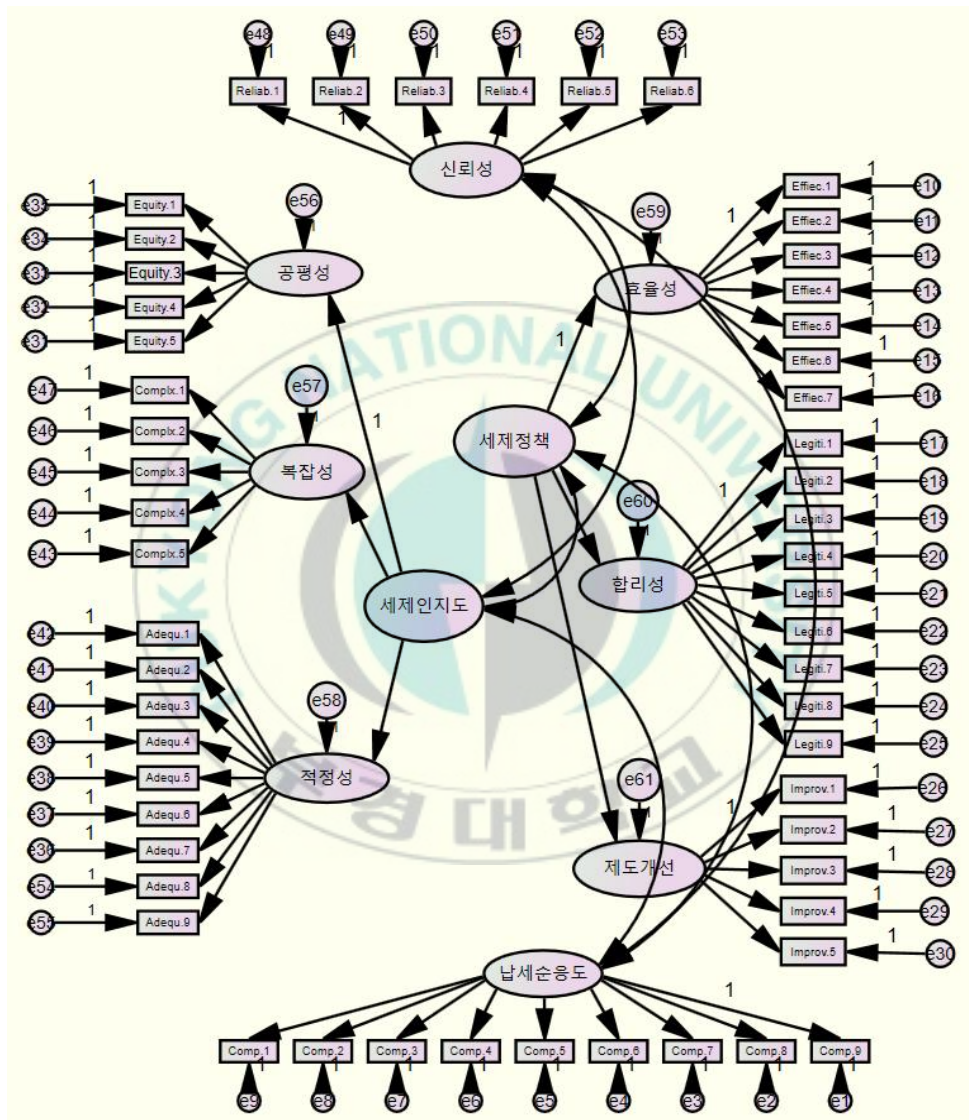
요인	GFI	AGFI	NFI	CFI	RMSEA	Normed χ^2 □
세제 인지도	0.985	0.970	0.986	1.000	0.000	0.844
조세정책의 신뢰성	0.995	0.986	0.911	1.000	0.000	0.000
납세순응	0.976	0.938	0.978	0.989	0.005	1.948

첫째, 개별 요인들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구체적 실시 결과는 <표 5-23>과 같다. 기준치인 Normed χ^2 가 2.000 미만이며, GFI, AGFI, NFI, CFI 등이 0.900 이상이고, RMSEA가 0.050 미만으로 일반적인 기준치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은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요인들의 변수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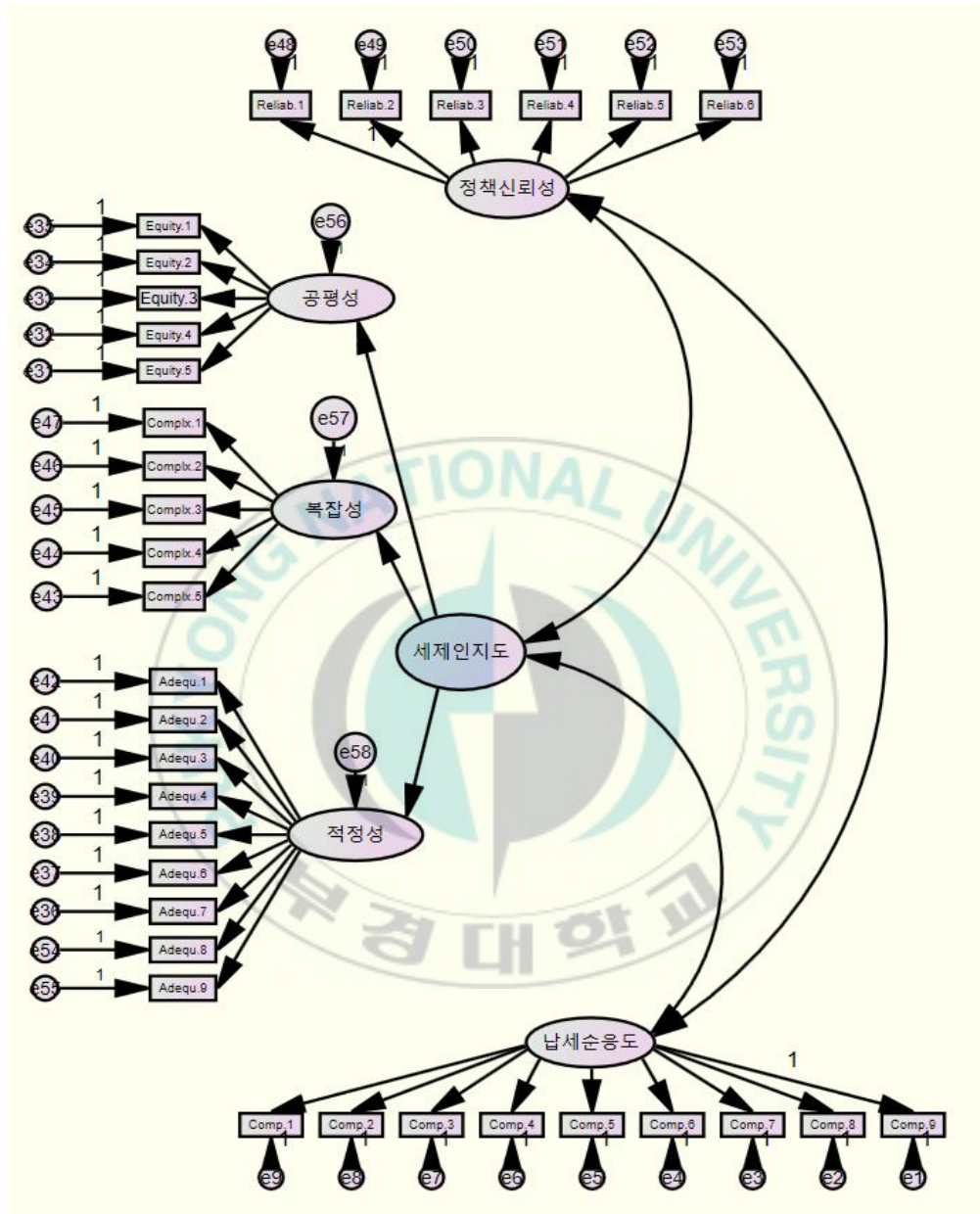
둘째, 전체 변수를 대상으로 측정모형에 대하여 수정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 항목의 공분산 제거 등을 통한 최종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5-23>과 같이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하여 전체 개념(construct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지수를 참조하였다. 납세순응에 대한 전체 변수의 수정 전 측정모형의 도형은 <그림 5-3>으로 나타났고, 납세순응에 대한 조세정책의 매개효과 분석의 연구대상 변수의 수정 전 측정모형의 도형은 <그림 5-4>이다. 그리고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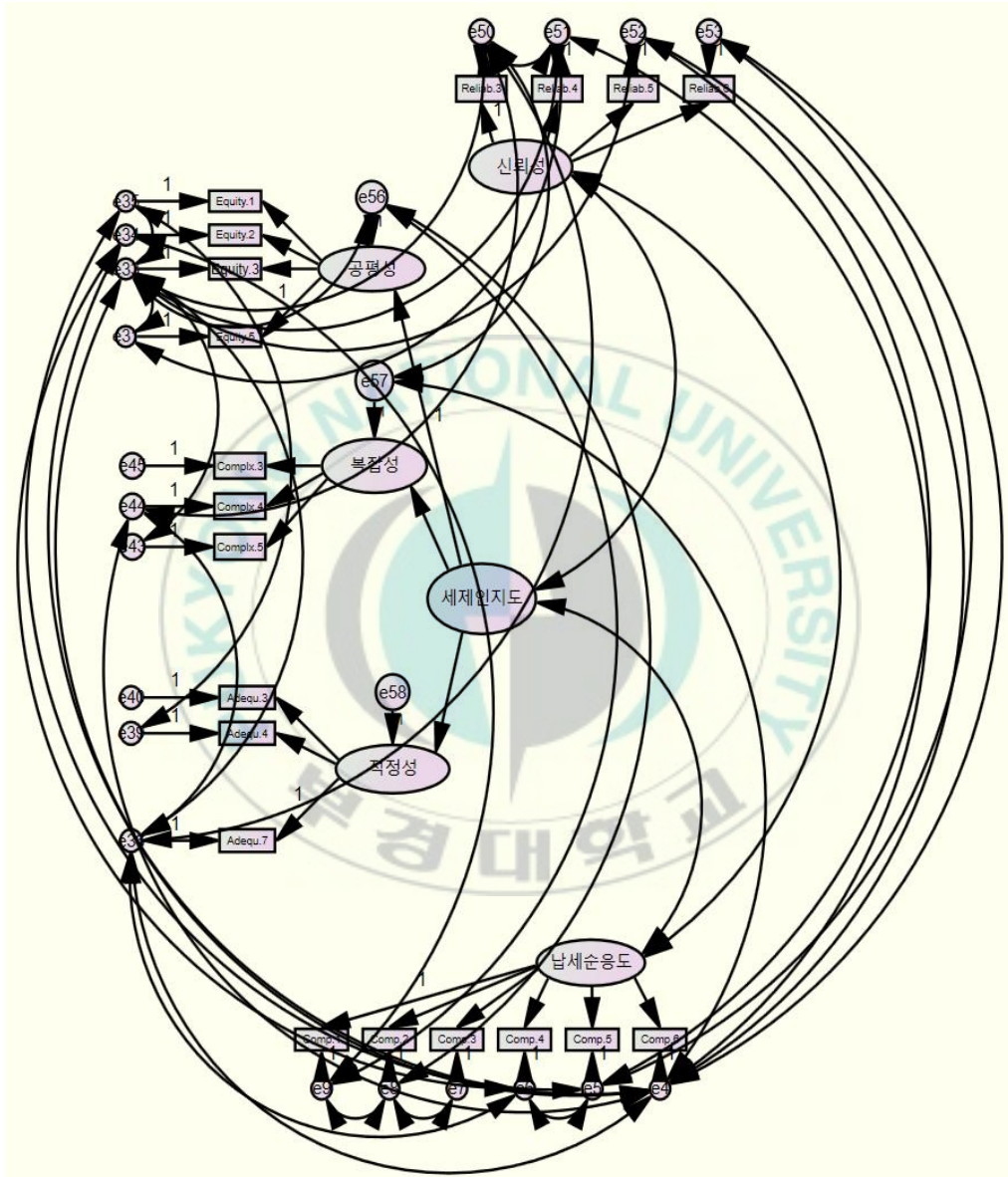
들의 오차항에 대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5-5>는 그 결과로 각 요인의 전체 변수들에 대한 수정지수를 사용한 경로 도형을 나타낸다.



<그림 5-3> 전체 변수의 수정 전 측정모형의 도형



<그림 5-4> 매개효과 분석 연구대상 변수의 수정 전 측정모형의 도형



<그림 5-5> 전체 변수를 수정한 경로 도형

각 요인들의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chi^2=131.637$ (d.f=130 p=0.443), Normed $\chi^2(\chi^2/d.f)=1.013$ 으로 일반적인 기준인 $RMSEA \leq 0.080$, Normed $\chi^2 \leq 3.0$ 이하가 아닌 <표 5-24>와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된 $RMSEA \leq 0.050$, Normed $\chi^2 \leq 2.0$ 이하의 기준을 전부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연구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5-24> 전체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Normed χ^2
Fit index	131.637	130	0.960	0.935	0.960	0.999	0.003	1.013
적합수준	-	-	≥ 0.900	≥ 0.900	≥ 0.900	≥ 0.900	≤ 0.050	≤ 2.000

4) 요인부하량의 점검

전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변수별 측정모형의 개별 타당성을 검정하여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을 산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며($p < 0.05$), 만약 유의하지 못하면 제거하여야 하는데 <표 5-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geq 6.600$). 또한, 각 구성 요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 되어야 하며 0.7 이상이 바람직하다(Bagozzi & Yi, 1988).

요인부하량의 검증결과,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0.522~1.139)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5> 개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및 표준화 요인부하량

요인		측정 항목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t값	P값
납세순응		순응도 1	1.000	0.670	—	—
		순응도 2	1.213	0.705	15.539	***
		순응도 3	1.245	0.726	10.827	***
		순응도 4	1.448	0.772	10.995	***
		순응도 5	1.348	0.732	10.568	***
		순응도 6	1.286	0.670	10.408	***
세계 인지도	세계의 공평성	공평성 5	1.000	0.528	—	—
		공평성 3	2.150	1.139	6.600	***
		공평성 2	1.451	0.884	8.982	***
		공평성 1	1.302	0.813	9.119	***
	납세의 복잡성	복잡성 5	1.000	0.925	—	—
		복잡성 4	0.944	0.908	25.088	***
		복잡성 3	0.915	0.855	22.474	***
	세율의 적정성	적정성 7	1.000	0.699	—	—
		적정성 4	1.009	0.802	12.275	***
		적정성 3	1.103	0.813	12.310	***
조세정책의 신뢰성		신뢰성 3	1.000	0.522	—	—
		신뢰성 4	1.010	0.568	7.953	***
		신뢰성 5	1.461	0.733	7.831	***
		신뢰성 6	1.509	0.730	7.803	***

주) *** 는 $p < 0.001$ 수준(양쪽 검정)에서 유의함

5) 전체 변수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첫째, 전체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모형에 대하여 수정을 통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측정 항목들에 대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분산 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잠재요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들의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5-26>과 같다.

<표 5-26> 측정 항목들의 집중타당성

요인	AVE	CR	수준
조세정책의 신뢰성	0.517	0.706	AVE≥0.500. CR≥0.700
세제 인지도	0.504	0.702	
납세순응	0.508	0.800	

셋째,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관련하여 판별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잠재요인 각각의 AVE와 그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여 두 AVE가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표 5-26> 및 <표 5-27>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변수의 AVE값이 두 잠재요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27> 개별 개념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요인	1	2	3
조세정책의 신뢰성	(0.517)		
세제인지도	0.477	(0.504)	
납세순응	0.273	0.447	(0.508)

주: () 안은 AVE 값, 그 아래 숫자는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

5.3.4 가설의 검정

1)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분석을 위해 AMOS(Ver.18)를 활용하여 가설

을 검정하였다. <그림 5-2>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의 분석 결과는 $\chi^2(147)=215.549(p=0.000)$, Normed $\chi^2(\chi^2/df)=1.466$, GFI=0.935, AGFI=0.907, CFI=0.978, NFI=1.000, RMR=0.076 그리고 RMSEA=0.005로 적합도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관련한 가설들을 표준화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표 5-28>과 같다.

첫째, 세제인지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세제인지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beta=0.638$, $p<0.001$).

둘째,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과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beta=0.381$, $p=0.001$).

셋째,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과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가 되었다($\beta=0.257$,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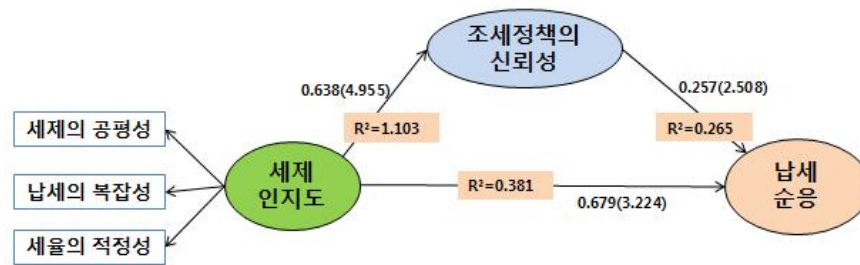
넷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표 5-28>로 나타내었다.

<표 5-28>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β	B	S.E	C.R	p	지지여부
1	세제인지도 → 조세정책의 신뢰성	0.638	1.103	0.223	4.955	<0.001	지지
2	세제인지도 → 납세순응	0.381	0.679	0.211	3.224	0.001	지지
3	조세정책의 신뢰성 → 납세순응	0.257	0.265	0.106	2.508	<0.001	지지

주) $\chi^2(147)=215.549(p=0.000)$, GFI=0.935, AGFI=0.907, CFI=0.978, NFI= 1.000, RMR=0.076, RMSEA=0.005

그리고 <그림 5-6>은 경로분석 결과에 따른 구조모형의 변수인 요인들의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5-6>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 결과(표준화 경로계수, ()안 수치는 t값)

2) 소벨테스트 결과

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전달하는지를 알아보는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수식은 (수식 1)과 같다. 여기서 $a \times b$ 의 값은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변할 때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 Y에 얼마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검증을 소벨테스트라고 한다(Michael, 1982).

$$Z = \frac{ab}{\sqrt{a^2 se_b^2 + b^2 se_a^2}} \quad (\text{수식 1})$$

여기서, Z : 간접효과의 소벨검증 통계량,

a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

se_a : a 의 표준오차,

se_b : b 의 표준오차.

해당 연구의 2차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소벨테스트의 실시 결과는 <표 5-29>와 같이 나타났다. 소벨테스트의 결과로 경로분석에서 지지된 선행변수들이 매개변수인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통하여 종속변수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29>와 같이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세제 인지도와 납세순응과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해 ‘세제인지도 → 조세정책의 신뢰성 → 납세순응’의 경로를 보이고 있다.

<표 5-29> 소벨테스트 결과

경로	A(SEA)	B(SEB)	Sobel test statistic	p 값	매개 여부
세제인지도→조세정책의 신뢰성→납세순응	0.332(0.095)	0.426(0.070)	2.231	0.026	지지

- 주) a. A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는 종속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
b. SEA는 A의 표준오차, SEB는 B의 표준오차,
c. 양측검정임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은 세제인지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5-30>은 <표 5-28>의 경로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로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서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0> 매개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세제인지도 → 납세순응	0.638	0.257	0.895

본 연구의 2단계 연구에서는 세제인지도가 조세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모두 총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표 5-28>, <표 5-29> 그리고 <표 5-30>에서 보듯이 가설검정의 결과를 통하여 4개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인지도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판매업자가 인지하는 세제인지도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업무와 납세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지고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도 쉽게 이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만 납세자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아울러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 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주류 유통시장의 RFID 태그 부착 시스템과 주류 판매업자의 구매 시 주류구매 전용카드 이용 등의 주류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무자료 주류의 근절을 위한 과세 당국의 노력은 계속 진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인지도가 납세자인 주류 판매업자에게 세제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주류의 구입 및 판매가 용이하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세관련 세법구조의 형평성,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 세율체계의 개선 및 성실납세 환경조성으로 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통신판매 확대와 주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선진화된 세정의 도입으로 종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납세순응을 유도한다면 자발적인 성실납세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아울러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을 줄일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조세납부가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조세회피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주변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보면 자신도 해당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하여 세법에 근거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성실 납부를 위해 매출누락이나 주류의 무자료·위장거래를 근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주류 구매 전용카드의 이용, 주류 판매지역 제한해제의 효율성 및 정부 조세정책의 신뢰성 정도로 주류 판매업자가 인지하는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종류에 따라 편의가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제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재정지출예산의 건전성을 구비하고, 수립된 조세정책에 대하여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 주류구매 전용카드 이용의 활성화와 납세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정책을 쉽게 인지하여 수용하고 세율의 적정성을 확보한 적절한 세율체계로 성실납세를 이끌어 낸과 동시에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 이를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VI.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핵심은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주류 조세정책의 면허의 효율성, 불성실 사업자 규제에 합리성,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윤리에 따른 납세의식, 성실납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납세순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정부 조세정책의 효율적인 전략수립과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실납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납세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조세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영향요인들을 찾아 세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성실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주류 판매업자의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세제인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의 인지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통하여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수들의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각 개념들이 상호 인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증·분석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전략수립의 방향성의 정립과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론과 관련 수단들을 찾아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고 주류 관련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동남광역권 소재 주류 제조·판매업자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선행 변수인 세제인지도(세제의 공정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주류 조세정책의 면허의 효율성,

불성실사업자 규제의 합리성과 결과변수인 납세순응 사이에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39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고 14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사이에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변수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4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로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에 제도개선의 조절효과와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매개효과와 주력업종, 매출액, 사업연수, 소득수준 변수의 통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매출액과 사업연수는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연구에서는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에 조세정책의 신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여 납세순응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및 2단계 연구의 실증·분석의 실행에 따른 가설검정을 통한 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자인 주류 판매업자에게 모든 납세자와 동등하고 공평한 신고업무와 납세서비스를 갖춘 세제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능력에 맞는 세율의 적정성을 확보한 과세 제도를 실행하여 국가 조세정책에 대한 세제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납세윤리의 하부요인인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지지는 되지 않았지만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처벌규정 완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선진화된 세정의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종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 납세윤리관에 따른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여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납세순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아울러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납세에 반한 조세회피 성향을 줄일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주의 유통에 대한 RFID 태그 활용과 주류 구매 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이용 등 주류 판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제도개선은 정(+)의 방향으로 조절 역할을 하며, 또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도 정(+)의 방향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능력에 맞는 적절한 세율체계와 정직하고 도덕적인 납세의식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한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성실납세 포상 등 납세자우대정책을 확대하고 과세품질을 혁신하는 납세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무자료·위장거래 등 주류의 불법행위는 축소될 것이다.

다섯째, 주류의 조세정책 요인으로 면허의 효율성과 불성실사업자 규제의 합리성을 하부요인으로 선정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지역별 면허제한·식품 위생법에 의한 의제판매업 면허교부가 효율성을 가지는지와 범칙단속 및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의 기득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방어하는 방편으로 정부의 규제를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

자에 대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이 담보되고 무자료·위장거래에 대한 적발확률 그리고 위법한 탈세의 경우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주류 면허의 사업범위와 조건의 지정에 있어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납세순응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통합적 관점에 의한 분석으로 연구모형의 중요 요인들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요인에 대하여 분석적인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조세정책들의 실행과 납세자들의 신뢰에 따른 납세순응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접근방법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납세순응의 결정요인 중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중요한 매개효과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성실납세를 위한 조세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세제인지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납세자의 주류 불법거래, 무자료 거래, 조세회피, 범칙단속 그리고 주류의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납세자가 쉽게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세제의 공평성과 세율의 적정성을 갖추어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납세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류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무자료 주류 유통의 근절 등을 통해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현행 주류 판매 유통구조에서는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납세자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도록 하고, 아울러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통신판매 확대와 주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선진화된 세정의 도입, 종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역량의 강화 그리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 등의 정책의 적극적 실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납세순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류 유통시장의 RFID 태그 부착 시스템과 주류구매 전용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무자료 주류의 근절을 위한 과세 당국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한 인지정도는 납세자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실납세에 반한 조세회피 성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0%는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세율을 낮추어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형평성에 맞으며, 주류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류 판매업자의 조세납부가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조세회피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주변 사업자들의 성실납세를 보면서 자신도 해당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인지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넷째, 세제의 공평성에 대하여 높은 인지정도를 가진 주류 판매업자는 정부 조세정책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 때의 납세순응과 인지도가 낮을 때의 납세순응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제인지도 부분의 세제의 공평성이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제도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정의 과학화 및 전산화로 주류 유통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납세자는 조세에 대하여 형성된 심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나 조세법규 및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에 따른 납세윤리관인 납세의식을 갖게 된다. 주류 판매업자는 주변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의지,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회가 투명할수록 성실납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므로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에 따른 성실납세환경의 조성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납세순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납세자가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류 조세정책에 대한 규제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면허 취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으며, 건전한 음주문화와 납세도의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업범위와 조건의 지정에 대한 재교육 내지 원격교육 앱을 제공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 정상화와 납세순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주류 제조·판매업자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의 주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실시된 시점에 일부 주류 판매업자의 경우, 세법에 대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과 세율의 적정성 등의 조세정책과 관련된 이해와 납세순응에 대하여 실질적인 체감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특정 변수들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고려한 종단적(longitudinal) 연구의 방안으로 변수들 간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제인지도와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납세순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납세순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형성에 필요한 조세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전략수립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과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납세윤리요인의 납세의식 고양을 위한 요인을 찾아서 선행요인들의 통합적인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과정의 내용에서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주류 조세정책의 하위 요인인 면허의 효율성, 불성실 사업자 규제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변수를 찾아 이를 포함한 연구를 실행하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세청 (2009), 보도자료, 2008년도 국세 행정 종합실태도.
- _____ (2015), 주세사무처리규정.
- _____ (2017), 2017 주세실무.
- _____ (2018), 통계자료 http://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8&catecode=A13005.
- 고윤성 · 이진훤 (2011), “연구개발비와 금융비용의 자본화 회계처리와 조세회피,”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2903-2926.
- 구광희 (2010),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윤 · 심충진 · 이영환 (2013), “소득과세의 공정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4(4), 41-72.
- 김동은 · 황호찬 (2005), “개인성향 및 납세환경에 대한 태도가 납세윤리와 납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4(1), 27-48.
- 김상기 · 김현동 · 김태동 (2012),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회계연구, 17(4), 277-303.
- 김석범 (2004), “조세회피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3-137.
- 김영락 (2010),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6, 1-23.
- _____ (20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31, 73-94.
- 김영락 · 임영규 (2013),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36, 203-225.
- 김정호 (201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55(1), 165-188.
- 김종상 (2012),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특성이 주류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 영향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황(1993),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준·현진권(2004),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행위,” 한국조세연구원.
- 남기원(2001),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광주(2008), “부동산 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기홍·서희열·배수진(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회계정보연구, 29(3), 29-50.
- 박명호·김봉근·김정권(2008),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336(2), 10-22.
- 박병목(2000), “부가가치세의 결함과 납세도의의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상원·민희철(2010), “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 연구: 세율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166, 88-90.
- 박원일(2000),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구(2010), “세무조사의 신뢰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2005),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 배수진·심태섭(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세무와 회계저널, 12(3), 215-273.
- 배춘호·서희열·배수진(201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1), 335-367.
- 서현수(2004),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회계.
- 서희열·이준규·서정화(2012), “공정사회 구현과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 세무학연구, 29(1), 9-42.
- 성명재·박상원(2010),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재정포럼, 170, 51-60.
- 신현대·이정기(2007),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4(1), 113-130.

- 심석무(2002),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 경영연구, 17, 103-135.
- 심태섭(2000), “세무서의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연구-세무사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세무학연구, 16, 5-21.
- 여용범(2006),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의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기수(2002),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9(2), 181-205.
- 유시영(1992),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 69-92.
- 윤성만·전병욱(2011),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 세무학연구, 28(3), 363-389.
- 윤중옥·박현춘(2002), “납세자의 조세의식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11, 183-202.
- 윤태화·심현옥(2008),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9(4), 249-283.
- 이우윤(1997), “납세자의 조세포탈 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기·신현대(2006), “세무 서비스품질이 수요자의 만족과 납세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3(1), 55-77.
- 이종환(1992),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
- 이타임즈(2006),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
- 이태정·권순창·강영옥(2011), “세무검증제도 도입(안)과 납세자권익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6, 277-294.
- 이학식·임지훈(201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 서울: 집현재.
- 전병목·박명호(2007),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재정포럼, 12(3), 43-73.
- 전태영(199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찬웅(1996),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연구,” 회계학연구, 21(2), 19-44.

- 정희상·박성배·윤태화(2010),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4(1), 371-394.
- 조정환(1996),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8, 243-275.
- 최근주(2013),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근(1994), “세법학 총론,” 세경사, 130-138.
- 현진권(2005), “보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재정논집, 19, 179-204.
- 현진권·박창균(2002),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준응행위 결정요인: 실험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경제학연구, 50(1), 145-171.
- 현진권·박창균·강병민(2002), “실험자료를 사용한 납세준응행위의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18(3), 59-80.
- 홍성근(2011), “세무정보 전산화와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준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인수·홍정화(2013),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영교육연구, 28, 271-301.
- 홍정화·김완희(1997), “납세자의 특성과 탈세수단선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0, 151-175.
- 황상돈(2017), “전략지향성이 기술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상돈·이운식(2016), “전략지향성이 기술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융합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18(3), 1451-1469.

2. 해외문헌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lm, J., McClelland, G. H., & Schulze, W. D. (1992),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1), 21–3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ndreoni, J., Erard, B., & Feinstein, J. (1998),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2), 818–860.
- Armstrong, J. S., & Overton, T. S. (1977), "Estimating Nonresponse Bias in Mail Survey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3), 396–402.
- Arnold, H. J., & Feldman, D. C. (1982),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job turnov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3), 350.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njamini, Y., & Maital, S. (1985), "Optimal tax evasion & optimal tax evasion policy behavioral aspects," *In The economics of the shadow economy (pp. 245–264)*. Springer, Berlin, Heidelberg.
- Boyd, R. (1986), "Forest taxation: Current issues and future research," *USDA Forest Service research note SE-United*

States, Southeastern Forest Experiment Station.

- Burns, J. O., & Kiecker, P. (1995), "Tax practitioner eth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organizational consequen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7(2), 20.
- Challagalla, G. N., & Shervani, T. A. (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1), 89–105.
- Clotfelter, C. T. (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3–373.
- Collins, J. H., & Plumlee, R. D. (1991),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 The effect of audit schemes," *Accounting Review*, 559–576.
- Dean, P., Keenan, T., & Kenney, F. (1980), "Taxpayers' attitudes to income tax evasion: an empirical study," *BTR*, 28.
- Dubin, J. A., & Wilde, L. L.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61–74.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
- Falkinger, J., & Walther, H. (1991), "Rewards versus penalties: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19(1), 67–79.
- Fisher, R. A. (1992),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 *In Breakthroughs in statistics (pp. 66–70)*. Springer, New York, NY.
- Furnham, A. (1983), "The protestant work ethic, human values and attitudes towards taxa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 113–128.
- Golembiewski, R. T., & McConkie, M. (1975), "The centrality of interpersonal trust in group processes," *Theories of group*

- processes, 131, 185.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
- Jackson, B. R., & Milliron, V. C.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1), 125–165.
- Kaplan, S. E., Reckers, P. M., & Roark, S. J. (1988), "An attribution theory analysis of tax evasion related judgmen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3(4), 371–379.
- Kaplan, S. E., Newberry, K. J., & Reckers, P. M. (1997), "The effect of moral reasoning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s on tax evasion intent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2), 38.
- Lewis, A. (1979),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Finances publiques*, 34(2), 245–257.
- Long, S., & Swingen, J. (1985), "Tax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Federal Income Tax," *Complexity: Some Preliminary Findings* (pp. 315–403). Working Paper.
- Madeo, S. A., & Madeo, L. A. (1981), "Some evidence of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 (pre–1986), 34(4), 457.
- Mason, R., & Calvin, L. D. (1984),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pre–1986), 37(4), 489.
- Michael, E.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Minor, W. W., & Harry, J. (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2), 190–203.
- Milliron, V. C. (1985),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794–816.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
- Musgrave, R. A., & Thin, T. (1948), "Income tax progression, 1929–4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6(6), 498–514.
- Parent, M., Vandebeek, C. A., & Gemino, A. C. (2005), "Building citizen trust through e-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4), 720–736.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Paine, J. B., & Bachrach, D. G. (2000),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26(3), 513–563.
- Porcano, T. M. (1984),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Accounting Review*, 619–636.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idenbach, R. E., & Robin, D. P.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scale for improving evaluations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8), 639–653.
- Schmolders, G. (1970), "Survey research in Public Finance—Behavioral Approach to Fiscal Theory," *Public Finance*, 25(2), 300–306.

- Singh, J., & Rhoads, G. K. (1991), "Boundary role ambiguity in marketing-oriented positions: A multidimensional, multifaceted operationaliz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8(3), 328–338.
- Sitkin, S. B., & Roth, N. L. (1993), "Explaining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legalistic "remedies" for trust/distrust," *Organization science*, 4(3), 367–392.
- Smith, K. W., & Stalans, L. J. (1991), "Encouraging tax compliance with positive incentiv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directions," *Law & Policy*, 13(1), 35–53.
- Song, Y. D., & Yarbrough, T. E. (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2–452.
- Spicer, M. W. (1986), "Civilization at a discount: 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13–20.
- Spicer, M. W., & Becker, L. A. (1980),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3(3): 171–175.
- Spicer, M. W., & Lundstedt, S. B. (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295–305.
- Srinivasam, T. N. (1973), "Tax Evasion: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339–346.
- Stone-Romero, E. F., & Anderson, L. E. (1994), "Relative power of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d the comparison of subgroup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detecting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3), 354.
- Strumpel, B. (1969), "The contribution of survey research to public finance,"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finance*, 14(2).
- Thomas, C. W. (1998),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Administration & Society*, 30(2), 166–193.
- Torgler, B. (2004), "Tax morale in Asian countri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5(2), 237–266.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499–513.
- Wegener, D. T., & Fabrigar, L. R. (2000),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 Westat, I. (1980), "Individual Income Tax Compliance Factors Study Qualitative Research: Prepared f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 Witte, A. D., & Woodbury, D. F.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1–13.
- Wu, X., & Sun, S. C. (2007), "Retroviral oncoprotein Tax deregulates NF- κ B by activating Tak1 and mediating the physical association of Tak1-IKK," *EMBO reports*, 8(5), 510–515.
- Yitzhaki, S. (1974), "A Note on Allingham and Sandmo,"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 201–202.

설 문 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본 설문에서 개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를 통하여 주류 판매업자의 유통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세무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귀하께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내용은 응답자의 개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일이 없이 통계분석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설문에 대한 개인적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고 무기명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국세행정의 발전과 성실납세 문화에 기여하고 본 학문의 연구에 필요한 소중한 학문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작성하신 후에 이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설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지도교수 :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이운식

연구자 :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박사과정 황광석

(연락처 : 010-2576-0836, E-mail : goldhwang21@hanmail.net

Fax : 051-441-7603)

※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란 비합법적 행위에 의해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컬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설문지 작성 요령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에 가까운 쪽에 √ 표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우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시면 1점을, “보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4점을, “매우 그렇다” 고 생각하시면 7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I. 조세 관련 설문 내용 : 회사 또는 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다음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업무와 납세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다음의 항목들은 세제의 공평성과 관련된 것으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세금의 신고납부와 납세서비스는 비교적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의제면허 포함)는 비교적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현재의 주세관련 세법구조가 비교적 형평에 맞게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공평과세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다음은 주류 판매업자의 납세제도의 복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실납세를 위하여 일반 납세자가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세밀성과 복잡한 계산 방법 등은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납세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류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를 이해하고 따르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이유가 납세제도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복잡하기 때문이다.	
3	현행 제도보다 주류의 구입 및 판매가 용이하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세법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성실납세 비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세법의 구조가 단순하다면 세무사를 찾지 않고 납세를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다음은 주류 판매업자의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납세자들의 담세 능력에 맞는 적절한 세율의 체계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중요 요소로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5~72%,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유통) 10%, 법인세 10~25%, 소득세 6~42%)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에게 적용되는 있는 세율을 알고 있으며,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세율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한다면 조세납부를 더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체계에 대하여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세금과 관련된 다른 요인보다 세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주류 출고 시 부과되는 주세 5~72%는 세율이 높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과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세율이 높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유통주점에만 따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0%는 세율이 높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법인세 10~25%는 세율이 높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6~42%는 세율이 높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다음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면허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는 주세 보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주세법령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행정처분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

화의 진전으로 면허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규제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면허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종합 주류도매업의 지역별 면허 제한은 납세순응에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지역제한 없이 판매장 이전 자유는 납세순응에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 등 식품 위생법에 따른 의제판매업 면허의 교부는 납세순응에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은 주세보전과 주류거래정상화 및 관리 통제에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마트, 슈퍼, 편의점에서 쉽게 주류를 구입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롭지만 국민편익을 위해 용인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 등 의제판매업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주종별 인별 주류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주류판매업자 및 주류판매업 종사자는 운전 면허증 교부 시 교육처럼 주류판매업 단체를 통한 교육이수를 법제화 하여 최소한의 소양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다음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은 줄어들 것이다. 이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대하여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양주의 유통에 RFID 태그 부착활용은 주류 거래 정상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주류 판매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주류구매시 주류 구매전용카드 이용은 성실납세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 판매지역 제한해제는 주류유통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제공금지는 과다 경쟁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올바르게 사용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귀하가 내는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다음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불성실사업자 규제의 합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 성실납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성실사업자 규제에 대한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범칙단속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무자료 거래 및 주류 불법거래 근절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위장거래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은 규제가 엄격할수록 성실납세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과세당국이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조세회피 행위를 엄격하게 밝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과세당국이 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현행 범칙단속 및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의 차별 강도는 높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과세 당국은 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과세 당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위법한 탈세의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무자료·위장거래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탈세 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다음은 납세순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7-1. 정부에서는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과 선진화된 세정을 도입, 대국민 홍보 등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납세순응과 관련한 인지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조세납부는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2	조세회피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해당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주변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보면 귀하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올바른 세금납부를 위하여 모든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앞으로 성실납세를 위해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축소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앞으로 성실납세를 위해 주류의 무자료 거래는 축소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앞으로 성실납세를 위해 주류의 위장거래는 축소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최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실납세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개인별 사전납세 안내는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에 도움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2. 성실납세를 위하여 조세정책 제도가 개선될 경우 납세순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시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위장거래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및 위장거래 10% 미만에 대한 벌금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지입제판매업자 판매금액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및 판매금액 10% 미만에 대한 벌금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무면허판매업자 판매금액 10% 이상에 대한 면허취소 및 판매금액 10% 미만에 대한 벌금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성실납세에 대한 포상을 늘이고, 세금포 인터인상 등 납세자우대정책을 확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납세 홍보를 늘이고 과세품질을 혁신해 납세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개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다음은 납세윤리의 납세의식과 관련한 질문으로 해당 항목에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자 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 하려는 의지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사회가 투명할수록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국가의 재정지출의 편익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기꺼이 조세를 부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과세당국의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이해하고 따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과세당국의 조세방침이나 조세법규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II. 다음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납세자들의 특성입니다. 다음 중에서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세제 인지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각 특성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5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성별 ☐ 연령 ☐ 결혼여부 ☐ 교육수준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사업연수 ☐ 업종 ☐ 종교 ☐ 기타

III. 다음은 귀사와 응답자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사의 종업원 수는 현재 몇 명입니까?
① 5명 미만 ② 10명 미만 ③ 20명 미만 ④ 30명 미만 ⑤ 30명 이상
- 귀사의 직전 년도의 수입 금액(매출액)은 얼마입니까?
① 5억 원 미만 ② 10억 원 미만 ③ 30억 원 미만 ④ 50억 원 미만
⑤ 100억 원 미만 ⑥ 100억 원 이상
- 귀사의 주력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도매업 ② 소매업 ③ 유흥주점 ④ 음식(단란주점, 일반) ⑤ 기타
- 귀하의 사업 연수는 몇 년입니까?
① 5년 미만 ② 5 ~ 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년이상
- 귀하의 연간 소득수준은 얼마입니까?

① 1,500만 원 미만 ② 1,5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③ 3,000만 원~4,500 만 원 미만 ④ 4,500만 원~6,000만 원 미만 ⑤ 6,000만 원~8,000만 원 미만 ⑥ 8,000만 원 이상

6. 귀하의 납세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 ☐ 보통이다 ☐ 조금은 잘 안다 ☐ 매우 잘 안다

IV. 다음은 응답자 개인의 인적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2. 귀하의 결혼 여부는 무엇입니까? ☐ 기혼 ☐ 미혼
3. 귀하의 연령은 아래 어디에 속합니까?
☐ 30세 미만 ☐ 30~40세 미만 ☐ 40~50세 미만 ☐ 50~60세 미만 ☐ 60세 이상
4.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대리급 이하 ☐ 과장 ☐ 차/부장 ☐ 임원 ☐ 최고 경영자
5.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 고졸 이하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졸업

《소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설문에 응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감사의 글

지금까지 저의 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까지 주위의 많은 도움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배려와 격려로 지도하여 주신 이운식 지도교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논문 심사와 더불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장 이민규 교수님, 황상돈 교수님, 그리고 경남도립남해대학교 박태중 교수님과 세무법인 중추 김홍규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논문 준비과정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독려와 함께 자신감을 부여해준 부산대학교 이성환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MOT 옥영석 원장님과 천동필, 박병무, 권혁무, 김정배 교수님과 함께 동문수학을 한 원우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직인 국세청 근무시절부터 학문적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었던 백승권, 신봉웅, 황주옥, 정수창, 정정수, 심상희, 엄전중 전 국장님과 안옥태, 윤태환, 류동환, 박장호 전 세무서장님, 금법회 안광부 고문님, 김수창 회장님과 정규현, 장승순, 우정환, 강호태, 정대웅 세무사님, 김경섭, 이종옥, 김동업, 조인국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마회 김봉래 전국세청 차장님과 김영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애수회 천억수, 박재현, 남동성, 김인수 세무사님과 회원 여러분, 소소모 신동웅 회장님, 김봉범 과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국세청 근무시절 우정을 함께했던 동료와 많은 선후배 모두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산종합주류도매협회 김인길 회장님과 정일 전무님, 경남·울산 지역의 김원식, 권혁두, 지학태 대표님과 유승희 사장님, 그리고 많은 주류 판매업자의 대표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30년 지기 친구로서 설문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노블리아 강재경 회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용마 부산동창회 사무국에 종사하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고 감싸주신 용마부산동창회 이권대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김만주 사무국장과 사무국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협성종합건설 정철원 회장님을 비롯한 용마 선후배님과 용마51동기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도 마음속에 살아서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내 인생의 후원자

로 항상 사랑과 희생을 감수하셨던 어머니의 영전에 이 조그만 영광을 바칩니다. 하늘나라에서 따스한 모습으로 지켜봐줄 것 같은 장인·장모님께도 작은 영광을 바칩니다. 처남, 처형 내외와 조카들, 큰누나, 둘째누나, 셋째누나 내외와 조카들, 동생 석호스님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부족한 남편과 아버지임에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내조를 해준 사랑하는 아내 이귀애, 큰아들 선일, 작은아들 선재에게 항상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험난한 인생길이었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박재억 회장님, 김창희 사장님, 박호진 전무님, 최해복 전무님, 황재구 상무님, 홍기선 이사님과 임직원여러분, 에이스유니폼 김태균 사장님, 이에이바이오스 김종기 사장님, 무생세무법인 김남만 대표님, 김종경 세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8월

황광석 올림